법인세법

(昭和40년 3월 31일 법률 제34호)

최종개정 : 2008년 4월 30일 법률 제23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취지) 이 법률은 법인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과세소득자 등의 범위, 세액의 계산방법, 신고, 납부 및 환급절차 및 납세의무의 정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의 다음 용어의 정의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내　이 법률의 시행지를 말한다.
2. 국외　이 법률의 시행지 외의 지역을 말한다.
3.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　내국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한다.
5. 공공법인　별표 제1의 법인을 말한다.
6. 공익법인 등　별표 제2의 법인을 말한다.
7. 협동조합 등　별표 제3의 법인을 말한다.
8. 인격 없는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9. 보통법인　제5호 내지 제7호의 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하며, 인격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0. 동족회사　회사의 주주 등(회사가 자기주식 또는 출자 한 경우의 회사를 제외) 3인 이하 및 이들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개인 및 법인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또는 출자 제외) 총수 또는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출자를 한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그 회사를 말한다.
11. 피합병법인　합병에 의해 보유한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법인을 말한다.
12. 합병법인　합병에 의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신 및 부채를 이전 받은 법인을 말한다.

12의2 분할법인　분할에 의해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법인을 말한다.

12의3 분할승계법인　분할에 의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이전 받은 법인을 말한다.

12의4 현물출자법인　현물출자에 의해 보유한 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와 함께 보유한 부채를 이전한 법인을 말한다.

12의5 피현물출자법인　현물출자에 의해 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이전받거나 이와 함께 부채를 이전받는 법인을 말한다.

12의6 사후설립법인　사후설립(회사법(平成17년 법률 제86호) 제467조 제1항 제5호(사업양도의 승인 등) 또는 보험업법(平成17년 법률 제105호) 제62조의2 제1항 제4호(사업양도 등)의 행위 관련 계약에 의거 이루어진 자산 또는 부채 이전을 말한다. 제12호의7 및 제12호의15에서 동일)에 의해 보유한 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와 함께 보유한 부채를 이전한 법인을 말한다.

12의6의2 피사후설립법인　사후설립에 의해 사후설립으로부터 자산을 이전받거나 이와 함께 부채를 이전받은 법인을 말한다.

12의6의3 주식교환완전자법인　주식교환에 의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다른 법인에게 취득하도록 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12의6의4 주식교환완전모법인　주식교환에 의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발행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게 된 법인을 말한다.

12의6의5 주식이전완전자법인　주식이전에 의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당해 주식이전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게 취득하도록 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12의7 주식이전완전모법인　주식이전에 의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취득한 주식이전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2의7의2 연결모법인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의 승인을 받은 동조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12의7의3 연결자법인　제4조의2의 승인을 받은 동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내국법인을 말한다.

12의7의4 연결법인　연결모법인 또는 그 연결모법인과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에 있는 연결자법인을 말한다.

12의7의5 연결완전지배관계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과의 사이에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완전지배관계 또는 그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완전지배관계가 있는 연결자법인 상호의 관계를 말한다.

12의8 적격합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말함) 또는 합병모법인주식(합병법인과의 사이에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자신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출자 제외.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 등」이라 함)의 전부를 보유하는 관계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가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말함) 중 일방의 주식 또는 출자 이외의 자산(주식 등에 대한 잉여금 배당 등(주식 또는 출자 관련 잉여금의 배당,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를 말함. 제12조의11에서 같음)으로써 교부되는 금전 기타의 자산 및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등에 대한 매수청구에 근거한 대가로써 교부되는 금전 기타 자산을 제외)이 교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합병에 관련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합병이 법인을 설립하는 합병(이하 「신설합병」이라 함)인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과는

다른 피합병법인) 사이에 일방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의 합병

나. 합병과 관련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합병이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다른 피합병법인) 사이에 일방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인 경우는 총액. 이하 제12호의16까지 같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100분의 100을 충족하지 않는 수(출자인 경우는 금액. 이하 제12호의 16가지 같음)의 주식(출자를 포함. 이하 제12호의16까지 동일)을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의 합병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1) 합병과 관련된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근로자 총수의 대략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수의 자가 합병 후에 합병 관련 합병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될 것(합병 후에 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을 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수의 자가 합병 후에 합병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적격합병 후에 적격합병에 관련된 합병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될 것).

(2) 합병에 관련된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에 운영하는 주요 사업이 합병 후에 합병 관련 합병법인에서 계속하여 운영될 것이 예상될 것(합병 후에 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을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요 사업이 합병 후에 합병법인에서 운영되고, 적격합병 후에 적격합병 관련 합병법인에서 계속하여 운영될 것이 예상될 것).

다. 합병 관련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합병이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다른 피합병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합병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12의9 분할형분할 분할에 의해 분할법인이 교부받는 분할승계법인의 주식 기타의 자산(제12호의10 및 제12호의11에서 「분할대가자산」이라 함)의 전부가 분할일에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교부되는 경우의 분할을 말한다.

12의10 분사형분할 분할에 의해 분할법인이 교부 받은 분할대가자산이 분할일에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교부되지 않는 경우의 분할을 말한다.

12의11 적격분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분할(분할형분할에서는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분할승계법인의 주식 또는 분할승계모법인주식(분할승계법인과의 사이에 분할승계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는 관계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말함. 이하 본 호에서 같음) 중 일방의 주식 이외의 자산(주식에 대한 잉여금 배당으로써 교부되는 분할대가자산 이외의 금전 기타 자산을 제외)이 교부되지 않거나, 또는 주식이 주주가 보유하는 분할법인의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교부되는 것, 분사형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에 분할승계법인의 주식 또는

분할승계모법인주식 중 일방의 주식 이외의 자산이 교부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가. 분할 관련 분할법인과 분할승계법인과의 사이에 일방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직접?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의 분할

나. 분할 관련 분할법인과 분할승계법인과의 사이에 일방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넘거나, 100분의 100을 충족하지 않는 수의 주식을 직접?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에 있는 분할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1) 분할에 의해 분할사업(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운영하던 사업 중 분할에 의해 분할승계법인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을 말함. (나)에서 같음)과 관련된 주요 자산 및 부채가 분할승계법인에게 이전되어 있을 것(분할 후에 분할승계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을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요 재산 및 부채가 분할에 의해 분할승계법인에게 이전하고, 적격합병에 의해 관련 합병법인에게 이전될 것이 예상될 것).

(2) 분할 직전의 분할사업의 종업원 중 총수의 대략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자가 분할 후에 분할승계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될 것(분할 후에 분할승계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을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수의 자가 분할 후에 분할승계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적격합병 후에 관련 합병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될 것).

(3) 분할과 관련된 분할사업이 분할 후에 분할승계법인에서 계속하여 운영될 것이 예상될 것(분할 후에 분할승계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을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할 사업이 분할 후에 분할승계법인에서 운영되고 적격합병 후에 관련 합병법인에서 계속하여 운영될 것이 예상될 것).

다. 분할 관련 분할법인과 분할승계법인(분할이 법인을 설립하는 분할인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다른 분할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분할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12의12 적격분할형분할 분할형분할 중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의13 적격분사형분할 분사형분할 중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의14 적격현물출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현물출자(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자산?부채로써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산?부채를 이전하는 것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수반하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대한 사채급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법인에게 피현물출자법인의 주식만이 교부되는 것에 한함)를 말한다.

가. 현물출자에 관련된 현물출자법인과 피현물출자법인 사이에 일방의

법인이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직접?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의 현물출자.

나. 현물출자에 관련된 현물출자법인과 피현물출자법인 사이에 일방의 법인이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또는 100분의 100을 충족하는 수의 주식을 직접?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의 현물출자.

(1) 현물출자에 의해 현물출자사업(현물출자법인이 출자 전에 운영하는 사업 중 현물출자에 의해 피현물출자법인에서 운영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음)과 관련된 주요 자산 및 부채가 피현물출자법인으로 이전될 것(현물출자 후에 피현물출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을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요 자산?부채가 현물출자에 의해 피현물출자법인으로 이전하고, 적격합병에 의해 관련 합병법인으로 이전할 것이 예상되는 것).

(2) 현물출자 직전의 현물출자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중 총수의 대략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자가 현물출자 후에 피현물출자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되는 것(현물출자 후에 피현물출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을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당수의 자가 현물출자 후에 피현물출자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적격합병 후에 관련 합병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될 것).

(3) 현물출자와 관련된 현물출자사업이 현물출자 후에 피현물출자법인에서 계속하여 운영될 것이 예상될 것(현물출자 후에 피현물출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을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사업이 현물출자 후에 피현물출자법인에서 운영되고, 적격합병 후에 관련 합병법인에서 계속해서 운영될 것이 예상될 것).

다. 현물출자와 관련된 현물출자법인과 피현물출자법인(현물출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현물출자인 경우에는 현물출자법인과 다른 현물출자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현물출자로써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12의15 적격사후설립 사후설립 중 사후설립법인이 피사후설립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을 것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외국법인에 전호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산?부채를 이전하는 것을 제외)을 말한다.

12의16 적격주식교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교환으로 주식교환완전자법인의 주주에게 주식교환완전모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교환완전지배모법인주식(주식교환완전모법인과의 사이에 주식교환완전모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는 관계로써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말함) 중 어느 한쪽의 주식 이외의 자산(주주에 대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교부되는 금전 기타의 자산 및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한 매수청구에 다른 대가로써 교부되는 금전 기타 자산을 제외)이 교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교환과 관련된 주식교환완전자법인과 주식교환완전모법인 사이에 동일한 자에 의해 각각의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게 된 관계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의 주식교환

나. 주식교환과 관련된 주식교환완전자법인과 주식교환완전모법인 사이에 어느 한쪽 법인이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또는 100분의 100을 충족하지 않는 수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의 주식교환 중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것.

(1) 주식교환완전자법인의 주식교환 직전의 종업원 중 총수의 대략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수의 자가 주식교환완전자법인의 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할 것이 예상될 것(주식교환 후에 주식교환완전자법인을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이하 동 호 및 다음 호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함)으로 하는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서 「적격조직재편성」이라 함)에 따라 상당하는 수의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적격조직재편성과 관련된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함)에서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당수의 자 중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는 자((1)에서 「합병 등 인계종사자」라 함)가 주식교환 후에 주식교환완전자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적격조직재편성 후에 합병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되고, 또한 상당수의 자 중 합병 등 승계종사자 이외의 자가 주식교환완전자법인의 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할 것이 예상될 것).

(2) 주식교환완전자법인이 주식교환 전에 운영한 주요사업이 주식교환완전자법인에서 계속하여 운영될 것이 예상될 것(주식교환 후에 주식교환완전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그 주요 사업이 이전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요 사업이 주식교환 후에 주식교환완전자법인에서 운영되고, 적격조직재편성 후에 관련 합병법인에서 계속하여 운영될 것이 예상될 것).

다. 주식교환과 관련된 주식교환완전자법인과 주식교환완전모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주식교환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12의17 적격주식이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이전으로 주식이전완전자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이전완전모법인의 주식 이외의 자산(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한 매수청구에 근거한 대가로써 교환되는 금전 기타의 자산을 제외)이 교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이전과 관련된 주식이전완전자법인과 주식이전과 관련된 기타 주식이전완전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타 주식이전완전자법인」이라 함) 사이에 동일한 자에 의해 각각의 법인 발행주식(자기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제외. (나)에서 같음)의 전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되는 관계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의 주식이전 또는 하나의 법인만이 주식이전완전자법인이 되는 주식이전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나. 주식이전과 관련된 주식이전완전자법인과 기타 주식이전완전자법인

사이에 어느 일방 법인이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또는 100분의 100을 충족하지 않는 수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의 주식이전 중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

(1) 주식이전과 관련된 주식이전완전자법인의 주식이전 전후의 종업원 중 총수의 대략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수의 자가 주식이전완전자법인의 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할 것이 예상될 것(주식이전 후에 주식이전완전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조직재편성에 따라 상당하는 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격조직재편성에 관련된 합병법인 등에 인계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수의 자들 중 합병법인 등에 인계되는 자((1)에서 「합병인계종업원」이라 함)가 주식이전 후에 주식이전완전자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적격조직재편성 후에 합병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되고 또한 상당하는 수의 자들 중 합병인계종업원 이외의 자가 주식이전완전자법인의 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할 것이 예상될 것).

(2) 주식이전과 관련된 주식이전완전자법인이 주식이전 전에 운영한 주요 사업이 당해 주식이전완전자법인에서 계속하여 운영될 것이 예상될 것(주식이전 후에 주식이전완전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주요 사업이 이전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주요 사업이 주식이전 후에 주식이전완전자법인에서 운영되고, 적격조직재편성 후에 이와 관련된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하여 운영될 것이 예상될 것)

다. 주식이전과 관련된 주식이전완전자법인과 기타 주식이전완전자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주식이전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13 수익사업 판매업, 제조업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계속하여 사업장을 설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14 주주 등 주주 또는 합병회사, 합자회사 혹은 합동회사의 사원 기타 법인의 출자자를 말한다.

15 임원 법인의 이사, 집행관, 회계고문, 감사관, 이사, 감사, 청사인 및 이들 이외의 자로써 법인의 운영에 종사하는 자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6 자본금 등 법인(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신고법인」이라 함)을 제외)이 주주 등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7 연결자본금 등 연결법인(연결신고법인에 한함)의 연결개별자본금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17의2 연결개별자본금 등 연결법인(연결신고법인에 한함)이 주주 등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이익적립금 법인(연결신고법인을 제외)의 소득(제81조의18 제1항(연결법인세의 개별 귀속액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개별소득금액을 포함)에서 유보하고 있는 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8의2 연결이익적립금 연결법인(연결신고법인에 한함)의 연결소득금액(소득금액을 포함)으로 유보하고 있는 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8의3 연결개별이익적립금액 연결이익적립금액 중 연결법인(연결신고법인에 한함)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8의4 연결소득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19 결손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상 그 사업연도의 손실금액이 이익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한다.
19의2 연결결손금액 가가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 금액의 계산 상 그 연결사업연도의 손실금액이 이익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한다.
20 재고자산 상품, 제품, 반제품, 제조 중인 물품, 원자재 기타 자산으로 재고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유가증권 및 제61조 제1항(단기매매상품의 양도손익 및 시가평가손익의 이익금 또는 손실금 가산)에서 규정하는 단기매매상품을 제외)을 말한다.
21 유가증권 금융상품거래법(昭和23년 법률 제25호) 제2조 제1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자신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출자 및 제61조의5 제1항(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이익상당액 또는 손실상당액의 이익금 또는 손실금 가산 등)에서 규정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것을 제외)을 말한다.
22 고정자산 토지(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를 포함), 감가상각자산, 전화가입권 기타 자산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감가상각자산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치, 선박,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광업권 기타 자산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연기자산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 중 지출의 효과가 지출 이후 1년 이상에 미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5 손실금회계처리 법인이 확정한 계산에서 비용 또는 손실로 회계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26 합동운용신탁 신탁회사(금융기관의 신탁업무 겸영 등에 관한 법률(昭和18년 법률 제43호)에 의해 동법 제1조 제1항(겸영의 허가)에서 규정하는 신탁업무를 하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을 포함)가 인수한 금전신탁으로, 공동하지 않는 다수의 위탁자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昭和26년 법률 제198호) 제2조 제2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위탁자비지시형투자신탁 및 이와 유사한 외국투자신탁(동조 제22항에서 규정하는 외국투자신탁을 말함. 제27호 및 제29호 (나)에서 같음) 및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다수가 아닌 것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탁을 제외)을 말한다.

27 증권투자신탁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증권투자신탁 및 이와 유사한 외국투자신탁을 말한다.
28 공사채투자신탁　증권투자신탁 중, 신탁재산을 공채 또는 사채(회사 이외의 법인이 특별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을 포함)에 대한 투자로써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식 또는 출자에 대한 투자로써 운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9 집단투자신탁　다음 각 호의 신탁을 말한다.
가. 합동운용신탁
나.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투자신탁(다음 열거하는 것에 한함) 및 외국투자신탁
(1)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증권투자신탁
(2) 그 수탁자(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탁자지시형투자신탁에 있어서는 위탁자)에 의한 수익권 모집이 동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공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한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다. 특정수익증권발행신탁(신탁법(平成18년 법률 제108호) 제185조 제3항(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신탁행위)에서 규정하는 수익증권발행신탁 중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가)의 신탁 및 제29조의2 (다)의 신탁을 제외)을 말함)
(1) 신탁사무의 실시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법인((1)에서 「승인수탁자」라 함)이 인수한 것(계산 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그 승인수탁자(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로 취임함으로써 그 신탁사무를 인계 받은 승인수탁자를 포함)가 승인이 취소된 경우 및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에게 승인수탁자 이외의 자가 취임한 경우를 제외).
(2) 각 계산기간 종료 시에 미분배이익 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그 당시의 원금 총액에 대한 비율((3)에서 「이익유보비율」이라 함)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는 취지에 대해 신탁행위에서 정함이 있을 것.
(3) 각 계산기간 개시 시에 그 때까지 도래한 이익유보비율의 산정 시기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중에서 산정된 이익유보비율이 (2)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는 것.
(4) 계산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을 것.
(5) 수익자(수익자로써의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함)가 존재하지 않는 신탁에 해당했던 적이 없을 것.
29의2 법인과세신탁　다음 각 호의 신탁(집단투자신탁 및 제12조 제4항 제1호(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비용의 귀속)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 신탁 및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정공익신탁을 제외)을 말한다.
가.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권을 발행하는 취지에 대한 정함이 있는 신탁

나.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자(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자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가 존재하지 않는 신탁

다. 법인(공공법인 및 공익법인 등을 제외)이 위탁자가 되는 신탁(신탁자산에 속하는 자산만을 신탁하는 것을 제외)으로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것.

(1) 법인의 사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양도에 대해 법인에 대한 회사법 제467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함)의 주주총회 결의(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를 요하는 것에 한함)를 신탁하고, 또한 그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하는 수익권의 신탁과 관련된 모든 수익권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 예상되었던 것(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이외의 자산의 종류가 대체로 동일한 경우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

(2)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때 또는 그 존속기간(신탁행위에서 정해진 존속기간을 말함. (2)에서 같음) 규정의 변경 효력이 발생한 때((2)에서 「효력발생시 등」이라 함)에 법인 또는 법인과의 사이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2) 및 (3)에서 「특수관계자」라 함)가 수탁자이고, 또한 효력발생시 등에서 효력발생시 등 이후의 존속기간이 2년을 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법인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수탁자가 아이었던 경우에 그 법인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수탁자로 취임하게 되고, 또한 취임한 때에 그 때 이후의 존속기간이 2년을 넘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신탁재산의 성질 상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를 그 수탁자로 하고, 법인의 특수관계자를 그 수익자로 하며, 또한 그 때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분배 비율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라.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투자신탁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平成10년 법률 제105호) 제2조 제13항(정의)에서 규정하는 특정목적신탁

30 중간신고서 제71조 제1항 (중간신고) (제145조 제1항(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말한다.

31 확정신고서 제74조 제1항(확정신고) (제14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신고서와 관련된 기한 후 신고서를 포함)를 말한다.

31의2 연결중간시고서 제81조의19 제1항(연결중간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말한다.

32 연결확정신고서 제81조의22 제1항(확정신고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신고서와 관련된 기한후신고서를 포함)를 말한다.

33 퇴직연금 등 적립금 중간신고서 제88조(퇴직연금 등 적립금의 중간신고) (제145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신고서와 관련된 기한후신고서를 포함)를 말한다.

34 퇴직연금 등 적립확정신고서 제89조(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한 확정신고) (제145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신고서와 관련된 기한후신고서를 포함)를 말한다.

35 청산사업예납신고서 제102조 제1항(청산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신고서와 관련된 기한후신고서를 포함)를 말한다.

36 잔여재산분배예납신고서 제103조 제1항(잔여재산의 일부분배에 관한 예납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신고서와 관련된 기한후신고서를 포함)를 말한다.

37 청산확정신고서 제104조 제1항(청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신고서와 관련된 기한후신고서를 포함)를 말한다.

38 기한 후 신고서 국세통칙법(昭和37년 법률 제66호) 제18조 제2항(기한 후 신고서)에서 규정하는 기한후신고서를 말한다.

39 수정신고서 국세통칙법 제19조 제3항(수정신고서)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서를 말한다.

40 청색신고서 제121조(청색신고) (제146조 제1항(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해 청색 신고서에 따라 제출하는 제30호, 제31호 및 제33호 내지 제37호의 신고서 및 이들 신고서와 관련된 수정신고서를 말한다.

41 중간납부액 제76조 (중간신고에 의한 납부) (제14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제81조의26 (연결중간신고에 의한 납부)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그 금액에 대한 수정신고서 제출 또는 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경정 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

42 청산중의 예납액 제105조 (청산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에 의한 납부) 또는 제106조 (잔여재산의 일부 분배 등에 관한 예납신고에 의한 납부)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신고서와 관련된 기한후신고서의 제출 또는 이들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음으로 인한 결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서 제출 또는 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경정 후의 법인세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43 경정 국세통칙법 제24조 (경정) 또는 제26조 (재경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말한다.

44 결정 제19조(납세지 지정 처분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의 신고의 효과) 및 제2편 제1장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통칙법 제25조 (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말한다.

45 부대세 국세통칙법 제2조 제4호 (정의)에서 규정하는 부대세를

말한다.

46 충당 국세통칙법 제57조 제1항 (충당)의 규정에 의한 충당을 말한다.

47 환급가산금 국세통칙법 제58조 제1항 (환급가산금)에서 규정하는 환급가산금을 말한다.

48 지방세 지방세법(昭和25년 법률 제226호) 제1조 제1항 제14호 (용어)에서 규정하는 지방단체의 징수금(도, 특별구 및 전부 사무조합의 이에 상당하는 징수금을 포함)을 말한다.

제3조 (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인격 없는 사단 등은 법인으로 간주하여 이 법률(별표 제2를 제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납세의무자

제4조 ① 국내법인은 이 법률에 의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법인인 공익법인 등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 법인과세신탁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제84조 제1항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업무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외국법인은 제138조 (국내원천소득)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때(외국법인인 공익법인 등 또는 인격 없는 사단에 있어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유한 때에 한함), 법인과세신탁을 인수한 때 또는 제145조의3 (외국법인에 관련된 퇴직연금 등 적립금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업무 등을 하는 때에는 이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공공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④ 개인이 법인과세신탁을 인수한 때에는 이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장의2 연결납세의무자

제4조의2 (연결납세의무자) 내국법인(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법인을 제외) 및 그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내국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발행주식 또는 출자(자신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출자 제외)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관계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에 있는 그 밖의 내국법인(보통법인에 한하며, 청산중의 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정의)에서 규정하는 특정목적회사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을 제외)이 모두 내국법인을 납세의무자로써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대하여 국세청장관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들 법인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법인을 납세의무자로써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1. 청산중의 법인
2. 보통법인(외국법인을 제외) 또는 협동조합 등과의 사이에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에 의한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3.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

제4조의3 (연결납세 승인 신청) ① 전조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 및 그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그 내국법인에 대해 동조에서 규정하는 완전지배관계(이하 본 조에서 「완전지배관계」라고 함)에 있는 전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은 동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고자 하는 기간의 개시일 6개월 전까지 이들 법인 모두의 연명으로 그 기간의 개시일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내국법인의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관은 전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연결예정법인(전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 또는 다른 내국법인을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 중 하나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
2. 신청을 한 법인에 연결예정법인 이외의 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신청을 한 연결예정법인에 대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것

가. 연결소득금액 또는 연결결손금액 및 법인세액의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나. 연결사업연도에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또는 보존이 제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예상되지 않을 것.

다. 제4조의5 제1항 (연결납세 승인 취소)의 규정에 의해 전조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4조의5 제3항의 승인을 받은 날 이후 5년 이내에 전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것.

라.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해 동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승인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개시 시에 그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완전지배관계가 있는 것에 한함.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음) 모두에 대해 승인이 있었다고 간주한다.

④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제6항의 규정 적용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그 신청에 대해 승인 또는 각하 처분이 없었던 때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 및 그 밖의 내국법인의 모두에 대해 그 개시일에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제9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제외)에 제4조의2의 승인은 제1항에서 정하는 내국법인 및 그 밖의 내국법인 모두에 대해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개시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설립사업연도(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이 항 및 제8항에서 같음)가 연결신청특례연도(동조의 승인을 받아 각 연결사업연도의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고자 하는 기간을 말함. 이하 동 조에서 같음)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6개월 전의 날을 설립사업연도 개시 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는 날과 설립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전의 날 중 빠른 날(다음 항에서 「설립연도신청기한」이라 함)로 하고, 내국법인의 설립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가 연결신청특례연도인 경우에 있어서는 6개월 전의 날을 설립사업연도 종료일과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전의 날 중 빠른 날(다음 항에서 「설립다음연도신청기간」이라 함)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제6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설립연도신청기한 또는 설립다음연도신청기한까지 동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취지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⑧ 제6항 규정의 적용을 받아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그 신청에 대해 승인 또는 각하 처분이 없었던 때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 및 그 밖의 내국법인(신청과 관련된 연결신청특례연도 개시 시에 그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완전지배관계가 있는 것에 한함. 다음 항에서 같음) 모두에 대해 5월을 경과하는 날(내국법인의 설립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가 연결신청특례연도이고, 또한 다음사업연도 개시일이 5월을 경과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개시일)에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⑨ 제6항 규정의 적용을 받아 이루어진 제1항의 신청에 대해 제4조의2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정하는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1. 연결신청특례연도 개시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 시에 시가평가자산 등(제61조의11 제1항(연결납세 개시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에서 규정하는 시가평가자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 제11항에서 같음)을 보유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동조 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 이하 본 호 및 제10호에서 「시가평가법인」이라 함) 및 시가평가법인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를 직접?간접으로 보유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제10호에서 「관련법인」이라 함) 연결신청특례연도 종료일의 익일
2. 연결신청특례연도 개시일의 이익부터 전조의 승인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사이에 자기를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을 한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시가평가법인 및 관련법인을 제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 및 그 밖의 내국법인 중 앞에서 열거한 법인 이외의 법인 연결신청특례연도 개시일

⑩ 전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이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연결모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제1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그 밖의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날(제15조의2 제2항 (연결사업연도의 의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9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개시일.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제4조의2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승인은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⑪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이 연결신청특례제도에서 제6항 규정의 적용을 받아 동조의 승인을 받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그 내국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일에 그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승인은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1.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날 전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시에 시가평가자산 등을 보유한 그 밖의 내국법인(제61조의12 제1항 각호 (연결납세에의 가입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에서 열거하는 것을 제외. 이하 본 호 및 제12호에서 「시가평가법인」이라 함) 및 시가평가법인 또는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평가법인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를 직접?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전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제12호에서 「관련법인」이라 함) 연결신청특례연도 종료일의 익일
2.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일의 익일부터 내국법인이 전조의 승인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사이에 자기를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을 한 동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시가평가법인 및 관련법인을 제외) 내국법인이 승인을 받을 날이 속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
3. 전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 중 제1호, 제2호의 법인 이외의 법인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날

⑫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이 동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그 밖의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신청 기타 본 조 각 항의 규정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 (연결법인의 장부서류의 보존) ① 연결법인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서류를 비치하여 이에 거래 등을 기록하고, 그 장부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관,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국세국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연결자법인의 본점 혹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국세국장?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연결법인에 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조의5 (연결납세의 승인 취소 등) ① 연결법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관은 연결법인과 관련된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승인은 취소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1. 연결사업연도에 관련된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또는 보존이 제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
2. 연결사업연도에 관련된 장부서류에 대해 제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관, 국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것
3. 연결사업연도에 관련된 장부서류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기재?기록하고, 기타 기재?기록을 한 사항 전체에 대하여 진실성을 의심하는데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4. 제81조의22 제1항 (연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법인(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로써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 및 모든 연결자법인, 제2호의 경우에는 동 호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연결자법인으로 함)은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제4조의2의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승인은 간주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1. 연결모법인과 내국법인(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에 한함)과의 사이에 내국법인에 의한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완전지배관계(제7호에서 「완전지배관계」라고 함)가 생긴 때 발생한 날
2. 연결자법인이 없어짐으로써 연결법인이 연결모법인만이 되었을 것 없어진 날
3. 연결모법인의 해산 해산일의 익일(합병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합병일)
4. 연결자법인의 해산 해산일의 익일(합병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합병일)
5. 연결자법인 (해산한 것을 제외)이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연결모법인에 의한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없어졌을 것(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6호의 사실에 기인하는 것을 제외) 없어지게 된 날
6. 연결모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되었을 것 해당하게 된 날
7. 연결모법인과 내국법인(공익법인 등에 한함)과의 사이에 내국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가 있는 경우에 내국법인이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게 되었을 것 해당하게 된 날

③ 연결법인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조의2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연결법인이 제3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결법인 모두의 연명으로 그 이유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관은 제4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제4조의2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⑥ 연결법인이 제3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제15조의2 제1항 (연결사업연도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를 말함) 종료일 후의 기간에 대해 제4조의2의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의 취소 절차 기타 본 조 각항의 규정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3 법인과세신탁

제4조의6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 ①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는 각 법인과세신탁의 신탁자산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수익?비용을 말함. 이하 이 장에서 같음) 및 고유자산 등 마다 각각 별도의 자로 보아 이 법률(제2조 제29호의2 (정의), 제4조 (납세의무자) 및 제12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수익?비용의 귀속), 제6장 (납세지) 및 제5편 (벌칙)을 제외. 이하 이 장에서 같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각 법인과세신탁의 신탁자산 등 및 고유자산 등은 동항의 규정에 의해 간주된 각 별도의 자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의7 (수탁법인 등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 수탁법인(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인 법인(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탁자인 개인)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과세신탁에 관한 신탁자산 등이 귀속하는 자로써 이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수탁자인 법인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 또는 법인과세신탁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인과세신탁이 신탁된 영업소,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제2호에서 「영업소」라 함)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과세신탁과 관련된 수탁법인은 내국법인으로 한다.
2. 법인과세신탁이 신탁된 영업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법인과세신탁과 관련된 수탁법인은 외국법인으로 한다.
3. 수탁법인(회사가 아닌 것에 한함)은 회사로 간주한다.
4. 신탁의 병합은 합병으로 간주하고, 신탁의 병합에 관한 종전의 신탁인 법인과세신탁과 관련된 수탁법인은 피합병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신탁의 병합과 관련된 새로운 신탁인 법인과세신탁과 관련된 수탁법인은 합병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5. 신탁의 분할은 분할형분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신탁의 분할에 의해 신탁자산의 일부를 수탁자가 동일한 그 밖의 신탁 또는 새로운 신탁의 신탁자산으로써 이전하는 법인과세신탁과 관련된 수탁법인은 분할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신탁의 분할에 의해 수탁자가 동일한 그 밖의 신탁으로부터 신탁자산의 일부를 이전 받은 법인과세신탁과 관련된 수탁법인은 분할승계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법인과세신탁의 수익권은 주식 또는 출자로 간주하고, 법인과세신탁의 수익자는 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인 법인의 주식?출자는 법인과세신탁과 관련된 수탁법인의 주식?출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수탁자인 법인의 주주 등은 수탁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7. 수탁법인은 그 수탁법인과 관련된 법인과세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하나의 약관에 의거하여 복수의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최초의 계약이 체결된 날로, 법인과세신탁 이외의 신탁이 법인과세신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게 된 날로 함)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8. 법인과세신탁에 대하여 신탁이 종료된 경우 또는 법인과세신탁 (제2조 제29호의2 나 (정의)의 신탁에 한함)에 제20조 제1항(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수익?비용의 귀속)에서 규정하는 수익자(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자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 다음 호에서 「수익자 등」이라 함)가 존재하는 경우(제2조 제29조의2 가 및 다의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이들 법인과세신탁과 관련된 수탁법인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9. 법인과세신탁(제2조 제29호의2 나의 신탁을 제외. 이하 본 호에서 같음)의 위탁자가 보유한 자산을 신탁한 경우 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익자 등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이 법인과세신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들 법인과세신탁에 관련된 수탁법인에 대한 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10. 법인과세신탁의 수익 분배는 자본잉여금의 감소에 수반되지 않는 잉여금의 배당과 법인과세신탁의 원금 환불은 자본잉여금의 감소에 따른 잉여금 배당으로 본다.
11. 본 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수탁법인 또는 법인과세신탁의 수익자에 대해 이 법률의 규정 적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8 (수탁자가 둘 이상인 법인과세신탁) ① 하나의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수탁자의 법인과세신탁과 관련된 신탁자산 등은 한 사람의 신탁자산 등으로 보아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동 항의 수탁자는 동항의 법인과세신탁의 신탁사무를 주재하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과세신탁과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제3장 과세소득 등의 범위 등

제1절 과세소득 등의 범위

제5조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연결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의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청산소득에 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다.

제6조 (내국보통법인 등의 청산중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의 청산중에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들 법인에서 청산이 계속되거나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 청산중에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 (연결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연결모법인에 대해서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하여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다.

제7조 (내국공익법인 등의 비수익사업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인 공익법인 등 또는 인격 없는 사단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제5조 (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퇴직연금업무를 하는 내국법인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과세) 제84조 제1항 (퇴직연금 등 적립금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업무 등을 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5조(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또는 제6조의2 (연결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의 규정에 의해 부과하는 법인세 외에 각 사업연도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해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다.

제9조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제141조 각 호 (외국법인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외국법인 구분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다.

제10조 (외국공익법인 등의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외국법인인 공익법인 등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의 전조에서 규정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동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 (퇴직연금업무 등을 하는 내국법인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과세) 제145조의3 (외국법인에 관한 퇴직연금 등 적립금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업무 등을 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제9조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의 규정에 의해 부과하는 법인세 외에 각 사업연도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해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다.

제2절 과세소득 범위의 변경 등

제10조의3 (과세소득 범위 변경 등의 경우 이 법률의 적용) ① 특정보통법인(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또는 의료법인 중 보통법인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게 된 날의 전일에 특정보통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규정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1. 제80조 제4항 (결손금의 환급)
2. 제81조의31 제3항 (연결결손금의 환급)

② 특정보통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에 공익법인 등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규정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1. 제57조 제1항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의 이월)
2. 제58조 제1항 (청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의 재해에 의한 손실금의 이월)
3. 제59조 (회사갱생 등에 의한 채무면제 등이 있었던 경우의 결손금의 손해금도입)
4. 제80조

③ 특정보통법인이 그 특정보통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고, 공익법인 등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을 한 경우의 처리 기타 제1항 및 제2항 규정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제4장 소득의 귀속에 관한 통칙

제11조 (실질소득자 과세의 원칙)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법률상 귀속된다고 간주되는 자가 단지 명의인으로 그 수익을 향수하지 않고, 그 자 이외의 법인이 수익을 향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은 이를 향수하는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이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신탁자산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수익?비용의 귀속) ① 신탁의 수익자(수익자로써의 권리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함)는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부채를 가진 것으로 보고, 또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수익?비용은 수익자의 수익?비용으로 보아 이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투자신탁, 퇴직연금 등 신탁, 특정공익신탁 등 또는 법인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수익?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을 변경할 권한(경미한 변경을 할 권한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을 실제로 보유하고, 신탁재산 급부를 받게 되는 자(수익자를 제외)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자로 보아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인이 수탁자가 되는 집단투자신탁, 퇴직연금등신탁 또는 특정공익신탁

등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 금액 및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상 법인의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④ 이 조에서 다음 각호 용어의 정의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퇴직연금등신탁 제84조 제1항 (퇴직연금등적립금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후생연금기금계약, 확정급부연금자산관리운용계약, 확정급부연금기금자산운용계약, 확정갹출연금자산관리계약, 근로자재산형성급부계약 혹은 근로자재산형성기금급부계약, 국민연금기금 혹은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체결한 국민연금법(昭和34년 법률 제141호) 제128조 제3항 (기금의 업무) 혹은 제137조의15 제4항 9연합회의 업무)에서 규정하는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퇴직연금에 관한 계약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관련된 신탁을 말한다.
2. 특정공익신탁 등 제37조 제6항 (기부금의 손해금불산입)에서 규정하는 특정공익신탁 및 사채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平成13년 법률 75호) 제2조 제11항(정의)에서 규정하는 가입자보호신탁을 말한다.

⑤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탁자산의 급부를 받게 되는 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 기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적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사업연도 등

제13조 (사업연도의 정의) ① 이 법률에서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의 재산 및 손익계산의 단위가 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회계기간」이라 함)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또는 법인의 정관, 기부행위, 규칙, 규약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정관 등」이라 함)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회계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회계기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회계기간 혹은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이들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는 그 기간을 개시일 이후 1년별로 구분한 각 기간 (최후에 1년 미만의 기간이 된 때는 그 1년 미만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령 및 정관 등에 회계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후 2월 이내에 회계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내국법인 설립일(내국법인인 공익법인 도는 인격 없는 사단 등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로 하고, 공익법인 등(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2. 외국법인 제14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외국법인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 외국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제138조 제2호 (인적용역의 제공사업에 대한 대가)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국내에서 개시하거나 제141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제138조 제2호의 대가 이외의 것을 소유하게 된 날(외국법인인 공익법인 등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에 대해서는 제141조 각호의 외국법인 구분에 따라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보유하게 된 날)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인(인격 없는 사단 등을 제외)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은 회계기간을 정하여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인격 없는 사단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격 없는 사단의 회계기간은 그 해 1월 1일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보유하게 된 날이 속하는 해에 대해서는 이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사업연도의 의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제6호 내지 제8호에서는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국내법인으로 하고, 제9호,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에서는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연결자법인으로 하고, 제13호 및 제18호에서는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으로 하고, 제16호에서는 동 호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으로 한다)이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각각 법인의 사업연도로 본다.

1. 국내법인인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이 사업연도 중간에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경우(제10호의 경우를 제외)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일까지 기간 및 해산일의 익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의해 해산한 경우 (제11호의 경우를 제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일 전일까지의 기간
3.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을 한 경우(제12호의 경우를 제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형분할일 전일까지의 기간 및 분할형분할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4. 제4조의2 (연결납세의무자)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최초의 연결모법인사업연도 9제15조의2 제1항 (연결사업연도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를 말함. 제5호, 제7호 및 제12호에서 같음)을 말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가 개시한 경우(제6호의 경우를 제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5.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 및 종료일이 각각의 개시일이 속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개시일 및 종료일이 아닌 경우 (제6호 내지 제8호의 경우를 제외) 연결모법인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기간
6.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인과의 사이에 완전지배관계(동조에서 규정하는 완전지배관계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가 있는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제4조의3

제6항(연결납세의 승인신청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아 동조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연결신청특례연도(동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연결신청특례연도를 말함. 이하 동 호 및 제8호에서 같음) 개시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전일까지의 기간, 연결신청특례연도개시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기간 및 그 종료일의 이익부터 그 이익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제4조의2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

7.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이 연결모법인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연결모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제8호의 경우를 제외)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날(그 밖의 내국법인이 제15조의2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기간은 그 밖의 내국법인의 가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개시일이 속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8.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이 연결신청특례연도 중에 동조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 (제4조의3 제6항 규정의 적용을 받아 동조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에 한함)과의 사이에 그 내국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날(이하 본 호에서 「가입일」이라 한다)의 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전일까지의 기간, 가입일부터 그 연결신청특례연도 종료일가지의 기간 및 그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제4조의2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
9. 연결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그 연결모법인에 의한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없어진 경우(제10호,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5호 및 제17호 내지 제20호의 경우를 제외)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없어지게 된 날 (이하 본 호에서 「이탈일」이라 함)의 전일까지의 기간, 이탈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및 그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10. 연결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경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일까지의 기간, 해산일의 익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및 그 종료일의 이익부터 그 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11. 연결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의해 해산한 경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일 전일까지의 기간
12. 연결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그 연결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을 한 경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형분할일 전일가지의 기간 및 분할형분할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13. 연결모법인과 내국법인(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에 한함)과의 사이에 그 내국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가 생김으로써 연결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그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내국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날(이하 본 호에서 「지배일」이라 함)의 전일까지의 기간, 지배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및 그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일익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14. 연결자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일까지의 기간, 합병일로부터 그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및 그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15. 연결자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합병에 의해 해산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일 전일까지의 기간, 합병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및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16. 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연결법인이 그 연결모법인만이 남은 경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자법인이 없어진 날(이하 본 호에서 「이탈일」이라 함)의 전일가지의 기간 및 이탈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17. 연결자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하게 된 날 전일가지의 기간, 해당하게 된 날부터 그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및 그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18. 연결모법인과 내국법인(공익법인 등에 한함)과의 사이에 그 내국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가 있는 경우에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중에 내국법인이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게 된 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하게 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해당하게 된 날부터 그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및 그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19. 연결법인이 제4조의5 제1항(연결납세의 승인취소)의 규정에 의해 제4조의2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이하 본 호에서 「취소일」이라 함)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취소일 전일까지의 기간, 취소일부터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및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0. 연결자법인이 제4조의5 제3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1. 내국법인인 공익법인 등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이 사업연도 중에 새로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인격 없는 사단 등에 있어서는 전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개시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2. 공익법인 등이 사업연도 중에 보통법인 혹은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보통법인 혹은 협동조합 등이 사업연도 중에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이들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 및 해당하게 된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3. 청산중인 법인의 잔여재산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확정일까지의 기간

24.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에서 청산중인 사업이 사업연도 중에 계속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일 전일까지의 기간 및 계속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5. 제141조 제2호 (외국법인에 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동조 제1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동조 제3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동조 제2호의 외국법인에도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이 사업연도 중에 동조 제1호 혹은 제2호의 외국법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동조 제4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외국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동조 제2호 혹은 제3호의 외국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 외국법인의 하나에도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이러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 전일까지의 기간 및 해당하게 된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6. 제141조 제1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외국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동조 제2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동조 제3호 혹은 제4호의 외국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동조 제2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동호 및 동조 제3호의 외국법인 중 하나에도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 동조 제3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동조 제4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 외국법인 중 하나에도 해당하게 된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이들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이러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해당하게 된 날의 익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7. 제141조 제4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국내에서 새로이 제138조 제2호(인적용역 제공사업에 관한 대가)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사업을 폐지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 개시일 전일 또는 사업 폐지일가지의 기간 및 이 날들의 익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가지의 기간(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 폐지일까지의 기간 및 그 날의 이익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제15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등의 신고) 법인이 정관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을 변경하거나 정관에서 새로이 회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 전의 회계기간 및 변경 후의 회계기간 또는 정한 회계기간을 납세지(연결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연결사업연도의 의의) ① 이 법률에서 「연결사업연도」라 함은

연결법인의 연결모법인 사업연도(연결법인과 관련된 연결모법인의 사업연도(그 연결모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을 한 경우에는 제14조 제12호(간주사업연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한 경우의 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항 및 제2항에서 같음) 개시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법인으로써 여기에서 정하는 기간(말일이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인 기간을 제외)은 연결사업연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법인은 최초 연결사업연도(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된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를 말함. 제2항에서 같음)는 여기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연결모법인 사업연도의 도중에 자기를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을 한 연결법인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형분할일 전일까지의 기간
2. 연결모법인 사업연도의 도중에 제4조의5 제1항(연결납세의 승인취소) 규정에 의해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의 승인이 취소된 연결자법인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취소된 날 전일까지의 기간
3. 연결모법인 사업연도의 도중에 해산한 연결자법인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일(합병에 따른 해산의 경우에는 합병일 전일)까지의 기간
4. 연결모법인 사업연도의 도중에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없어진 연결자법인(제2호, 제3호의 법인을 제외)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관계가 없어진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5. 연결신청특례연도(제4조의3 제6항(연결납세 승인신청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연결신청특례연도를 말함.. 이하 본 항 및 제2항에서 같음) 개시일의 익일부터 제4조의2의 승인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 사이에 자기를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을 한 동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으로 제4조의3 제6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동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평가법인 및 연결법인을 제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신청특례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6. 연결모법인 사업연도의 도중에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연결모법인에 의하s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완전지배관계(이하 본 항 및 제2항에서의 「완전지배관계」를 말함)를 가지게 된 동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제4조의3 제1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평가법인 및 관련법인을 제외)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날(익일부터 동 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이 제4조의2의 승인을 받은 날 전일까지의 사이에 그 밖의 내국법인(연결신청특례연도의 도중에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그 내국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것에 한함)이 그 밖의 내국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을 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이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내국법인이 연결모법인 사업연도(제4조의3 제6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연결신청특례연도를

제외) 개시일의 1개월 전부터 개시일 이후 1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연결모법인 사업연도가 연결모법인의 최초 연결사업연도인 경우에는 그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개시일 이후 1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연결모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되거나, 그 밖의 내국법인 가입연도(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제14조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내국법인의 최초 연결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그 밖의 내국법인의 가입연도 종료일이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개시일인 경우 그 밖의 내국법인의 가입연도 종료일 익일부터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그 밖의 내국법인의 가입연도 종료일이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인 경우에는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종료일)가지의 기간
2. 그 밖의 내국법인의 가입연도 종료일이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가 된 경우 그 밖의 내국법인의 가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③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이 그 밖의 내국법인의 가입연도와 관련된 제74조 제1항(확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전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취지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장 납세지

제16조 (내국법인의 납세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17조 (외국법인의 납세지)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외국법인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정하는 장소로 한다.

1. 제141조 제1호 내지 제3호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두는 외국법인)의 외국법인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하는 사업 관련 사무소, 사업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소재지(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으로 제138조 제3호(부동산의 대부 등의 대가)에서 정하는 대가(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부에 의한 것을 제외)를 받는 것 그 대가와 관련된 자산의 소재지(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자산의 소재지)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않는 외국법인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소

제17조의2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인 개인의 납세지)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인 개인의 그 법인과세신탁에 관련된 법인세의 납세지는 개인이

소득세법(昭和40년 법률 제33호) 제15조 각 호(납세지)의 1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장소(개인이 동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납세지의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의해 소득세의 납세지인 장소로 하고, 개인이 동법 제18조 제1항(납세지의 지정) 규정에 의해 소득세의 납세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장소로 함)로 한다.

제18조 (납세지의 지정) ① 제16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법인(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인 개인을 포함. 이하 본 장에서 같음)의 사업 또는 자산 상황에서 볼 때 법인세의 납세지로써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의 관할 국세국장(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관.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은 이들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세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의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동항의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

제19조 (납세지 지정 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신고 등의 효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혹은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판결에 의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는 취소의 대상이 된 처분이 있었던 때부터 취소 시까지 취소의 대상이 된 납세지를 처분에 관한 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로 하여 그 법인세에 관련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납부 및 국세청장관, 국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의 처분(취소의 대상이 된 처분을 제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납세지 등의 변경 신고) ① 법인은 그 법인세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제18조 제1항(납세지의 지정) 규정에 의해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제외)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변경 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 및 변경 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결모법인은 연결자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본 항에서 「본점 등 소재지」이라 함)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연결자법인의 변경 전 본점 등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 및 변경 후 본점 등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편 내국법인의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제1관 과세표준

제21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내국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으로 한다.

제2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에 대한 통칙

제22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이익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자산의 판매, 유상?무상의 자산양도 또는 용역의 제공, 무상의 자산 양수 기타 거래로써 자본 등 거래 이외의 것에 관한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그 사업연도의 수익에 관한 매상원가, 완성공사원가 기타 이에 준하는 원가총액
2. 제1호 이외에 그 사업연도의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상각비 이외의 비용으로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채무확정을 하지 않은 것을 제외)의 총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수익 총액 및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 등 거래라 함은 법인의 자본금 등 총액의 증가 또는 감소를 발생시키는 거래 및 법인의 수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항(중간배당)에서 규정하는 금전의 분배를 포함)를 말한다.

제3관 익금의 계산

제1목 수취배당 등

제23조 (수취배당 등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받는 다음 각 호의 금액(외국법인?공익법인 등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으로부터 받은 제1호의 것을 제외. 이하 본 조에서 「배당 등의 금액」이라 함) 중, 연결법인 주식 등(연결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 및 관계법인 주식 등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등(주식, 출자 또는 수익권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에 관한 배당 등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및 관계법인 주식

등에 관한 배당 등의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익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배당(주식 또는 출자에 관한 것에 한하며, 자본잉여금의 감소에 따른 것 및 분할형분할에 따른 것을 제외), 이익의 배당(분할형분할에 의한 것을 제외) 또는 잉여금의 분배(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 총액
2.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항(중간배당)에서 규정하는 금전의 분배 총액
3. 공사채투자신탁 이외의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 총액 중,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제1호의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내국법인이 받는 배당액 중에서 연결법인 주식 등에 관한 배당액은 그 국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받는 배당액(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내국법인이 받는 배당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제외. 이하 동 항에서 같음)의 원본인 주식 등을 배당액의 지불에 관한 기준일(신탁의 이익분배에 있어서는 계산의 기초가 된 기간의 말일) 이전 1월 이내에 취득하거나, 그 주식 등 또는 주식 등과 종목을 같이 하는 주식 등을 그 기준일 후 2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한 주식 등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배당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동항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에 지불하는 부채의 이자(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연결법인에 지불하는 것을 제외)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보유하는 연결법인 주식 등 및 관계법인 주식 등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식 등에 대해 그 사업연도에 받은 배당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이자액 중 배당 주식 등과 관련된 부분의 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보유하는 관계법인 주식 등에 대해 그 사업연도에 받은 배당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이자액 중 관계법인 주식 등과 관련된 부분의 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관계법인 주식 등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그 밖의 내국법인(공익법인 등 및 인격 없는 사단 등을 제외)의 발행주식?출자 총액 또는 충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수 또는 금액의 주식?출자를 보유한 경우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그 밖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연결법인 주식 등을 제외)를 말한다.

⑥ 제2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익금 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배당액 및 그 계산에 관한 상세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이들 규정에 의해 익금 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은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 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6항의 기재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라고 하여도 기재하지 않은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재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⑧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에 의해 주식 등이 이전된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 기타 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배당 등으로 간주하는 금액) ① 법인(공익법인 등 및 인격 없는 사단 등을 제외)의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유로써 금전 기타 자산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그 금전 총액 및 금전 이외의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자본금 등의 총액 또는 연결개별자본금 등의 총액 중 교부의 원인이 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 법률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간주한다.

1. 합병(적격합병을 제외)
2. 분할형분할(적격분할형분할을 제외)
3. 자본의 환불(잉여금의 배당(자본잉여금 총액의 감소에 따른 것을 제외) 중 분할형분할에 의한 것 이외의 것을 말함) 또는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
4. 자기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6항(정의)에서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서 구입에 의한 취득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취득 및 제61조의2 제14항 제1호 내지 제3호(유가증권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의 주식 또는 출자의 동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득을 제외)
5. 출자의 소각(취득한 출자에 대한 것을 제외), 출자의 환불, 사원 기타 법인의 출자자의 퇴사 도는 탈퇴에 의한 지분의 환불 기타 주식 또는 출자를 발행한 법인이 취득함 없이 소멸시키는 것.
6. 조직변경(그 조직변경에 있어서 조직변경을 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이외의 자산을 교부한 것에 한함)

② 합병법인이 포함주식(합병법인이 합병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출자를 포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말함)에 대하여 합병에 의한 주식의 할당 또는 주식 이외의 자산을 교부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이 주식할당 등(합병에 의한 주식의 할당 또는 자산의 교부를 말함)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 계산방법 기타 제2항의 규정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목 자산평가차익

제25조 (자산평가익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자신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전환을 하여 그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한 부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익금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자신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 회사갱생법(平成 14년 법률 제154호) 또는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 특례 등에 관한 법률(平成8년 법률 제95호) 규정에 의한 갱생계획허가 결정에 의해 이들 법률 규정에 따라 하는 평가전환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평가전환을 하여 그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한 부분의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평가전환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의 총액에 산입한다.

③ 내국법인에 대하여 민사재생법(平成11년 법률 제225호)의 규정에 의한 재생계획인가 결정 기타 이에 준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평가를 하는 때에, 그 자산(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의 평가차익 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 총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 규정의 적용된 경우에 동항의 평가전환에 의해 증액된 금액을 익금 총액에 산입되지 않았던 자산에 대해서는 그 평가전환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증액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차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명세(제6항에서 「평가차익명세」라고 함)의 기재가 있거나,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제6항에서 「평가차익관계서류」라고 함)가 첨부된 경우(제33조 제3항(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등)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해 동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차손 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9제6항에서 「평가차손이 있는 경우」라고 함)에는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차손명세(제6항에서 「평가차손명세」라고 함)의 기재 및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차손관계서류(제6항에서 「평가차손관계서류」라고 함)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세무서장은 평가차익명세(평가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차익명세 또는 평가차손명세)의 기재 또는 평가차익관계서류(평가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차익관계서류 또는 평가차손관계서류)의 첨부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 또는 첨부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3목 환급금 등

제26조 (환급금 등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환급을 받거나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미납국세 또는 지방세로 충당하는 경우에, 환급을 받거나 이에 충당되는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익금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법인세액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 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2. 제55조 제3항(부정행위 등에 관한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 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3. 제78조(확정신고에 의한 소득세액 등의 환급), 제81조의29(연결확정신고에 의한 소득세액 등의 환급), 제120조(계속 등의 경우 소득세액 등의 환급), 제133조(확정신고 또는 연결확정신고에 관한 경정에 의한 소득세액 등의 환급) 또는 제137조(계속 등의 경우 경정에 의한 소득세액 등의 환급) 규정에 따른 환급금
4. 제80조(결손금의 환불에 따른 환급) 또는 제81조의31(연결결손금의 환불에 따른 환급) 규정에 따른 환급금

② 내국법인이 제69조 제1항 내지 제3항(외국세액의 공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연도 후의 각 사업연도에서 이들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외국법인세 금액(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세 금액을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이 감액된 경우(그 내국법인이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동항에서 규정하는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합병법인 등이 납부하게 된 외국법인세 금액 중 내국법인이 이전 받은 사업에 관한 소득에 기인하여 납부하게 된 외국법인세가 감액된 경우를 포함. 이 본 항에서 동일) 또는 그 내국법인이 제81조의15 제1항내지 제3항(연결사업연도에 외국세액의 공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결사업연도 후의 각 사업연도에 이들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외국법인세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된 금액 중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외국법인세 금액 또는 제81조의1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별공제대상 외국법인세 금액이 감액된 부분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익금 총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익금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액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으로써 제81조의18 제1항(연결법인세의 개별귀속액의 계산) 규정에 의해 계산되는 금액 또는 부대세(이자를 제외. 제4항에서 같음)의 부담액을 수취하는 경우에 그 수취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상 익금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전항의 다른 내국법인이 동항의 내국법인으로부터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액으로 수입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써 제81조의1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 또는 부대세 부담액의 감소액을 수취하는 경우에 그 수취하는 금액은 다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내국법인이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 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환급받는 경우에 그 환급 받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삭제

제28조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자회사의 외국세액의 익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제69조 제8항(외국세액의 공제)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동조 제9항의 규정에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에 대해 동조 제8항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 총액에 산입한다.

제4관 손금의 계산

제1목 자산평가 및 상각비

제29조 (재고자산의 매상원가 등 계산 및 평가방법) ① 내국법인의 재고자산에 대해 제22조 제3항(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에 산입하는 금액)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연도 종료 시에 보유한 재고자산의 가액은 그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에 대하여 선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평가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선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방법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선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종류는 그 선정절차 기타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삭제

제31조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 계산 및 상각방법)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 시에 보유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그 상각비로써 제22조 제3항(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에 산입하는 금액) 규정에 의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 총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그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에 상각비로써 손금회계처리한 금액(이하 본

조에서 「손금회계처리액」이라 함) 중, 취득한 날 및 종류 구분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각방법 중에서 내국법인이 그 자산에 대하여 선정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각방법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근거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2항에서 「상각한도액」이라 함)에 이르는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제4항가지 「적격분사형분할 등」이라 함)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손금회계처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한 때에는 그 비용으로 한 금액(제3항 및 제4항에서 「기중손금회계처리액」이라 함) 중,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격분할형분할 등의 날 전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한 경우에 전항 규정에 의해 계산되는 상각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르는 금액은 그 적격분사형분할 등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제4항에서 「분할 등 사업연도」라고 함)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등 이후에 2월 이내에 기중손금회계처리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손금회계처리액에는 제1항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동항의 내국법인이 상각비로써 손금회계처리 한 사업연도(이하 본 항에서 「상각사업연도」라고 함) 전의 각 사업연도에 그 감가상각자산에 관련된 손금회계처리액(감가상각자산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형분할(이하 본 항에서 「적격합병 등」이라 함)에 의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하 본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함) 으로부터 이전 받은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합병법인 등의 적격합병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회계처리액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감가상각자산이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의해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이하 본 항에서 「분할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이전 받은 것인 경우에는 그 분할법인 등의 분할 등 사업연도의 기중손금회계처리액으로써 장부에 기재한 금액 및 분할 등 사업연도 정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회계처리액 중 분할 등 사업연도 이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포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중 그 상각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고, 기중손금회계처리액에는 제2항의 내국법인의 분할 등 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항의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손금회계처리액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전항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감가상각자산(적격합병에 의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감가상각자산, 제61조의11 제1항(연결납세 개시에 다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규정의 적용을 받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시가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한함) 에 대해 그 가액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이 이전 직전에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동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은 직후의 장부가액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그 못 미치는 부분의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회계처리액으로 간주한다.

⑥ 제1항의 선정할 수 있는 상각방법의 특례, 상각방법의 선정절차, 상각비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연기자산의 상각비 계산 및 상각방법)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시의 연기자산에 대해 그 상각비로써 제22조 제3항(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규정에 의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에 상각비로써 손금회계처리 한 금액(이하 본 조에서 「손금회계처리액」이라 함) 중 그 연기자산에 관한 지출의 효과 및 기간을 기초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2항에서 「상각한도액」이라 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 및 제3항에서 「적격분사형분할 등」이라 함)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이라 본 항에서 「분할승계법인 등」이라 함)에 연기자산(적격분사형분할 등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등에 이전하는 자산, 부채 또는 계약(제4항에서 「자산 등」이라 함)과 관련 있는 것에 한함)을 승계하는 경우에 그 연기자산에 대하여 손금회계처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한 때에는 그 비용으로 한 금액(제3항 및 제6항에서 「기중손금회계처리액」이라 함) 중에 그 연기자산에 대해 적격분사형분할 등을 한 날 전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상각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은 그 적격분사형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제6항에서 「분할 등 사업연도」라 함)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등의 날 이후 2월 이내에 기중손금회계처리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에서 「적격조직재편성」이라 함)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적격조직재편성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연기자산은 그 적격조직재편성 직전의 장부가액에 의해 적격조직재편성과 관련된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에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합병 적격합병 직전의 연기자산
2. 적격분할형분할,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호 및 제3호에서 「적격분할형분할 등」이라 함) 다음의 연기자산

가. 적격분할형분할 등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이하 본 호 및 제5항에서 「분할승계법인 등」이라 함)으로 이전하는 자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기자산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나.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에 이전하는 자산 등과 관련이 있는 연기자산 중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가의 것을 제외)

다. 적격분할형분할 등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등에 이전하는 자산 등과 관련이 있는 연기자산(가 및 나의 것을 제외)

⑤ 제4항(제2호 다와 관련된 부분에 한함)의 규정은 동항의 내국법인이 적격분할형분할일 이후 2월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등에 승계되는 동 호 다의 연기자산의 장부가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손금회계처리액에는 제1항의 연기자산에 대해 동항의 내국법인이 상각비로써 손금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이하 본 항에서 「상각사업연도」라 함) 전의 각 사업연도에 그 연기자산과 관련된 손금회계처리액(연기자산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형분할(이하 본 항에서 「적격합병 등」이라 함)에 의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하 본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 등의 적격합병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회계처리액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던 금액을, 그 연기자산이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의해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이하 본 항에서 「분할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인 경우로써 분할법인 등의 분할 등 사업연도의 기중손금회계처리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금액 및 분할 등 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회계처리액 중 분할 등 사업연도 이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던 금액을 포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중, 그 상각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기중손금회계처리액에는 제2항의 내국법인의 분할 등 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에 동항의 연기자산에 관한 손금회계처리액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전항의 경우에 내국법인의 연기자산(적격합병에 의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연기자산, 제61조의11 제1항(연결납세의 개시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규정의 적용을 받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시가평가자산에 해당하는 연기자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기자산에 한함)에 대해 그 가액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이 승계 직전에 그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동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은 직후의 장부가액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그 못 미치는 부분의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회계처리액으로 간주한다.

⑧ 전항들에서 정하는 것 외에 연기자산의 상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목 자산의 평가차손

제33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등)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전환을 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 그 감액한 부분의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예금, 적금, 대부금, 외상금 기타 채권(제2항에서 「예금 등」이라 함)을 제외)에 대해 재해에 따른 현저한 손상에 의해 자산가액이 장부가액에 못 미치게 되고, 회사갱생법 또는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 특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갱생계획인가가 결정됨으로써 이들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전환을 할 필요가 발생하는 등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이 자산의 평가전환을 하여 손금회계처리에 의해 장부가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감액한 부분의 금액 중 평가전환 직전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평가전환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시에 자산가액과의 차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들 법률 규정에 따라 평가전환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한 부분의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평가전환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③ 내국법인에 대하여 민사재생법의 규정에 따른 재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평가를 하고 있을 때에는 평가전환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감액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규정의 적용이 있었던 경우에 동항의 평가전환에 의해 감액된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던 자산에 대해서는 평가전환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감액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차손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제6항에서 「평가차손명세」라고 함)의 기재가 있거나,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제6항에서 「평가차손관계서류」라 함)가 첨부된 경우(제25조 제3항(자산의 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 등)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해 동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차익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제6항에서 「평가차익이 있는 경우」라고 함)에는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차익명세(제6항에서 「평가차익명세」라고 함)의 기재 및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차익관계서류(제6항에서 「평가차익관계서류」라고 함)이 첨부된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세무서장은 평가차손명세(평가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차손명세 또는 평가차익명세)의 기재 또는 평가차손관계서류(평가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차손관계서류 또는 평가차익관계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 또는 첨부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3목 임원의 급여 등

제34조 (임원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그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퇴직급여 및 제54조 제1항 (신주예약권을 대가로 하는 비용의 귀속 사업연도의 특례 등)에서 규정하는 신주예약권에 따른 것 및 이들 이외의 것으로 사용인으로써의 직무를 가지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직무에 대한 것 및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 이하 본 항에서 같음) 중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급시기가 1월 이하인 일정한 기간별인 급여(제2호에서 「정기급여」라 함)로 사업연도의 각 지급시기에 지급액이 같은 액수인 것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급여(제2호에서 「정기동액급여」라고 함)
2. 임원의 직무에 대해 소정의 시기에 확정액을 지급하는 정함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급여(정기동액급여 및 이익연동급여(이익에 관한 지표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급여를 말함. 제3호에서 같음)를 제외하도록 하고, 정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동족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것에 한함) 이외의 급여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의 급여에 한함)
3. 동족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그 업무집행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를 말함. 이하 본 호에서 같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익연동급여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그 밖의 업무집행입원 모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익연동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가. 산정방법이 그 사업연도의 이익에 관한 지표(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유가증권보고서의 제출)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보고서 ((3)에서 「유가증권보고서」라 함)에 기재되는 것에 한함)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것(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함)일 것.
      ⑴ 확정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 것이거나, 그 밖의 업무집행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익연동급여에 관한 산정방법과 같은 것일 것

⑵ 시행령에서 정하는 날까지 보수위원회(회사법 제404조 제3항(위원회의 권한 등)의 보수위원회를 말하며, 내국법인의 업무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임원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위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가 결정하는 것 기타 이에 준하는 적정한 절차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

⑶ 그 내용이 ⑵의 결정 또는 절차 종료일 이후에 지체 없이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개시되었을 것

나.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② 내국법인이 그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액(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 중 과도하게 고액인 부분의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내국법인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그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급여는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으로써 직무를 가진 임원이라 함은 임원(사장, 이사장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 중 부장, 과장 기타 법인의 사용인으로써 직제상의 지위를 가지거나 상시사용인으로써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35조 (특수지배동족회사 임원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인 특수지배동족회사(동족회사의 업무주관임원(법인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에 한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및 그 업무주관임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이하 본 항에서 「업무주관임원관련자」라고 함)가 그 동족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그 동족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출자를 제외)의 총수 또는 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에 상당하는 수 또는 금액의 주식 또는 출자를 보유하는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동족회사(업무주관임원 및 상무에 종사하는 업무주관임원관련자의 총수가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 총수의 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가 그 특수지배동족회사의 업무주관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채무면제에 따른 이익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포함하며, 퇴직급여를 제외)액(제34조 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제외) 중 급여액을 기초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특수지배동족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특수지배동족회사의 기준소득금액(사업여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시한 각 사업연도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결손금액

또는 제81조의18 제1항(연결법인세의 개별귀속액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개별소득금액 또는 개별결손금액을 기초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연도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특수지배동족회사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 시의 상황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제36조 (과도한 사용인 급여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그 임원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용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채무면제에 따른 이익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포함)액 중 과도하게 고액인 부분의 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목 기부금

제37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을 제외)의 합계액 중 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 시의 자본금 등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연결법인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이 있는 때, 그 기부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중에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 있는 때, 각 호의 기부금의 합계액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항만법(昭和25년 법률 제280호) 규정에 따른 항무국을 포함)에 대한 기부금(기부한 자가 그 기부에 의해 설치한 설비를 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 기타 특별한 이익이 기부한 자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
2.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법인의 설립을 위한 기부금 기타 법인 설립 전의 기부금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대신이 지정한 금액

가. 폭넓게 일반적으로 모집될 것

나.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써 긴급을 요하는 것에 충당될 것이 확실할 것

④ 제1항의 경우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중에 공공법인, 공익법인 등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한 법인의 주된 목적인 업무에 관련된 기부금(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이 있는 때에는 그 기부금의 합계액(그 합계액이 사업연도 종료 시의 자본금 등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법인인 공익법인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내국법인인 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 중에서 그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내국법인이 특정공익신탁(공익신탁에 관한 법률(大正11년 법률 제62호) 제1조(공익신탁)에서 규정하는 공익신탁으로 신탁의 종료 시에 신탁재산이 그 신탁의 위탁자에게 귀속하지 않은 것 및 그 신탁사무 실시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된 것을 말함)의 신탁재산으로 하기 위해 지출함 금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제1항, 제4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제4항 중「)의 금액」이라 함은 「)의 금액」(제6항에서 규정하는 특정공익신탁 중, 그 목적이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의 신탁자산으로 하기 위해 지출한 금전 금액을 포함)」라고 하는 외에 이 항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 각 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갹출금, 위로금 기타 내국법인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인 이익의 증여 또는 무상공여(광고선전 및 견본품 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및 교제비,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인 것을 제외. 제8항에서 같음)를 한 경우에 그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자산의 증여 시에 가액 또는 경제적인 이익의 공여 시의 가액에 따른 것으로 한다.

⑧ 내국법인이 자산의 양도 또는 경제적인 이익의 공여를 한 경우에 양도 또는 공여의 대가액이 그 자산의 양도 시 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의 공여 시의 가액에 비하여 낮은 때에는 그 대가액과 가액과의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 또는 무상 공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전항의 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⑨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에 산입되지 않는 제3항 각호의 금액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에 대한 기재 및 제3항 각 호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의 명세서가 첨부되었거나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⑩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에 산입되지 않게 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항의 기재 혹은 명세서 첨부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동항 서류가 보존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기재, 명세서첨부, 혹은 서류가 보존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⑪ 재무대신은 제3항 제2호의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

⑫ 제5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목 조세공과 등

제38조 (법인세액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연체세,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및 중가산과세를 제외. 이하 본 항에서 같음)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를 제외하고,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2. 국세통칙법 제35조 제2항(수정신고 등에 따른 납부)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 중 동법 제19조 제4항 제3호 다(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환급가산금 상당액) 또는 제28조 제2항 제3호 다(경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환급가산금 상당액)의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
3. 제75조 제7항(확정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가산세) (제75조의2 제6항 또는 제8항(확정신고기한 연장 특례의 경우 가산세), 제81조의23 제2항(연결확정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가산세) 또는 제81조의24 제3항 또는 제6항(연결확정신고기한 연장 특례의 경우 가산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규정에 의한 가산세

② 내국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상속세법(昭和25년 법률 제73호) 제9조의4(수익자 등이 존재하지 않는 신탁 등의 특례) 또는 제66조 제4항(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 규정에 다른 증여세 및 상속세
2.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都道府?(광역자치단체) 주민세 및 시군구민세(도민세를 포함하며,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것을 제외)

③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액으로써 수입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제81조의18 제1항(연결법인세의 개별귀속액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 또는 부대세(가산세를 제외. 제4항에서 같음) 부담액의 감소액을 지불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전항의 다른 내국법인이 동항의 내국법인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액으로써 지출해야 하는 금액으로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 또는 부대세 부담액을 지불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다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납부세액의 손금불산입 등)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납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액(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구상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액을 포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昭和34년 법률 제147호)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9조 또는 제41조 제1항(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
2. 지방세법 제11조의2, 제11조의4 내지 제11조의8 또는 제12조의2 제2항(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등) 규정에 의해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하는 지방세

② 제24조 제1항 제3호(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부분에 한함)(배당 등으로 간주하는 금액) 규정에 의해 제23조 제1항 제1호(수취배당 등의 익금불산입)의 금액으로 간주된 금액 또는 신탁의 종료에 의해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급부에 관련된 동항 제3호 금액으로, 동항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있는 내국법인이 간주된 금액에 관한 잔여재산을 분배한 법인 또는 그 신탁의 신탁법 제177조(청산수탁자의 직무)에서 규정하는 청산수탁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손실액 중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세징수법 제34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
2. 지방세법 제11조의3(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의해 납부하거나 납입하여야 하는 지방세

제40조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액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제68조 제1항(소득세액의 공제)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액에 대해 동항 또는 제78조 제1항(확정신고에 다른 소득세액 등의 환급) 혹은 제133조 제1항(확정신고 또는 연결확정신고에 관한 경정에 의한 소득세액 등의 환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세액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제69조 제1항(외국세액의 공제)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동조 또는 제78조 제1항(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액 등의 환급) 혹은 제133조 제1항(확정신고 또는 연결확정신고에 관한 경정에 의한 소득세액 등의 환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목 압축기장

제42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의 압축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청산중인 법인을 제외.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이 각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의 취득?개량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보조금 또는 급부금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에 준하는 것(제44조까지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함)의 교부를 받고, 그 사업연도에 국고보조금 등으로써 교부의 목적에 적합한 고정자산의 취득?개량을 한 경우(국고보조금 등의 반환을 요하지 않을 것이 그 사업연도 종료 시까지 확정된 경우에 한함)에 그 고정자산에 대해 그 취득?개량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등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본 항에서 「압축한도액」이라 함)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손금회계처리에 의해 감액하거나 그 압축한도액 이하의 금액을 사업연도의 확정한 결산에서 적립금으로써 적립하는 방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포함)으로 회계처리한 때에는 감액 또는 회계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국고보조금 등의 교부에 대신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교부 받은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고정자산에 대해 고정자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본 항에서 「압축한도액」이라 함)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손금회계처리에 의해 감액하거나 그 압축한도액 이하의 금액을 사업연도의 확정한 결산에서 적립금으로써 적립하는 방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포함)에 의해 회계처리한 때에는 감액 또는 회계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감액 또는 회계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세무서장은 전항의 기재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⑤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조에서 「적격분사형분할 등」이라 함)에 의해 국고보조금 등(적격분사형분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부터 그

적격분사형분할 등의 직전까지의 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것에 한함)으로써 취득 또는 개량 한 고정자산(국고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에 적합한 것에 한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을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제6항에서 「분할승계법인 등」이라 함)으로 이전하는 경우(국고보조금 등의 반환을 요하지 않을 것이 직전까지 확정된 경우에 한함)에 그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등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한 때에 그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의해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적격분사형분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 때부터 그 적격분사형분할 등의 직전까지의 기간 내에 취득한 것에 한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을 분할승계법인 등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 고정자산에 대해 그 고정자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부가액을 감액한 때에 그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등 이후 2월 이내에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⑧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에 의해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에서 제1항, 제2항, 제5항 또는 제6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고정자산의 이전을 받은 경우에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기타 각 항의 규정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국고보조금 등에 관한 특별계정 금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청산중인 법인을 제외.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이 각 사업연도(피합병법인의 합병(적격합병을 제외. 제2항 및 제3항에서 「비적격합병」이라 함)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제외)에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등의 교부를 받은 경우(그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을 요하지 않을 것이 그 사업연도 종료시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그 국고보조금 등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확정한 결산에서 특별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포함)으로 회계처리한 때에 그 회계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특별계정을 설정한 내국법인은 국고보조금 등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 또는 반환을 요하지 않을 것이 확정된 경우, 그 내국법인이 비적격합병에 의해 해산한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국고보조금 등에 관한 특별계정의 금액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외하게 된 제1항의 특별계정 금액 또는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한 특별계정금액(제8항의 규정에 의해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제8항 및 제10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함)에 승계된 것을 제외)은 각각 제외된 날(전하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비적격합병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비적격합병일 전일) 또는 제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회계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세무서장은 전항의 기재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조에서 「적격분사형분할 등」이라 함)을 하거나, 그 적격분사형분할 등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부터 적격분사형분할 등 직전까지의 기간 내에서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등(반환을 요하지 않을 것이 직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에 한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을 교부 받은 경우(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에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등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특별계정에 상당하는 것(이하 본 조에서 「기중특별계정」이라 함)으 설정한 때에 설정한 기중특별계정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 또는 개량한 고정자산(국고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에 적합한 것에 한함)을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이하 본 조에서 「분할승계법인 등」이라 함)에 이전할 것
2.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관한 분할승계법인 등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부 목적에 적합한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할 것이 예상될 것

⑦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등 이후 2월 이내에 기중특별계정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⑧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에서 「적격조직재편성」이라 함)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적격조직재편성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특별계정 금액 도는 기중특별계정 금액은 그 적격조직재편성에 관한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합병 적격합병 직전에 보유한 국고보조금 등(반환을 요하지 않을 것이 조적격조직재편성 직전가지 확정되지 않은 것에 한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관한 제1항의 특별계정 금액

2. 적격분할형분할 적격분할형분할 직전에 보유한 국고보조금 등에 관한 제1항의 특별계정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정하는 것

가.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 또는 개량한 고정자산(국고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에 적합한 것에 한함)을 적격분할형분할에 의해 분할승계법인에게 이전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등에 관한 특별계정 금액

나. 적격분할형분할에 관한 분할승계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부의 목적에 적합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등에 관한 특별계정 금액

3. 적격분사형분할 등 적격분사형분할 등 직전에 보유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관한 제1항의 특별계정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정해진 바 및 적격분사형분할 등의 경우에 설정된 국고보조금 등에 관한 기중특별계정 금액

가.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 또는 개량한 고정자산(국고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에 적합한 것에 한함)을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등에 이전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등에 관한 특별계정 금액

나.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관한 분할승계법인 등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부 목적에 적합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하기위한 국고보조금 등에 관한 특별계정 금액

⑨ 전항의 규정은 제1항의 특별계정을 설정한 내국법인으로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에서 「적격분할 등」이라 함)을 한 경우(특별게정 및 기중특별계정 양자를 설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등에게 그 기중특별계정 금액만을 승계하는 것을 제외)에는 그 특별계정을 설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분할 등 이후 2월 이내에 적격분할 등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등에게 승계하는 특별계정 금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⑩ 제8항의규정에 의해 합병법인 등이 승계 받은 제1항의 특별계정 금액 또는 기중특별계정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동항의 규정에 의해 설정하고 있는 동항의 특별계정으로 간주한다.

⑪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후설립(제2조제12호의6 (정의)에서 규정하는 사후설립을 말함)이 이루어진 경우에 앞의 각 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제44조 (특별계정을 설정한 경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 압축액의 손금산입) ① 제34조 제1항의 특별계정 금액(이미 해지된 경우를 제외)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그 교부 목적에

적합한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동조 제8항 규정에 의해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이하 본 항 및 제6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특별계정 금액을 승계 받은 경우(이하 본 항에서 「승계한 경우」라 함)에는 피합병법인 등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 또는 개량을 한 경우를 포함. 이하 본 항 및 제4항에서 같음)을 하거나, 취득 또는 개량을 한 날(승계한 경우에는 동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조직재편성(제6항에서 「적격조직재편성」이라 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경우에 그 고정자산에 대해 확정한 날에 특별계정 금액 중 반환을 요하지 않을 것이 확정된 국고보조금 등에 관한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본 항 및 제4항에서 「압출한도액」이라 함)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손금회계처리에 의해 감액하거나 그 압축한도액 이하의 금액을 사업연도의 확정한 결산에서 적립금으로써 적립하는 방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포함)에 의해 회계처리한 때에 감액 또는 회계 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감액 또는 회계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세무서장은 전항의 기재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특별계정 금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 및 제5항에서 「적격분사형분할 등」이라 함)을 하거나 그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등 직전 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그 교부 목적에 적합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한 경우(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 시점부터 적격분사형분할시 등 직전까지의 기간 내에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거나 그 취득 또는 개량을 한 고정자산을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에, 그 고정자산에 대해 압축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한 때에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일 등 이후 2월 이내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이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피합병법인 등에서 제1항 또는 제4항 규정의 적용을 받은 고정자산의 이전을 받은 경우에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기타 각 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 압축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청산중의 법인을 제외.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이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기, 가스, 수도의 수요자, 열공급을 받는 자 또는 철도, 궤도, 유선방송전화 이용자 기타 그 시설에 의해 편익을 제공받는 자(이하 본 조에서 「수익자」라 함)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를 교부 받고, 그 사업연도에 금전 또는 자재로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고정자산에 대해 교부 받은 금전 또는 자재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본 항에서 「압축한도액」이라 함)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손금회계처리에 의해 감액하거나 그 압축한도액 이하의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확정된 계산에서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포함)으로 회계처리한 때에 감액 또는 회계 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전기사업법(昭和39년 법률 제170호) 제2조 제1항 제1호(정의)에서 규정하는 일반전기사업, 동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매전기사업 도는 동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전기사업
2. 가스사업법(昭和29년 법률 제51호) 제2조 제1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일반가스사업 또는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간이가스사업
3. 수도법(昭和32년 법률 제177호) 제3조 제2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수도사업
4. 열공급사업법(昭和47년 법률 제88호) 제2조 제2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열공급사업
5. 철도사업법(昭和61년 법률 제92호) 제2조 제1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철도사업
6. 궤도법(大正10년 법률 제76호) 제1조 제1항(궤도법의 적용대상)에서 규정하는 궤도를 부설하여 하는 운수사업
7.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昭和32년 법률 제152호) 제2조 제2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유선방송전화업무에 관한 사업
8.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동항 각호의 사업에 관한 수익자로부터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교부 받은 경우에 그 고정자산에 대해 고정자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본 항에서 「압축한도액」이라 함)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손금회계처리에 의해 감액하거나 그 압축한도액 이하의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확정된 결산에서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포함)에 의해 회계처리한 때에 감액 또는 회계 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감액

또는 회계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세무서장은 전항의 기재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조에서 「적격분사형분할 등」이라 함)에 의해 고정자산(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격분사형분할시 직전까지의 기간 내에 동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그 사업에 관련된 수익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를 교부 받거나, 교부 받은 금전 또는 자재로 취득한 것으로 그 시설을 구성하는 것에 한함)을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제6항에서 「분할승계법인 등」이라 함)에 이전한 경우에 그 고정자산에 대해 교부 받은 금전 금액 또는 자재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한 때에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의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의해 동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격분사형분할시 등의 직전까지의 기간 내에 그 사업과 관련된 수익자로부터 교부 받은 것에 한함)을 분할승계법인 등에 이전하는 경우에 그 고정자산에 대해 고정자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한 때에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일 등 이후 2월 이내에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⑧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에 의해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에서 제1항, 제2항, 제5항 또는 제6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고정자산을 이전 받은 경우에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기타 각 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46조 (비출자조합이 부과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 압축액의 손금산입) ① 협동조합 등 중 출자를 하지 않은 자가 각 사업연도에 그 조합원 또는 회원에 대하여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사업연도의 부과에 근거하여 납부된 금액(이하 본 항에서 「납부금」이라 함)으로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한 경우에 그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한 납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본 항에서

「압축한도액」이라 함)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손금회계처리에 의해 감액하거나 그 압출한도액 이하의 금액을 사업연도의 확정된 계산에서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때에 감액 또는 회계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감액 또는 회계 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세무서장은 전항의 기재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 (보험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 압축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청산중의 법인을 제외.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이 각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고정자산(내국법인이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제8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함)이 되는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 및 제8항에서 「적격조직재편성」이라 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조직재편성에 관련된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제8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함)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 이하 본 조에서 「소유고정자산」이라 함)으 멸실 또는 손괘에 의해 보험금,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제49조가지에서 「보험금 등」이라 함)을 지불 받고, 사업연도에 그 보험금 등으로 멸실한 소유고정자산을 대체하는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하 본 조에서 「대체자산」이라 함)을 취득(제64조의2 제3항(리스거래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리스거래 중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취득을 제외. 이하 본 항 및 제5항에서 같음) 하거나 손괴한 소유고정자산 혹은 대체자산이 되어야 하는 자산을 개량한 경우에 이들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한 보험 등과 관련된 차익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본 항에서 「압축한도액」이라 함)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손금회계처리에 의해 감액하거나 그 압축한도액 이하의 금액을 사업연도의 확정된 결산에서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포함)으로 회계처리한 때에 그 감액 또는 회계 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소유고정자산의 명실 또는 손괴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불에 대신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체자산을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체자산에 대해 대체자산에 관한 차익금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본 항에서 「압축한도액」이라 함)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손금회계처리에 의해 감액하거나 그 압축한도액 이하의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확정된 결산에서 적립으로 적립하는

방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포함)으로 회계처리한 때에 그 감액 또는 회계 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감액도는 회계 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세무서장은 전항의 기재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기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⑤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조에서 「적격분사형분할 등」이라 함)으로 고정자산(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그 적격분사형분할 등의 직전까지의 기간 내에 소유고정자산의 멸실 혹은 손괴에 의해 보험금 등을 지불 받거나, 그 보험금등으로 취득한 대체자산 또는 그 기간 내에 멸실 혹은 손괴에 의해 보험금 등을 지불 받거나 그 보험금으로 개량한 손괴된 소유고정자산 혹은 대체자산이 되어야 하는 자산에 한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을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제6항에서 「분할승계법인 등」이라 함)에 이전하는 경우에 그 고정자산에 대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압축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한 때에 그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의해 대체자산(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적격분사형분할 등의 직전까지의 기간 내에 소유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불을 대신하여야 하는 것으로 교부 받은 것에 한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을 분할승계법인 등에 이전하는 경우에 그 대체자산에 대해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압축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한 때에 그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일 등 이후 2월 이내에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⑧ 합병법인 등이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피합병법인 등이 제1항, 제2항, 제5항 또는 제6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고정자산을 이전 받는 경우에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기타 각 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보험차익 등에 관한 특별계정 금액의 손금산입) ① 보험금 등을 지불 받은 내국법인(청산중의 법인을 제외.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이 지불 받은 사업연도(피합병법인의 합병(적격합병을 제외. 제2항 및 제3항에서 「비적격합병」이라 함)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제외) 종료일의

익일부터 2년을 경과한 날의 전일(재해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그날까지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체자산의 동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제6항 및 제8항에서 「지정일」이라 함)로 한다)까지의 기간 내에 그 보험금으로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 또는 개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되는 적격합병을 하거나, 적격합병과 관련된 합병법인이 취득 또는 개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포함)에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험금 등에 관한 차익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사업연도의 확정된 결산에서 특별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포함)으로 회계처리한 때에 그 회계 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특별계정을 설정한 내국법인은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내국법인이 비적격합병에 의해 해산한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등에 관한 특별계정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게 된 제1항의 특별계정 금액 또는 전항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된 특별계정의 금액(제8항의 규정에 의해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제8항 및 제10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함)에 승계된 것을 제외)은 각각 제외된 날(전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비적격합병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비적격합병일의 전일) 또는 제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회계 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세무서장은 전항의 기재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조에서 「적격분사형분할 등」이라 함)을 하거나, 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적격분사형분할 등의 직전까지의 기간 내에 보험금 등을 지불 받은 경우(그 적격분사형분할일 등부터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 이후 2년을 경과한 날의 전일(지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까지의 기간 내에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관한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제8항 및 제9항에서 「분할승계법인 등」이라 함)이 그 보험금 등으로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 또는 개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함)에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보험금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동항의 특별계정에 상당하는 것(이하 본 조에서 「기중특별계정」이라 함)을 설정한 때에 설정한 기중특별계정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일 등 이후 2월 이내에 기중특별계정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⑧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에서 「적격조직재편성」이라 함)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적격조직재편성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특별계정 금액 또는 기중특별계정 금액은 그 적격조직재편성에 관한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합병 적격합병 직전에 보유하는 보험금 등에 관한 제1항의 특별계정 금액
2. 적격분할형분할 적격분할형분할 직전에 보유하는 보험금 등에 관한 제1항의 특별계정 금액 중 그 적격분할형 분할에 관련된 분할승계법인이 취득개량기간(그 적격분할형분할일부터 적격분할형분할과 관련된 분할법인이 보험금 등을 지불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 이후 2년을 경과한 날의 전일(지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내에 시행할 것이 예상되는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험금 등에 관한 것
3. 적격분할형분할 등 적격분사형분할 등의 직전에 보유하는 보험금에 관한 제1항의 특별계정 금액 중 그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관련된 분할승계법인 등이 취득개량기간(적격분사형분할일 등부터 적격분사형분할에 관련된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이 그 보험금 등을 지불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 이후 2년을 경과한 날의 전일(지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내에 시행할 것이 예상되는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에 관한 것 및 그 적격분사형분할 등을 할 때에 설정한 보험금 등에 관련된 기중특별계정 금액

⑨ 제8항 규정은 제1항의 특별계정을 설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에서 「적격분할 등」이라 함)을 한 것(특별계정 및 기중특별계정을 모두 설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써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등에 기중특별계정 금액만을 승계한 것을 제외)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을 서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그 적격분할일 등 이후 2월 이내에 그 적격분할 등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등에 승계하는 특별계정 금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해 합병법인 등이 승계 받은 제1항의 특별계정 금액 또는 기중특별계정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동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하고 있는 동항의 특별계정 금액으로 간주한다.

⑪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후설립(제2조 제12호의6(정의)에서 규정하는

사후설립을 말함)이 이루어진 경우에 각 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제49조 (특별계정을 설정한 경우의 보험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 압축액의 손금산입) ① 전조 제1항의 특별계정 금액(이미 제외되게 된 것을 제외)을 보유하는 내국법인이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특별계정 그액이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를 받은 것인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제4항에서 「취득지정기간」이라 함) 내에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 또는 개량을 한 경우에 취득 또는 개량과 관련된 고정자산에 대해 그 취득 또는 개량을 한 날에 그 특별계정 금액 중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한 보험금 등에 관한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본 항 및 제4항에서「압축한도액」이라 함)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손금회계처리에 의해 감액하거나 그 압축한도액 이하의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확정된 계산에서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포함)으로 회계처리한 때에 감액 또는 회계 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감액 또는 회계 처리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세무서장은 전항의 기재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특별계정 금액을 보유하는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 및 제5항에서 「적격분사형분할 등」이라 함)을 하거나, 그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 시점부터 적격분사형분할 등 직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 또는 개량을 한 경우(취득 또는 개량에 관한 취득지정기간 내에 그 취득 또는 개량을 하거나 취득 또는 개량을 한 고정자산을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에 그 고정자산에 대해 압축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한 때에 그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일 등 이후 2월 이내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에 의해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으로 제1항 또는 제4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고정자산을 이전 받는 경우에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기타 각 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압축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청산중인 법인을 제외.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이 각 사업연도에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 및 제7항에서 「적격조직재편성」이라 함)에 의해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이하 본 항 제7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피합병법인 등과 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인 것을 포함)으로 다음 각 호의 것을 각각 다른 자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다른 자가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그 피합병법인 등과 다른 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인 것을 포함)으로 다음 각 호의 것(교환을 위해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과 교환하고, 그 교환에 의해 취득한 각 호의 자산(이하 본 조에서 「취득자산」이라고 함)을 교환에 의해 양도한 각 호의 자산(이하 본 조에서 「양도자산」이라 함)의 양도 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제공한 경우에 그 취득자산에 대해 교환으로 발생한 차익금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손금회계처리에 의해 감액한 때에 그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토지(건물 또는 건축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 및 농지법(昭和17년 법률 제227조) 제2조 제1항 (정의)에서 규정하는 농지 위에 존재하는 경작에 관한 권리를 포함)
2. 건물 (이에 속하는 설비 및 건축물을 포함)
3. 기계 및 장치
4. 선박
5. 광업권(조광권 및 채석권 기타 토석을 채굴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포함)

② 전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들 규정에서 교환 시의 취득자산 가액과 양도자산 가액과의 차이가 이들 가액 중 많은 쪽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세무서장은 전항의 기재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⑤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 및 제6항에서 「적격분사형분할 등」이라 함)에 의해 취득자산(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그 적격분사형분할 등의 직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교환에

의해 취득하고, 양도 자산의 양도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제공한 것에 한함)을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산에 대해 동항에서 규정하는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한 때에 그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일 등 이후 2월 이후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⑦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이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피합병법인 등에서 제1항 또는 제5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고정자산의 이전을 받는 경우에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기타 각 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삭제

제7목 충당금

제52조 (대손충당금) ① 내국법인이 회사갱생법 규정에 따른 갱생계획인가 결정에 근거하여 보유하는 금전채권의 변제를 유예하거나 분할지불로 변제되는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그 일부에 대해 대손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의 한 손실이 예상되는 금전채권(금전채권과 관련된 채무자에 대한 다른 금전채권(적격분할형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분할형분할에 의해 분할승계법인에 이전하는 것을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금전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합병 또는 적격분할형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분할형분할(제2항에서 「비적격합병 등」이라 함)에 의해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제2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함)에 이전하는 금전채권을 제외. 이하 본 조에서 「개별평가금전채권」이라 함)의 손실 예상액으로써 각 사업연도에 손금회계처리에 의해 대손충당금계정에 편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편입된 금액 중, 사업연도 종료시에 그 개별평가금전채권의 징수 또는 변제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을 기초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5항에서 「개별대손충당금편입한도액」이라 함)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전채권(개별평가금전채권 및 비적격합병 등에 의해 합병법인 등에 이전하는 금전채권을 제외. 이하 본 항 및 제8항에서 「일괄평가금전채권」이라 함)의 대손에 의한 손실 예상액으로 각 사업연도에 손금회계처리에 의해 대손충당금 계정에 편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편입된 금액 중 그 사업연도 종료 시에 보유하는

일괄평가금전채권액 및 최근의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전채권의 대손에 의한 손실액을 기초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대손충당금 계정에 편입된 금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세무서장은 전항의 기재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가 없었던 것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⑤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조에서 「적격분사형분할 등」이라 함)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에 개별평가금전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개별평가금전채권에 대하여 제1항의 대손충당금계정에 상당하는 것(이하 본 조에서 「기중대손충당금계정」이라 함)을 설정한 때에는 그 설정한 기중대손충당금계정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그 개별평가금전채권에 대해 적격분사형분할 등의 직전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한 경우에 동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개별대손충당금편입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은 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일 등 이후 2월 이내에 기중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⑦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후 본 항 및 제10항에서 「적격조직재편성」이라 함)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적격조직재편성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대손충당금계정 금액 또는 기중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은 그 적격조직재편성에 관련된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제10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함)에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합병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해 적격합병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대손충당금계정 금액
2. 적격분할형분할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적격분할형분할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대손충당금계정 금액 중 그 적격분할형분할에 관련된 분할승계법인에 이전하는 금전채권 관련 부분의 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적격분사형분할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기중 대손충당금계정 금액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개별평가금전채권 및 일괄평가금전채권에는 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연결법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금전채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⑨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제7항 규정에 의해 적격분할형분할에 관련된 분할승계법인에 승계된 것을 제외)은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다.

⑩ 제7항 규정에 의해 합병법인 등이 승계 받은 대손충당금계정 금액 또는 기중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의 적격조직재편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⑪ 제10조의3 제1항(과세소득 범위의 변경 등의 경우 이 법률의 적용)에서 규정하는 특정보통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특정보통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⑫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7항내지 제11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3조 (반품조정충당금) ① 내국법인으로 출판업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이하 본 조에서 「대상사업」이라 함)을 경영하는 자 중 평소 판매하는 대상사업에 관한 재고자산의 대부분에 대해 판매 시의 가액으로 환매하는 특약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약을 체결한 자가 그 재고자산(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합병 또는 적격분할형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분할형분할에 의해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에 대한 그 특약에 근거하여 환매에 따른 손실 예상액으로써 각 사업연도 종료 시에 손금회계처리에 의해 반품조정충당금계정에 편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편입된 금액 중 최근에 그 대상사업과 관련된 재고자산에 대한 특약에 근거한 환매 실적을 기초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4항에서 「반품조정충당금편입한도액」이라 함)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반품조정충당금계정에 편입된 금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세무서장은 전항의 기재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제6항까지에서 「적격분사형분할 등」이라 함)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에 대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의 반품조정충당금계정에 상당하는 것(이하 본 조에서 「기중 반품조정충당금계정」이라 함)을 설정한 때에는 그 설정한 기중 반품조정충당금계정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그 적격분사형분할 등의

직전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한 경우에 동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되는 반품조정충당금편입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은 그 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일 등 이후 2월 이내에 기중 반품조정충당금계정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항 및 제8항에서 「적격조직재편성」이라 함)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적격조직재편성 구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반품조정충당금계정 금액 또는 기중 반품조정충당금계정 금액은 그 적격조직재편성에 관한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제8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함)에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합병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적격합병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반품조정충당금계정의 금액
2. 적격분할형분할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적격분할형분할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된 반품조정충당금계정 금액 중 그 적격분할형분할에 관한 분할승계법인으로 이전하는 대상사업 관련 부분의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적격분사형분할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기중 반품조정충당금계정의 금액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된 반품조정충당금계정의 금액(전항 규정에 의해 적격분할형분할에 관한 분할승계법인에 승계된 것을 제외)은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합병법인 등이 승계를 받은 반품조정충당금계정 금액 또는 기중 반품조정충당금계정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의 적격조직재편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다.

⑨ 제10조의3 제1항(과세소득범위의 변경 등의 경우 이 법률의 적용)에서 규정하는 특정보통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특정보통법인이 해당하게 되는 날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제1항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⑩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제1항,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7목의2 신주예약권을 대가로 하는 비용 등

제54조 (신주예약권을 대가로 하는 비용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특례 등) ① 내국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그 용역의 제공에 관한

비용에 대해 그 대가로써 신주예약권(용역제공의 대가로써 그 개인에게 발생하는 채권을 그 신주예약권과 교환하는 납입으로 대신하여 상계하여야 하는 것에 한함)을 발행한 때(합병, 분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이하 본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함) 시 그 합병법인 등에 관련된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주식교환완전모법인 또는 주식이전완전모법인(제2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함)인 내국법인이 그 합병 등에 관한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주식교환완전자법인 또는 주식이전완전자법인의 신주예약권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의 신주예약권(제2항 및 제3항에서 「승계신주예약권」이라 함)을 교부한 때를 포함)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용역제공에 대해 소득세법 기타 소득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 개인의 동법에서 규정하는 급여소득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금액에 관한 수입금액이어야 하는 금액 또는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사유(제2항에서 「급여 등 과세사유」라고 함)가 발생한 날에 그 용역제공을 받은 것으로 하여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그 개인에게 있어서 그 용역제공에 대해 급여 등 과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동항의 신주예약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승계신주예약권을 교부한 합병법인 등인 내국법인을 포함. 이하 본 조에서 「발행법인」이라 함)의 그 용역제공에 관한 비용은 그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신주예약권(승계신주예약권을 포함)이 소멸한 때에는 소멸에 따른 이익은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법인은 확정신고서에 그 신주예약권의 1주 당 그 발행시의 가액, 발행 수, 그 사업연도에 행사된 수, 기타 신주예약권의 상관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내국법인이 신주예약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예약권과 교환 납입되는 금전의 금액(금전지불에 대신하여 급부되는 금전 이외의 자산가액 및 상계되는 채권액을 포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이 그 신주예약권 발행 시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신주예약권을 무상으로 발행한 경우를 포함) 또는 신주예약권과 교환으로 지불되는 금전의 금액이 그 신주예약권 발행 시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못 미치는 부분의 금액(신주예약권을 무상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 시 가액) 또는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5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7목의3 부정행위 등에 관한 비용 등

제55조 (부정행위 등에 관한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소득금액,

결손금액 혹은 법인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함으로써(이하 본 항 및 제2항에서 「은폐가장행위」라 함) 그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은폐가장행위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규정은 내국법인이 은폐가장행위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이외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내국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세와 관련된 지연세,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불납부가산세 및 중가산세 및 인지세법(昭和42년 법률 제23호) 규정에 따른 과태료
2.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연체금(동법 제65조 (법인의 都道府?민세에 관한 납기한 연장의 경우의 연체금), 제72조의45의2(법인사업세에 관한 납기한 연장의 경우의 연체금) 또는 제327조(법인의 시군구민세에 관한 납기한 연장의 경우의 연체금) 규정에 의해 징수되는 것을 제외), 과소신고가산금, 불신고가산금 및 중가산금

④ 내국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벌금 및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것 및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써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부과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 및 과태료
2. 국민생활안전긴급조치법(昭和48년 법률 제121호)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연체금
3.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昭和22년 법률 제54호)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연체금
4. 금융상품거래법 제6장의2(과징금)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연체금
5. 공인회계사법(昭和23년 법률 제103호)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연체금

⑤ 내국법인이 공여하는 형법(明治40년 법률 제45호) 제198조 (증회)에서 규정하는 증뢰 또는 부정경쟁방지법(平成5년 법률 제47호) 제18조 제1항(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이익공여 등의 금지)에서 규정하는 금전 기타 이익에 해당하는 금전, 금전 이외의 자산가액 및 경제적인 이익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비용 또는 손실액(증여에 요하는 비용 또는 공여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액을 포함)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삭제

제8목 이월결손금

제57조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월) ①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본 항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전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것 및 제80조(결손금의 회복에 의한 환급) 규정에 의해 환급 받는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것을 제외)이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결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결손금액에 대해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 전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문 또는 제58조 제1항(청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재해에 의한 손실금의 이월)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적격합병 등(적격합병 또는 합병과 유사한 분할형분할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중 적격분할형분할에 해당하는 것(이하 본 조에서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을 말함. 이하 본 항 및 제3항에서 같음)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적격합병 등에 관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하 본 항 및 제3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함)의 적격합병일 등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각 사업연도(이하 본 항 및 제3항에서 「전 7년내 사업연도」라 함)에 발생한 결손금액(피합병법인 등이 결손금액(본 항 및 제6항 규정에 의해 피합병법인 등의 결손금액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하고, 제5항 또는 제9항 규정에 의해 없는 것이 되는 것을 제외. 제3항, 제4항 및 제8항에서 같음)이 발생한 전 7년내 사업연도에 대하여 청색신고서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을 것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액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전항 규정에 의해 피합병법인 등의 전 6년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된 것 및 제80조 규정에 의해 환급 받아야 하는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것을 제외. 이하 본 항에서 「미처리결손금액」이라 함)이 있는 때에 그 적격합병 등에 관한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이하 본 항 및 제3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함)의 적격합병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본 항 및 제3항에서 「합병등 사업연도」라고 함)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전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전 7년 내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리결손금액은 각각 그 미처리결손금액이 발생한 전 7년 내 사업연도개시일이 속하는 합병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합병법인 등의 합병 등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에 개시한 피합병법인 등의 전 7년 내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리결손금액에 대해서는 그 합병 등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으로 간주한다.

③ 적격합병 등에 관한 피합병법인 등과 합병법인 등(합병법인 등이 적격합병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적격합병 등에 관한 다른 피합병법인 등. 제1호에서 같음)과의 사이에 특정자본관계(어느 일방의 법인이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그 상대방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출자를 제외) 총수 또는 충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수 또는 금액의 주식 또는 출자를 직접?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관계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함. 이하 본 항 및 제5항에서 같음)가 있거나, 그 특정자본관계가 합병법인 등의 적격합병 등에 관한 합병등 사업연도 개시일 5년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적격합병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적격합병 등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 전항에서 규정하는 미처리결손금액에는 그 피합병법인 등의 다음 각 호의 결손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피적격합병 등의 특정자본관계 사업연도(피합병법인 등과 합병법인 등과의 사이에 특정자본관계가 생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함. 제2호에서 같음) 전의 각 사업연도에 전 7년 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피합병법인 등에 있어서 제1항 규정에 의해 전 7년 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것 및 제80조 규정에 의해 환급 받아야 하는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것을 제외. 제2호에서 같음)
2. 피합병법인 등의 특정자본관계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전 7년 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 중 제62조의6 제2항(특정자산에 관한 양도 등 손실액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는 특정자산양도 등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④ 합병유사 적격분할형분할에 관한 분할법인의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내국법인과 특정자본관계법인(내국법인과의 사이에 특정자본관계가 있는 법인을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과의 사이에 내국법인을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또는 피현물출자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이하 본 항에서 「적격합병 등」이라 함)가 이루어지거나, 그 특정자본관계가 내국법인의 적격합병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본 항에서 「합병 등 사업연도」라 함) 개시일의 5년 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그 적격합병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적격합병 등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 그 내국법인의 합병 등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내국법인의 결손금액(제2항 및 제6항 규정에 의해 내국법인의 결손금액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하고, 본 항 및 제9항 규정에 의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제외. 이하 본 항에서 같음) 중 다음 각 호의 결손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특정자본관계 사업연도(내국법인과 특정자본관계법인과의 사이에 그 특정자본관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함. 제2호에서 같음) 전의 각 사업연도에서 전 7년 내 사업연도(합병 등 사업연도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각 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제1항 규정에 의해

전 7년 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것 및 제80조 규정에 의해 환급 받아야 하는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것을 제외. 제2호에서 같음)

2. 내국법인의 특정자본관계 사업연도 이후 각 사업연도에서 전 7년 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 중 제62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자본양도 등 결손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금액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⑥ 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연결법인인 내국법인이 연결모법인 사업연도(제15조의2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 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항 및 제9항에서 같음) 개시일의 익일부터 그 종료일 사이에 이루어진 것에 한함)을 한 경우 또는 제4조의5 제2항(연결납세의 승인취소) 규정에 의해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연결모법인인 경우에는 그 연결모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으로 함으로써 승인이 취소된 경우, 연결자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개시일에 그 연결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함으로써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 혹은 제4조의5 제3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하 본 항에서 「승인취소 등의 경우」라 함)에 그 분할형분할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각 연결사업연도 또는 그 승인취소 등의 경우 최종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그 내국법인의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제81조의9 제5항(연결결손금의 이월)에서 규정하는 연결결손금개별귀속을 말함. 이하 본 항 및 제7항에서 같음)이 있는 대에 그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은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이 발생한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으로 간주한다.

⑦ 적격합병에 관한 피합병법인이 연결법인(연결자법인으로써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에 그 연결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을 하는 것에 한함)인 경우 또는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에 관한 분할법인이 연결법인(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에 그 연결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을 하는 것에 한함)인 경우에는 이들 연결법인의 적격합병 또는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으로, 연결확정신고를 청색신고서인 확정신고서로, 그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이 발생한 연결사업연도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사업연도로 간주하여 동항 및 제3항 규정을 적용한다.

⑧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항의 적격합병 또는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에 관한 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되는 연결법인에게 동항에서 규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에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전 7년 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내국법인의 각 호의 사업연도에 동항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결손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연결법인인 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을 한 경우의 분할형분할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그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각 사업연도에 제2항 또는 제6항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으로 간주된 것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가.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개시일에 하는 분할형분할

나. 연결모법인 또는 제81조의9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결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최초의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개시일의 익일부터 그 종료일 사이에 하는 분할형분할

다. 제4조의3 제6항9연결납세 승인신청)에서 규정하는 연결신청특례연도 개시일의 익일부터 동항의 규정 적용을 받아 하는 동조 제1항의 신청에 대해 제4조의2 승인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 하는 분할형분할

2. 연결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최초의 연결모법인 사업연도9내국법인이 제4조의3 제9항 제1호 또는 제11항 제1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최초의 연결모법인 사업연도의 다음 연결모법인 사업연도로 하고, 그 내국법인이 연결모법인 사업연도에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다른 내국법인(동 호의 법인을 제외)인 경우에는 그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날부터 그 연결모법인 사연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하 본 호에서 「최초연결모법인 사업연도」라고 함)에 그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인 다른 연결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것에 한하도록 하고, 다름 각 호의 것을 제외)을 한 경우의 그 합병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

가. 최초연결모법인 사업연도 개시일에 하는 합병

나. 제81조의9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결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으로 최초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개시일의 익일부터 그 종료일 사이에 하는 것

3. 연결법인인 내국법인이 제1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최초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후에 제4조의5 제1항 혹은 제2항 규정에 의해 제4조의2의 승인취소된 경우 또는 제4조의5 제3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최초 연결사업연도 후의 각 사업연도 연결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

⑩ 연결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연결법인 단체 사업연도(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전항 제1호 가 또는 나의 것을 제외)을 한 경우의 분할형분할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내국법인이 제4조의5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함)

규정에 의해 제4조의2 승인이 취소된 경우 에 그 취소된 날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함)에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을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합병법인 등으로 하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 등(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없는 법인(연결결손금액으로 간주되는 결손금액을 보유한 법인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을 제외. 이하 본 항에서 「비지배법인」이라 함)을 제2항에서 규정하는 피합병법인 등으로 하는 것에 한함)을 한 경우에 그 비지배법인의 동항에서 규정하는 미처리결손금액 동항 및 제3항
2. 내국법인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으로 하는 제5항의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비지배법인을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 하는 것에 한함)을 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의 동항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액 동항

⑪ 제1항의 규정은 동항 내국법인이 결손금액(제2항 또는 제6항 규정에 의해 그 내국법인의 결손금액을 간주되는 것을 제외)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청색신고서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에 연속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들 규정에 의해 내국법인의 결손금액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합병 등 사업연도 또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최종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에 연속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⑫ 제2항의 합병법인 등이 동항의 적격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 기타 동항 내지 제10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 (특정주주 등에 의해 지배된 경손 등 법인의 결손금의 이월 불적용) ① 내국법인으로 다른 자와의 사이에 그에 의한 특정지배관계(그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자기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출자 제외)의 총수 또는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수 또는 금액의 주식?출자를 직접?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관계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계를 말하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것을 제외.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을 가지게 된 것 중, 특정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날(이하 본 항에서 「지배일」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본 항에서 「특정지배사업연도」라 함)에 특정지배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제57조 제2항 또는 제6항 규정에 의해 내국법인의 결손금액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하며, 동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한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 또는 평가차손자산(내국법인이 지배일에 보유하는 자산 중 그 지배일에 가액이 그 장부가액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을 보유하는 것(내국법인 중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최종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제81조의9의2 제1항(특정주주 등에 의해 지배된

결손 등연결법인의 연결결손금 이월의 부적용)에서 규정하는 결손 등 연결법인(이하 본 조에서 「결손 등 연결법인」이라 함)이었던 것을 포함. 이하 본 조에서 「결손 등 법인」이라 함)이 그 지배일(결손 등 연결법인인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 이하 본 항 및 제2항 제2호에서 「특정지배일」이라 함) 이후 5년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특정지배관계가 없어진 경우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였을 것, 그 결손 등 법인의 채무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채무면제 기타의 행위(제3호에서 「채무면제 등」이라 함)가 있었을 것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들 사실이 발생한 일까지)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제4호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 호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일 등의 전일. 제2항에서 「해당일」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본 조에서 「적용사업연도」라 함)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는 그 적용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전조 제1항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결손 등 법인이 그 특정지배일 직전에 사업을 경영하지 않은 경우(청산중인 경우를 포함)에 그 특정지배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할 것(청산중의 결손 등 법인이 계속할 것을 포함)
2. 결손 등 법인이 특정지배일 직전에 경영하는 사업(이하 본 항에서 「구 사업」이라 함)의 전부를 그 특정지배일 이후에 폐지하거나 폐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구 사업의 특정지배일 직전에 사업규모(매상금액, 수입금액 기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 제3호 및 제5호에서 같음)의 대략 5배를 넘는 자금의 차입 또는 출자에 의한 금전 기타 자산의 인수(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자산의 인수를 포함. 제3호에서 「자금차입 등」이라 함)를 할 것.
3. 다른 자 또는 다른 자와의 사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본 호에서 「관련자」라고 함)가 다른자 및 관련자 이외의 자로부터 결손 등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하 본 호에서 「특정채권」이라 함)을 취득하는 경우(특정지배일 전에 특정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그 특정채권에 대해 특정지배일 이후에 채무면제 등을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 제4호에서 「특정채권이 취득되는 경우」라고 함)에 그 결손 등 법인이 구 사업의 특정지배일 직전에 사업규모의 대략 5배를 넘는 자금차입 등을 할 것.
4. 제1호 혹은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우 도는 제3호의 특정채권이 취득되는 경우에 그 결손 등 법인이 자기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 하는 전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 등(제2항 제1호 및 제4항에서 「적격합병 등」이라 함)을 할 것.
5. 결손 등 법인이 그 특정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것에 기인하여 결손 등 법인의 특정지배일 직전의 임원(사장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 한함) 모두가 퇴임(업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는 것을 포함)하거나 특정지배일 직전에 그 결손 등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인(이하 본 호에서 「구

사용인」이라 함) 총수의 대략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수의 자가 그 결손 등 법인의 사용인이 아니게 된 경우에 그 결손 등 법인의 비종사사업(구 사용인이 특정지배일 이후 그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업무를 말함)의 사업규모가 구 사업의 특정지배일 직전에 사업규모의 대략 5배를 넘게 될 것(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6. 본 항 각 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써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결손 등 법인이 해당일(제81조의9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일을 포함) 이후에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결손금액 또는 연결결손금 개별귀속액(전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연결결손금 개별귀속액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에 대해서는 각각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결손 등 법인이 자기를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 적격합병 등에 관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적격합병일 등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 이전의 각 사업연도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 또는 연결결손금 개별귀속액(적격합병 등이 결손 등 법인의 적용사업연도 또는 적용연결사업연도(제81조의9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용연결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 개시일 이후 3년을 경과하는 날(경과하는 날이 특정지배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날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결손금액 또는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 중 이들이 발생한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이 그 적용사업연도 또는 적용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인 것에 한함) 전조 제2항, 제3항 및 제7항
2. 결손 등 법인이 자기를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또는 피현물출자법인으로 하는 전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결손 등 법인의 적용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 동항

③ 결손 등 연결법인이 제81조의9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일 이후에 전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분할형분할을 하는 경우 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승인취소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 등 연결법인의 적용연결사업연도 전의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이 결손 등 법인 또는 결손 등 연결법인과의 사이에 그 내국법인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 등 법인 또는 결손 등 연결법인의 적용사업연도 또는 적용연결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 또는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본 조 각 항의 규정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8조 (청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재해에 의한 손실금의 이월)

①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제57조 제1항(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의 이월) 또는 제80조(결손금의 회복에 의한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 중, 재고자산, 고장자산 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기자산에 대하여 진재, 풍수해, 화재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관한 것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본 조에서 「재해손실결손금액」이라 함)이 있는 때에 그 재해손실결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재해손실결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재해손실결손금액에 대해 본문 규정을 적용핮 않는 것으로 계산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그 재해손실결손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 전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문 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적격합병 등(적격합병 또는 합병과 유사한 분할형분할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중 적격분할형분할에 해당하는 것(제3항에서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이라 함)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하 본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함)의 적격합병일 등 전 7년 내에 개시한 각 사업연도(이하 본 항에서 「전 7년 내 사업연도」라 함)에 발생한 재해손실결손금액(피합병법인 등이 재해손실결손금액이 발생하기 전 7년 내 사업연도에 대해서 제6항에서 규정하는 손실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를 기재한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그 재해손실결손금액에 한하며, 전항 규정에 의해 그 피합병법인 등의 전 7년 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것을 제외. 이하 본 항에서 「미처리재해손실결손금액」이라 함)이 있는 때에 그 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이하 본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함)의 적격합병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본 항에서 「합병 등 사업연도」라 함)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전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전 7년 내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리재해손실결손금액은 각각 그 미처리재해손실결손금액이 발생한 전 7년 전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합병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합병법인 등의 합병 등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에 개시한 피합병ㅂ버인 등의 전 7년 내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리화재손실결손금액의 경우에는 합병 등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재해손실결손금액으로 간주한다.

③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에 관련된 분할법인의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사업연도 전으 lrkr 사업연도에 발생한 재해손실결손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국법인의 각 호의 사업연도에 동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손실결손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연결법인인 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제57조 제9항 제1호 내지 다의 것을 제외)을 한 경우의 분할형분할일의 전일이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그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재해손실결손금액
2. 연결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제57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최초 연결모법인 사업연도에 그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그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다른 연결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것에 한하며, 동호 가 및 나의 것을 제외)을 한 경우 합병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재해손실결손금액
3. 연결법인인 내국법인이 제15조의2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최초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제4조의5 제1항 혹은 제2항(연결납세의 승인취소) 규정에 의해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4조의5 제3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최종 연결사업연도 후의 각 사업연도 연결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재해손실결손금액

⑤ 연결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제57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단체 사업연도에 그 내국법인을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합병법인 등으로 하는 적격합병 등(그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없는 법인(연결결손금액으로 간주되는 재해손실결손금액을 보유하는 법인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 이하 본 항에서 「비지배법인」이라 함)을 제2항에서 규정하는 피합병법인 등으로 하는 것에 한함)을 한 경우에 그 비지배법인의 동항에서 규정하는 미처리재해손실결손금액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내국법인이 재해손실결손금액(제2항 규정에 의해 그 내국법인의 재해손실결손금액으로 간주된 것을 제외)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실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를 기재한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에 연속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제2항 규정에 의해 그 내국법인의 재해손실결손금액으로 간주된 것에 대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합병 등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에 연속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⑦ 제2항의 합병법인 등이 적격합병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 기타 동항 내지 제5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9조 (회사갱생 등에 따른 채무면제 등이 있는 경우 결손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에 대하여 회사갱생법 또는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제3호에서 「회사갱생법 등」이라 함) 규정에 의해 갱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경우에 그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본 항에서 「적용연도」라고 함) 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제81조의18 제1항(연결법인세의 개별귀속액 계산)에서 규정하는 개별결손금액(연결사업연도에 연결결손금액이 발생한 경웨는 그 연결결손금액 중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포함)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 상당하는 금액 중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이르까지의 금액은 그 적용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갱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때에 그 내국법인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채권을 가진 자(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연결법인을 제외)로부터 그 채권에 대해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채권이 채무면제 이외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이익이 발생하는 때를 포함)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그 이익을 포함)
2. 갱생절차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그 내국법인의 임원등(임원 혹은 주주 등인 자 또는 주주 등 이었던 자를 말하며, 그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연결법인을 제외. 제2항 제2호에서 같음)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 받은 금전액 및 금전 이외의 자산가액
3. 제25조 제2항(회사갱생법 등의 규정에 따라 하는 평가전환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 이하 본 호에서 같음) (자산의 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 등)에서 규정하는 평가전환을 한 경우 동항의 규정에 의해 그 적용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제33조 제2항(회사갱생법 등의 규정에 따라 하는 평가전환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등) 규정에 의해 그 적용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서 그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② 내국법인에 대하여 민사재생법의 규정에 다른 재생절차개시 결정 기타 이에 준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이하 본 항에서 「사업연도」라 함) 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연결사업연도에 연결결손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연결결손금액 중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포함)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 상당하는 금액 중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그 합계액이 본 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의 이월) 및 전조 제1항 및 본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계산한 경우에 그 적용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은 그 적용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이들 사실이 발생한 대에 그 내국법인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채무를 가진 자(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연결법인을 제외)로부터 그 채무에 대해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그 채권이 채무면제 이외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로 그 소멸한 채무에 관련된 이익액이 발생하는 때를 포함) 그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그 이익액을

포함)
2. 이들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그 내국법인의 임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받은 금전 및 금전 이외의 자산가액
3. 제25조 제3항 또는 제33조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그 적용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서 제33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그 적용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감산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의 기재가 있거나 재무서령에서 정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세무서장은 전항의 기재 또는 서류첨부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 또는 서류첨부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9목 계약자배당 등

제60조 (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의 손금산입) ①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분배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배하는 금액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보험회사는 확정신고서에 동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면세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의2 (협동조합 등의 사업분량배당 등의 손입산입) ① 협동조합 등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 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 대하여 그 자가 사업연도 중에 취급한 물건의 수량, 가액 기타 그 협동조합 등의 사업을 이용한 분량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
2. 조합원 기타 구서원에 대하여 그 자가 사업연도 중에 그 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종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

② 전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동항 각호의 금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의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세무서장은 전항의 기재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목 특정주주 등에 의해 지배된 결손 등 법인의 자산양도 등 결손금

제60조의3 (특정주주 등에 의해 지배된 결손 등 법인의 자산양도 등 결손액의 손금불산입) ① 제57조의2 제1항(특정주주에 의해 지배된 결손 등 법인의

결손금 이월의 불적용)에서 규정하는 결손 등 법인(동항에서 규정하는 결손 등 연결법인에 있어서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지배일에 제81조의9의2 제1항(특정주주 등에 의해 지배된 결손 등 연결법인의 연결결손금 이월의 불적용)에서 규정하는 평가차손자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산을 보유한 것에 한함. 이하 본 항 및 제2항에서 「결손 등 법인」이라 함)의 제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용사업연도 도는 제81조의9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용연결사업연도(이하 본 항에서 「적용사업연도 등」이라 함) 개시일부터 같은날 이후 3년을 경과한 날(경과하는 날이 제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지배일(결손 등 연결법인에 있어서는 제81조의9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지배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날 이후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날)까지의 기간(그 기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제61조의11 제1항(연결납세 개시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제61조의12 제1항(연결납세 가입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또는 제62조의9 제1항(비적격주식교환 등에 관련된 주식교환완전자법인 등이 보유하는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용사업연도 등의 개시일부터 제61조의11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결개시 직전 사업연도, 제61조의1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결가입 직전 사업연도 또는 제62조의9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이하 본 항 및 제2항에서 「적용기간」이라 함)에 발생하는 특정자산(그 결손 등 법인이 특정지배일에 보유하는 자산 및 그 결손 등 법인이 적용사업연도 등의 개시일 이후에 이루지는 제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르 S자를 분할법인 혹은 현물출자법인으로 하는 적격분할 혹은 적격현물출자 또는 동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관련자를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혹은 현물출자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 적격분할 혹은 적격현물출자에 의해 이전받은 자산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의 양도, 평가전환, 대손, 제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이하 본 항에서 「양도 등 특정사유」라고 함)에 의한 손실액(양도 등 특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적용기간에 발생하는 특정자산의 양도 또는 평가전환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공제한 금액. 제3항에서 「양도 등 손실액」이라 함)은 그 손실 등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결손 등 법인이 그 적용기간 내에 자기를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도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조에서 「적격조직재편성」이라 함)에 의해 보유하는 특정자산(제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차손자산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을 적격조직재편성에 관한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이하 본 조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함)에 이전한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 등을 전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결손 등 법인으로 간주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전항의 합병법인 등이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이전 받은 특정자산에 관한 양도 등 손실액의 계약 기타 제1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ㅋ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관 이익액 또는 손실액의 계산

제1목 단기매매상품의 양도손익 및 시가평가손익

제61조 (단기매매상품의 양도손익 및 시가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단기매매상품(단기적인 가격변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유가증권을 제외)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의 양도(단기매매상품이 합병, 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의해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또는 피현물출자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을 제외. 이하 본 항에서 같음)를 한 경우에는 그 양도에 관련된 양도이익액(제2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 또는 양도손실액(동항의 금액이 제1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은 양도에 관한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단기매매상품의 양도에 관한 대가
2. 단기매매상품의 양도에 관한 대가(그 단기매매상품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선정한 단위당 장부가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산출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선정한 방법으로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방법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에 양도한 단기매매상품의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시에 보유하는 단기매매상품에 대해서는 시가법(사업연도 종료 시에 보유하는 단기매매상품을 그 종류 및 종목(이하 본 항에서 「종류 등」이라 함)별로 구분하고, 그 종류 등이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 때의 가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그 단기매매상품의 그 때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함)으로 평가한 금액(제3항에서 「시가평가금액」이라 함)으로써 그 때의 평가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시에 단기매매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단기매매상품에 관한 평가차익(단기매매상품의 시가평가금액이 그 단기매매상품의 그 때의 장부가액(이하 본 항에서 「기말장부가액」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부분의 금액을 말함) 또는 평가차손(그 단기매매상품의 기말장부가액이 단기매매상품의 시가평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부분의 금액을 말함)은 제25조 제1항(자산의 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 또는 제33조 제1항(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④ 내국법인이 단기매매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단기매매상품의 매매를 하는 업무의 전부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때에 그 단기매매상품을 그 때의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단기매매상품 이외의 자산을 그 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⑤ 단기매매상품의 단위당 장부가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매매가액의 산출방법, 단기매매상품의 단위당 장부가액의 산출방법의 종류, 그 산출방법의 선정절차, 제3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의 다음 사업연도 처리 기타 본 조 각 항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목의2 유가증권의 양도손익 및 시가평가손익

제61조의2 (유가증권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의 양도(유가증권이 합병, 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의해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또는 피현물출자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을 제외. 이하 본 조에서 같음)를 한 경우에는 그 양도에 관한 양도이익액(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 또는 양도손실액(동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은 그 양도에 관한 계약일(양도가 잉여금의 배당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 배당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대가(제24조 제1항(배당액으로 간주하는 금액) 규정에 따라 제23조 제1항 제1호(수취배당 등의 익금불산입)의 금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간주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대가(유가증권에 대해서 그 내국법인이 선정한 단위당 장부가액의 산출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산출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선정한 방법으로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방법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에 양도한 유가증권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② 내국법인이 구 주식(내국법인이 보유하였던 주식(출자를 포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을 말함)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그 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법인의 주식 도는 합병법인과의 사이에 그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혹은 출자(자기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 이하 본 조에서 「발행주식 등」이라 함)의 전부를 보유하는 관계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가 있는 법인의 주식 중 일방의 주식 이외의 자산(주주 등에 대한 제2조 제12호의8(정의)에서 규정하는 잉여금 배당 등으로써 교부된 금전 기타 자산 및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등에 대한 매수청구에 근거한 대가로써 교부되는 금전 기타의 자산을 제외)이 교부되지 않았던 것에 한함)에 의해 그 주식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전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제1호의 금액은 구 주의 합병 직전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도 보유하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결합주식에 대하여 동항에서 규정하는 주식할당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내국법인이 구 주식(내국법인이 보유하였던 주식을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를 발행한 법인이 한 분할형분항에 의해 분할승계법인의 주식 기타 자산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구 주식 중 분할형분할에 의해 분할승계법인에 이전한 자산 및 부채에 대응하는 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분할형분할(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분할승계법인의 주식 또는 분할승계법인과의 사이에 그 분할승계법인의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보유하는 관계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본 항에서 「모법인」이라 함)의 주식 중 일방의 주식 이외의 자산(주식 등에 대한 제2조 제12호의8에서 규정하는 잉여금의 배당 등으로써 교부된 동조 제12호의9에서 규정하는 분할대가자산 이외의 금전 기타의 잔산을 제외)이 교부되지 않았던 것(이하 본 항에서 「금전 등 불교부분할형분할」이라 함)을 제외)에 의해 분할승계법인의 주식 또는 모법인의 주식을 교부 받은 때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 동항 각 호의 금액은 모두 그 구 주식의 분할형분할 직전의 분할순자산대응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제62조의2 제2항(적격합병 및 적격분할형분할에 의한 자산 등의 장부가액으로 승계) 규정에 의해 동항에서 규정하는 주주 등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또는 합병모법인주식을 교부한 것이 되는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각호의금액은 모두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내국법인이 자기를 분할법인으로 하는 적격분할형분할에 의해 그 적격분할형분할에 관련된 분할승계법인의 주식 또는 제2조 제12호의11에서 규정하는 분할승계모법인주식(제8항에서 「분할승계모법인주식」이라 함)을 내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교부한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각 호의 금액은 모두 제6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내국법인이 자기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에 의해 제2조 제12호의8에서 규정하는 합병모법인주식을 교부한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 제1호 금액은 그 합병모법인주식의 적격합병 직전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⑧ 내국법인이 자기를 분할승계법인으로 하는 적격분할에 의해 분할승계모법인주식을 교부한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 제1호 금액은 그 분할승계모법인주식의 적격분할 직전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 내국법인이 구 주식(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말함)을 발행한 법인이 한 주식교환(그 법인의 주주에게 주식교환완전모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교환완전모법인과의 사이에 주식교환완전모법인의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보유하는 관계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가 있는 법인의 주식

중 일방의 주식 이외의 자산(주주에 대한 잉여금 배당으로 교부된 금전 기타 자산 및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한 매수청수에 따른 대가로써 교부되는 금전 기타 자산을 제외)이 교부되지 않은 것에 한함)에 의해 주식을 교부 받은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금액은 구 주식의 주식교환 직전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⑩ 내국법인이 자기를 주식교환완전모법인으로 하는 적격주식교환에 의해 제2조 제12호의16에서 규정하는 주식교환완전지배모법인주식을 교부한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 제1호 금액은 그 주식교환완전지배모법인주식의 적격주식교환 직전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⑪ 내국법인이 구 주식(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말함)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이전(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이전완전모법인의 주식 이외의 자산(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한 매매청구에 따른 대가로써 교부되는 금전 기타의 자사을 제외)이 교부되지 않았던 것에 한함)에 의해 주식을 교부 받은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금액은 구 주식의 주식이전 직전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⑫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를 포함. 이하 본 항에서 「구 신주예약권 등」이라 함)을 발행한 법인을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주식교환완전자법인 또는 주식이전완전자법인으로 하는 합병, 분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이하 본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함)에 의해 구 신주예약권 등을 대신하여 합병 등에 관한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주식교환완전모법인 또는 주식이전완전모법인의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를 포함)만 교부 받은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 제1호 금액은 구 신주예약권 등의 합병 등 직전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⑬ 내국법인이 구 주식(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말함)을 발행한 법인의 조직변경(법인의 주주 등에게 그 법인의 주식만 교부된 것에 한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식을 교부 받은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금액은 구 주식의 조직변경 직전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⑭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양도하거나 그 사유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신주예약권을 교부 받은 경우(교부 받은 주식 또는 신주예약권 가액이 양도한 유가증권 가액과 거의 동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 제1호 금액은 각 호의 유가증권 양도 직전의 장부가액(제4호의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동 호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양도 직전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취득청구권부주식(법인이 발행하는 전부 또는 일부 주식의 내용으로서 주주 등이 그 법인에 대하여 그 주식의 취득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의 주식을 말함) 취득청구권부주식에 관한 청구권

행사에 의해 그 취득가액으로써 취득하는 법인의 주식만이 교부되는 경우의 청구권 행사

2. 취득조항부조건(법인이 발행하는 전부 또는 일부 주식의 내용으로서 그 법인이 일정한 사유(이하 본 호에서 「취득사유」라고 함)가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의 주식을 말함) 취득조건부주식과 관련된 취득사유의 발생에 의해 취득의 대가로써 취득한 줏 등에게 취득한 법인의 주식만이 교부되는 경우(취득의 대상이 된 종류의 주식 전무가 취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의 대가로써 취득하는 주주 등에게 취득하는 법인의 주식 및 신주예약권만이 교부되는 경우를 포함)의 취득사유의 발생
3.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어떤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를 발행한 법인이 주주총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결의(이하 본 호에서 「취득결의」라고 함)에 의해 그 전부를 취득하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경우의 종류주식을 말함)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에 관한 취득결의에 의해 그 취득대가로써 취득하는 주주 등에게 취득하는 법인의 주식(주식과 아울러 교부되는 취득하는 법인의 신주예약권을 포함) 이외의 자산(취득가액 결정 신청에 근거하여 교부되는 금전 기타의 자산을 제외)이 교부되지 않는 경우의 취득결의
4.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대한 사채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가된 신주에약권 행사에 의해 그 취득가액으로써 취득하는 법인의 주식이 교부되는 경우의 신주예약권의 행사
5.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에 대해서 이를 발행한 법인이 일정한 사유(이하 본 호에서 「취득사유」라고 함)가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경우의 신주예약권을 말함. 이하 본 호에서 같음) 또는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이 부가된 신주예약권부사채 이들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에 관한 취득사유의 발생에 의해 그 취득가액으로써 취득되는 신주예약권자에게 그 취득하는 법인의 주식만이 교부되는 경우의 취득사유 발생

⑮ 내국법인이 구 수익권(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집단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말함)에 관한 신탁의 병합(집단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그 신탁의 병합과 관련된 새로운 신탁의 수익권 이외의 자산(신탁의 병합에 반대하는 수익자에 대한 매매청구에 근거한 대가로써 교부되는 금전 기타의 자산을 제외)이 교부되지 않았던 것에 한함)에 의해 수익권을 교부 받은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 제1호 금액은 구 수익권의 신탁병합 직전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내국법인이 구 수익권(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집단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관련 신탁의 분할에 의해 승계신탁(신탁의 분할에 의해 수익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으로부터 그 신탁재산의 일부를 이전 받는 신탁을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의 수익권 기타 자산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구 수익권 중 신탁분할에 의해 승계신탁에 이전한 자산 및 부채에 대응하는 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그 신탁의 분할(분할신탁(신탁의 분할에 의해 그 신탁재산의

일부를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 또는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써 이전하는 신탁을 말함)의 수익자에게 승계신탁의 수익권 이외의 자산(신탁분할에 반대하는 수익자에 대한 매수청구권에 대한 대가로써 교부되는 금전 기타 자산을 제외)이 교부되는 것(이하 본 항에서 「금전등 교부분할」이라 함)에 한함)에 의해 승계신탁의 수익권 기타 자산을 교부 받은 때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은 그 구 수익권의 신탁분할 직전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본 항에서 「분할순자산대응장부가액」이라 함)으로 하고, 그 신탁분할(금전등 교부분할을 제외)에 의해 승계승탁의 수익권을 교부 받은 때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금액은 모두 구 수익권의 신탁분할 직전의 분할순자산대응장부가액으로 한다.

? 내국법인이 소유주식(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말함)을 발행한 법인의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의 환불 또는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일부 분배(이하 본 항에서 「환불 등」이라 함)로써 금전 기타 자산을 교부받은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은 그 소유주식의 환불 등 직전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내국법인이 출자(건수의 정함이 없는 것에 한함. 이하 본 항에서 「소유출자」라고 함)를 소유하는 법인의 출자환불(이하 본 항에서 「환불」이라 함)로써 금전 기타 자산을 교부 받은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은 그 환불 직전 소유출자의 장부가액에 그 환불 직전의 소유출자 금액 중 환불에 관련된 출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의 공매(유가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매도를 하고, 그 후에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환매하여 결제하는 결제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말함. 제20항에서 규정하는 신탁거래 및 발행일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후에 그 유가증권과 종목이 같은 유가증권을 환매하여 결제를 한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이익액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고, 동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손실액은 동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고, 동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관한 계약일은 결제에 관련된 환매계약일로 한다.

1. 매도한 유가증권의 1단위 당 양도에 관련된 대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써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에 환매한 유가증권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환매한 유가증권의 환매에 대한 대가액

? 내국법인이 금융상품거래법 제156조의24 제1항(면허 및 면허신청)에서 규정하는 신용거래 또는 발행일거래(유가증권이 발행되기 전에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거래로써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말함) 방법에 의해 주식의 매도 또는 매입하고, 후에 그 주식과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여 결제한 경우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이익액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고, 동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손실액은 동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며, 동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관한 계약일은 결제와 관련된 매입 또는 매도 계약일로 한다.

1. 매도한 주식의 매도에 관련된 대가 금액
2. 매입한 주식의 매입에 관련된 대가 금액

? 내국법인이 제6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매목적유가증권, 사채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정의)에서 규정하는 분리적격대체국채인 유가증권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본 항에서 「특정유가증권」이라 함)을 보유하는 경우에 그 특정유가증권에 대해서 동호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업무의 전부를 폐지한 것,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리분리가 이루어진 것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특정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그 특정유가증권 이외의 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내국법인이 자기를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또는 주식교환완전모법인으로 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교환(이하 본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함)에 의해 모법인주식(내국법인과의 사이에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보유하는 관계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 그 합병 등에 관한 계약일(이하 본 항에서 「계약일」이라 함)에 예상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일에 모법인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때 또는 계약일 이후에 내국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해 모법인 주식을 이전 받은 때에는 그 계약일 또는 이전 받은 날(이하 본 항에서 「계약일 등」이라 함)에 이들 모법인주식(교부하고자 하는 것이 예상되는 수를 초과하는 부분의 수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에 상당하는 것을 제외.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을 그 계약일 등의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이들 모법인 주식을 그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유가증권의 1단위 당 장부가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의 산출방법, 유가증권 1단위 당 장부가액의 산출방법의 종류, 그 산출방법의 선정 절차 기타 본조 각 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3 (매매목적유가증권 등의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등)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시에 보유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그 때의 평가액으로 한다.

1. 매매목적유가증권(단기적인 가격변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 이하 본 항 및 제2항에서 같음) 매매목적유가증권을 시가법(사업연도 종료 시에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종목별로 구별하고, 종목이 같은 것에 대해서 그 때의 가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유가증권의 그때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함)에 따라 평가한 금액(제2항에서 「시가평가금액」이라 함)

2. 매매목적외유가증권(매매목적유가증권 이외의 유가증권을 말함) 매매목적외유가증권을 원가법(사업연도 종료 시에 보유하는 유가증권(이하 본 항에서 「기말보유유가증권」이라 함)에 대하여 그 때의 장부가액(상환기한 및 상환금액의 정함이 있는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장부가액과 그 상환금액의 차액 중 사업연도에 분배하여야 하는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산한 금액)을 그 기말보유유가증권의 그 때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함)에 따라 평가한 금액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시에 매매목적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목적유가증권에 관한 평가차익(매매목적유가증권의 시가평가금액이 그 매매목적유가증권의 그 때의 장부가액(이하 본 항에서 「기말장부가액」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 또는 평가차손(매매목적유가증권의 기말장부가액이 그 매매목적유가증권의 시가평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은 제25조 제1항(자산 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 또는 제33조 제1항(자산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전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의 다음 사업연도의 처리 기타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4 (유가증권의 공매 등에 관한 이익상당액 또는 손실상당액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등) ① 내국법인이 제61조의2 제19항(유가증권을 공매한 경우의 양도이익액 또는 양도손실액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공매, 동조 제20항에서 규정하는 신용거래(제2항에서 「신용거래」라고 함), 동조 제20항에서 규정하는 발행일거래(제2항에서 「발행일거래」라고 함) 또는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8항 제6호(정의)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인수(제6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매매목적외유가증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 경우에 이들 거래 중 사업연도 종료 시에 결제되지 않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때에 이들 거래를 결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익금액 또는 손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신용거래 등(신용거래(매도에 한함) 및 발행일거래(매도에 한함)를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관한 계약에 기초하여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제61조의6 제1항(연기매매처리에 따른 이익액 또는 손실액의

연장)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용거래 등에 관한 계약에 기초하여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에는 취득시의 유가증권 가액과 취득의 원인이 된 신용거래 등에 관한 계약에 기초한 유가증권 취득대가로써 지불한 금액과의 차액은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이익액 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다음 사업연도의 처리 기타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목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이익상당액 또는 손실상당액

제61조의5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이익상당액 또는 손실상당액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등) ① 내국법인이 금융파생상품거래(금리, 통화가격, 상품가격 기타 지표의 수치로써 사전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수치와 장래의 일정시기의 실제 지표수치의 차이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금전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써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 이하 본 항 및 제2항에서 같음)를 한 경우에 그 금융파생상품거래 중 사업연도 종료 시에 결제되지 않은 것(제61조의8 제2항(선물외국환계약 등에 의해 엔환산액을 확정한 외화기본거래의 환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선물외국환계약 등에 근거한 것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제외. 이하 본 항에서 「미결제금융파생상품거래」라고 함)이 있는 때에는 그 때의 미결제파생금융상품거래를 결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익액 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계약에 기초하여 금전 이외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제61조의6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계약에 기초하여 그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에는 취득 시의 자산가액과 취득의 원인 된 파생금융상품거래 계약에 기초하여 자산취득의 대가로써 지불한 금액과의 차액은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이익액 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다음 사업연도 처리 기타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3목 헤지처리에 따른 이익액 또는 손실액의 계상시기 등

제61조의6 (연기헤지처리에 따른 이익액 또는 손실액의 연장)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손실액(이하 본 항 및 제3항에서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이라 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한 경우(제61조의7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 것이라는 취지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서류에 기재한 경우에 한함)에 그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을 한 때로부터 사업연도 종료 시 사이에 그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전에 대해 양도?소멸 또는 수취?지불하지 않거나 그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이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을 감소시키는데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거래 등에 관련된 이익액 또는 손실액((금융파생상품거래 등의 결제에 의해 발생한 이익액 또는 손실액(제4항에서 「결제손익액」이라 함), 제61조의4 제1항(유가증권의 공매 등에 관련된 이익상당액 또는 손실상당액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에서 규정하는 이익액 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61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익액 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및 제61조의9 제2항(외화기본자산 등의 기말환산차액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에서 규정하는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중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을 감소시키는데 유효한 부분의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1조의4 제1항, 제61조의5 제1항 및 제61조의9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제61조 제1항(단기매매상품의 양도손익 및 시가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에서 규정하는 단기매매상품 및 제61조의3 제1항 제1호(매매목적유가증권의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등)에서 규정하는 매매목적유가증권을 제외. 제2호에서 같음) 또는 부채의 가액변동(제61조의9 제1항 제1호 나에서 규정하는 기말시환산법에 따라 제61조의8 제1항(외화기본거래의 환산)에서 규정하는 엔환산액으로 환산하는 제61조9 제1항 각호의 자산 및 부채(제2호에서 「기말시환산자산 등」이라 함) 가액의 외국환 매매시가변동에 기인하는 변동을 제외)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실
2. 자산의 취득?양도, 부채의 발생?소멸, 금리의 수취?지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결제에 의해 수취하게 되거나 지불하게 되는 금전의 변동(기말시환산자산 등에 관련된 외국환의 매매시가변동에 기인하는 변동을 제외)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거래(제61조의8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선물외국환계약 등에 기초한 것 및 제61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제외)를 말한다.

1. 제61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
2. 제61조의2 제19항(유가증권을 공매한 경우의 양도이익액 또는 양도이익손실액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공매 및 동조 제20항에서 규정하는 신용거래 및 발행일거래
3. 제61조의9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화기본자산 등을 취득하거나

발생시키는 거래

③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제61조의8까지에서 「적격조직재편성」이라 함)에 의해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제61조의8까지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함)에서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을 감소키기기 위해 한 제1항의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이하 본 항에서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이라 함)에 관한 계약을 이전받거나,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혹은 부채(그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의해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에 한함)의 이전받거나,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전(그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의해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에 한함)을 수취 혹은 지불하게 된 경우(동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적격조직재편성에 관련된 피합병법인 등이 그 적격조직재편성 전에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대한 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적격조직재편성에의해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혹은 부채(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의해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던 것에 한함)를 이전받고,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전(그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의해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에 한함)을 수취 혹은 지불하게 된 경우)에 피합병법인 등이 계약을 이전한 파생금융상품거래 등(결제를 한 경우에는 결제를 한 파생금융상품거래 등.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지 기타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서류에 기재한 때에는 그 적격조직재편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본 조의적용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이 그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이전 받은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 또는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수취 혹은 지불하게 된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전에 관련된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을 하거나 기재한 것으로 본다.

④ 결제손익액 중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처리 기타 본조 각 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7 (시가헤지처리에 따른 매매목적외유가증권의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의 계상)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매매목적외유가증권(제61조의3 제1항 제2호(매매목적유가증권의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등)에서 규정하는 매매목적외유가증권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동일)의 가액변동(제61조의9 제1항 제1호 나(외화기본자산 등의 기말환산차익 또는 기말환산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등)에서 규정하는 기말시환산법에 의해 제61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엔환산액(이하 본 항에서 「엔환산액」이라 함)으로 환산하는 제61조의9 제1항 제2호 나의 유가증권 가액의 외국환 매매시가변동에 기인하는 변동을 제외)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실액(이하 본 조에서 「헤지대상유가증권손실액」이라 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제61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를 한 경우(매매목적외유가증권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평가하거나 엔환산액으로 환산하는 취지 기타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서류에 기재한 경우에 한함)에 그 파생금융거래 등을 한 때부터 사업연도 종료 시 사이에 매매목적외유가증권의 양도가 없고, 또한 그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이 헤지대상유가증권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매목적외유가증권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중 그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관련된 제61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익액 또는 손실액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헤지대상유가증권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관련된 계약을 이전 받거나 그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매매목적외유가증권(그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의해 헤지대상유가증권손실액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에 한함)을 이전받은 경우(전항규정의 적용을 받은 적격조직재편성에 관련된 피합병법인 등이 그 적격조직재편성 전에 헤지대상유가증권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대한 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매매목적외유가증권(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의해 헤지대상자산유가증권손실액을 감소시키고자 한 것에 한함)을 이전 받은 경우)에 피합병법인 등이 계약을 이전한 파생금융상품거래 등(결제한 경우에는 결제한 파생금융거래 등.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취지 기타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동항에서 규정하는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서류에 기재한 때에는 그 적격조직재편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본 조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이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이전 받은 매매목적외유가증권에 관련된 헤지대상유가증권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을 하거나 기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다음 사업연도 처리 기타 본조 각 항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4목 외화기본거래의 환산 등

제61조의8 (외화기본거래의 환산) ① 내국법인이 외화기본거래(외국통화로 지불이 이루어지는 자산의 판매 및 구입, 용역제공, 금전대여 및 차입, 잉여금의 배당 기타의 거래를 말함. 이하 본 목에서 같음)를 한 경우에는

그 외환기본거래 금액의 엔환산액(외국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우리나라 통화표시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이하 본 목에서 동일)은 그 외환기본거래를 한 때의 외국환 매매시세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선물외국환계약 등(외화기본거래에 의해 취득하거나 발생하는 자산 ?부채 금액의 엔환산액을 확정하는 계약으로써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 이하 본 목에서 같음)에 의해 외화기본거래(제61조 제1항(단기매매상품의 양도손익 및 시가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에서 규정하는 단기매매상품 또는 제61조의3 제1항 제1호(매매목적유가증권의 시가차익 또는 시가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등)에서 규정하는 매매목적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를 제외. 제2항에서 같음) 에 의해 취득하거나 발생하는 자산?부채 금액의 엔환산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그 선물외국환계약 등의 체결일에 그 사실을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서류에 기재한 때에는 그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서는 그 엔환산액을 전항의 규정에 의해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외화기본거래에 의해 취득하거나 발생하는 자산?부채 금액의 엔환산액을 확정하기 윟 그 피합병법인 등이 한 선물외국환계약 등을 이전받거나 그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외화기본거래(선물외국환계약 등에 의해 그 금액의 엔환산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에 한함)를 내국법인이 하게 된 경우에 그 피합병법인 등이 선물외국환계약 등에 계약체결일에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을 동항에서 규정하는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서류에 기재한 때에는 그 적격조직재편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본조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이 자산 또는 부채 금액의 엔환산액을 확정하기 위해 선물외국환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기재한 것으로 본다.

④ 본조 각 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9 (외화기본자산 등의 기말환산차익 또는 기말환산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등)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시에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부채(이하 본 목에서 「외화기본자산 등」이라 함)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때의 외화기본자산 등의 금액 엔환산액은 그 외화기본자산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제1호, 제2호 나 및 제3호의 외화기본자산 등에 있어서는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내국법인이 선정한 방법으로 하고, 그 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에 의해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외화기본채권(외국통화로 지불받도록 되어 있는 금전채권을 말함) 및 외화기본채무(외국통화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금전채무를 말함) 가 및 나의 방법

가. 발생시환산법(사업연도종료시(이하 본 호에서 「기말시」라고 함)에

보유하는 외화기본자산 등에 대하여 제61조의8 제1항 규정에 의해 그 외화기본자산 등의 취득 또는 발생의 기인이 된 외화기본거래 금액의 엔환산액으로의 환산에 이용한 외국환의 매매시세로 환산한 금액(외화기본자산 등 중 취득 또는 발생의 기인이 된 외화기본거래 금액의 엔환산액으로의 환산에 있어서 동조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선물외국환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엔환산액)으로 그 외화기본자산 등의 기말시 엔환산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함.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음)

나. 기말시환산법(기말시에 보유하는 외화기본자산 등에 대해서 그 기말시의 외국환 매매시세로 환산한 금액(외화기본자산 중 취득 또는 발생의 기인이 된 외화기본거래 금액의 엔환산액으로의 환산에 있어서 제61조의8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선물외국환계약 등에 의해 확정한 엔환산액)으로 그 외화기본자산 등의 기말시 엔환산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함. 이하 본 항 및 제2항에서 같음)

2. 외화기본유가증권(상환, 환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이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으로써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 구분에 따라 각각에서 정하는 방법

가. 제61조의3 제1항 제1호(매매목적유가증권의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등)에서 규정하는 매매목적유가증권 기말시환산법

나. 제6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매매목적외유가증권 (상환기한 및 상환금액에 대한 정함이 있는 것에 한함) 발생시환산법 또는 기말시환산법

다. 가 및 나의 유가증권 이외의 유가증권 발생시환산법

3. 외화예금 발생시환산법 또는 기말시환산법

4. 외국통화 기말시환산법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시에 외화기본자산 등(기말시환산법에 따라 그 금액을 엔환산액으로 환산하는 것에 한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외화기본자산 등의 금액을 기말시환산법으로 환산한 금액과 그 외화기본자산 등의 당시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③ 외국환의 매매시가가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의 외화기본자산 등 금액의 엔환산액으로의 환산, 외화기본자산 등의 금액을 엔환산액으로 환산하는 방법 선정 절차, 전항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다음 사업연도 처리 기타 제1항 및 제2항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10 (환예약차액의 분배)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시에 보유하는 외화기본자산 등(제61조의3 제1항 제1호(매매목적유가증권의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등)에서 규정하는 매매목적유가증권을 제외. 제4항까지 같음)에 대하여 취득 또는 발생의 기인이 된 외화기본거래 금액의 엔환산액으로의 환산에 있어서

제61조의8 제2항(선물외국환계약 등에 의해 엔환산액으로 확정된 외화기본거래의 환산) 규정의 적용을 받은 때에는 그 외국기본자산 등에 관련된 선물외국환계약 등의 체결일(그 날이 외화기본자산 등의 취득 또는 발생의 기인이 된 외화기본거래를 한 전날인 경우에는 그 외화기본거래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외화기본자산 등에 대한 결제에 의해 우리나라 통화를 수취 또는 지불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환예약차액(그 외화기본자산 등 금액을 선물외국환계약 등에 의해 확정한 엔환산액과 그 금액을 외화기본자산 등의 취득 또는 발생의 기인이 된 외화기본거래를 한 때의 외국환의 매매시세로 환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함) 중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2항에서 「환예약차액분배액」이라 함)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 및 제3항에서 「적격분사형분할 등」이라 함)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제3항에서 「분할승계법인 등」이라 함)에 외화기본자산 등(취득 또는 발생의 기인이 된 외화기본거래 금액의 엔환산액으로의 환산에 있어서 제61조의8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한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및 외화기본자산 등 금액의 엔환산액을 확정한 선물외국환계약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의 전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되는 환예약차액배분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③ 외화기본자산 등이 단기외화기본자산 등(외화기본자산 중 결제에 의한 우리나라 통화의 수취 또는 지불기한이 그 사업연도 종료일(외화기본자산 등이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등에 이전하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의 전일)의 익일부터 1년을 경과한 날의 전날까지 도래한 것을 말함)인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예약차액은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에서 「적격조직재편성」이라 함)에 의해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이하 본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외화기본자산 등(취득 또는 발생의 기인이 된 외화기본거래 금액의 엔환산액으로의 환산에 있어서 피합병법인 등이 제61조의8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한함) 및 외화기본자산 등 금액의 엔환산액을 확정한 선물외국환계약 등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적격조직재편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서의 본 조 적용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이 그 외화기본자산 등의 취득 또는 발생의 기인이 된 외화기본거래 금액의 엔환산액으로의 환산에 있어서 동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기타 각 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목 연결납세 개시 등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제61조의11 (연결납세 개시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①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의 승인을 받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 중 최초연결법인 사업연도(각 연결사업연도의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최초의 제15조의2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 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항 및 제61조의12 제1항에서 같음) 개시일에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그 내국법인에 의한 동조에서 규정하는 완전지배관계를 가지는 자(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가 연결개시직전사업연도(최초연결모법인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다른 내국법인이 제4조의3 제9항 제1호(연결납세 승인의 효력)에서 규정하는 시가평가법인인 경우에는 최초연결모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혹하는 사업연도를 말함) 종료시에 보유하는 시가평가자산(고정자산, 토지(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를 포함하며,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유가증권, 금전채권 및 연기자산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함. 제61조의12 제1항에서 같음)의 평가차익(그 때의 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 제61조의12 제1항에서 같음) 또는 평가차손(그 때의 장부가액이 당시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 제61조의12 제1항에서 같음)은 그 연결개시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내국법인이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5년전의 날부터 그 개시일 사이에 주식이전에 의해 설립되거나, 그 내국법인이 주식이전일부터 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그 주식이전에 관련된 주식이전완전자법인인 법인의 발행주식(자기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제외. 제4호 및 제2항에서 같음)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법인
2. 내국법인이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5년전의 날부터 그 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자기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 또는 출자 제외. 이하 본 조 및 제61조의12에서 「발행주식 등」이라 함)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법인
3. 내국법인 또는 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제4호 및 제6호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함)이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5년전의 날부터 그 개시일 사이에 발행주식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내국법인이 설립일부터 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그 발행주식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법인
4. 내국법인 또는 완전자법인이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5년전의 날부터 개시일 사이에 적격주식교환을 하거나 그 내국법인이 적격주식교환일부터 그 개시일가지 계속하여 그 적격주식교환에 관련된

주식교환완전자법인인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법인

5. 내국법인이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5년전의 날부터 그 개시일 사이에 적격합병,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합병과 유사한 분할형분할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분할 중 적격분할형분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이하 본 호 및 제6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같음), 적격주식교환 및 적격주식이전(이하 본 호에서 「적격합병 등」이라 함)에 의해 법인(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주식교환완전자법인 또는 주식이전완전자법인이 그 5년전의 날(법인이 5년전의 날부터 그 적격합병일의 전일,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일의 전일, 적격주식교환일 또는 적격주식이전일 사이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적격합병일의 전일,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일의 전일, 적격주식교환일 또는 적격주식이전일까지 계속하여 발행주식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던 법인에 한함)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그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일 등부터 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그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법인

6.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개시일 5년전의 날부터 개시일 사이에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는 그 법인의 회사법 제189조 제1항(단위미만주식에 대한 권리의 제한 등)에서 규정하는 단위미만주식의 법인, 내국법인 혹은 완전자법인에 의해 매입 기타 이와 유사한 매입 또는 법인의 주주 등이 법령 규정에 의해 보유하는 그 법인의 주식(출자를 포함. 이하 본 호에서 같음)보유가 제한됨에 따라 그 주식의 법인, 내국법인 혹은 완전자법인에 의한 매입에 의해 그 내국법인이 법인(내국법인이 그 5년전의 날(그 법인이 5년전의 날부터 이들의 매입일 사이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이들 매입일까지 계속하여 취득주식 등(그 발행주식 등 중 내국법인이 이들 매입 직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을 말함)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던 법인에 한함)의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그 내국법인이 보유하게 된 날부터 그 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그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법인

② 발행주식 또는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에 대한 판정 기타 전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12 (연결납세 가법에 다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① 제4조의3 제10항 또는 제11항(연결납세의 간주승인) 규정의적용을 받는 다른 내국법인(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이 연결가입직전사업연도(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그 연결모법인에 의한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에서 규정하는 완전지배관계를 가지게 된 날의 전일(다른 내국법인이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평가법인인 경우에는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함) 종료일에

보유하는 시가평가자산의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그 연결가입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의 그 법인
2.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적격주식이전에 의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게 된 경우의 그 법인
3.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 또는 적격주식교환(이하 본 호에서 「적격합병 등」이라 함)에 의해 법인(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주식교환완전자법인이 그 적격합병일 등의 5년전의 날(법인이 그 5년전의 날부터 그 적격합병일 등의 전일 사이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그 적격합병일 등의 전일까지 계속하여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던 법인에 한함)의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의 그 법인
4.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는 그 법인의 회사법 제189조 제1항(단위미만주식에 대한 권리의 제한 등)에서 규정하는 단위미만주식의 그 법인, 연결모법인 혹은 연결자법인에 의한 매입 기타 이와 유사한 매입 또는 법인의 주주 등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유하는 그 법인의 주식(출자를 포함. 이하 본 호에서 같음)의 보유가 제한됨에 따른 주식의 그 법인, 연결모법인 혹은 연결자법인에 의한 매입에 의해 그 연결모법인이 법인(연결모법인이 매입일의 5년전의 날(그 법인이 그 5년전의 날부터 매일일 시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매입일까지 계속하여 취득주식 등(발행주식 등 중 그 연결모법인이 매입 직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을 말함)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던 법인에 한함)의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의 그 법인
5. 발행주식 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던 연결자법인의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에 기인하여 제4조의5 제2항 제5호(연결납세의 승인취소) 규정에 의해 제4조의2의 승인이 취소된 법인(승인취소 직전에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연결모법인이었던 것에 한함)에 대해서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잔여재산이 분배됨으로써 그 연결모법인이 그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그 잔여재산이 분배된 날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가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 한함)의 그 법인

② 발행주식 또는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에 대한 판정 기타 전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목 분할 등 전사업연도 등의 연결법인간 거래의 손익

제61조의13 (분할등전사업연도의 연결법인간거래 손익의 조정) ① 내국법인(제15조의2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의의0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의 익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기간 내에 자기를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을 한 연결법인 또는 그 기간 내에 자기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그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연결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것에 한함)을 한 연결자법인에 한함. 제3항까지에서 같음)이 분할등전사업연도(분할형분할 또는 적격합병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함. 제3항까지에서 동일)에 보유하는 양도손익조정자산(고정자산, 토지(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를 포함하며,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유가증권, 금전채권 및 연기자산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을 연결법인(그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것에 한함. 제2항에서 같음)에게 양도한 경우(적격사후설립에 의해 피사후설립법인에게 양도한 손익조정자산을 이전한 경우 및 주식 또는 출자를 발행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제외)에는 그 양도손익조정자산에 관한 양도이익액(양도와 관련된 대가가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음) 또는 양도손실액(양도와 관련된 원가가 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음)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분할등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② 분할등전사업연도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연결법인에게 양도한 양도손익조정자산(양도이익액 또는 양도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전항 및 제81조의10 제1항(연결법인간 거래의 손익조정) 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그 금액 중에 본 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해 그 연결법인에 있어서 양도, 상각, 평가전환, 대손, 제외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손익조정자산에 관한 양도이익액 또는 양도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등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③ 분할전사업연도 또는 그 분할전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이 양도손익조정자산을 양도하여 제1항 또는 제81조의10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 연결자법인에 한함)과의 사이에 그 법인을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 또는 제61조의11 제1항 제5호(연결납세개시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에서 규정하는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을 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이 양도손익조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내국법인이 양도손익조정자산에 관한 양도이익액 또는 양도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제1항 또는 제81조의10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그 금액 중 제2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내국법인이 제4조의5 제1항(연결납세의 승인취소) 규정에 의해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본 조 각 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관 조직재편성 관련 소득금액의 계산

제62조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자산 등의 시가양도) ①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에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때에는 그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에 이전한 자산 및 부채의 합병 또는 분할시 가액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써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합병에 의해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내국법인(자본 또는 출자를 보유하지 않은 것을 제외)은 그 합병법인으로부터 신주 등(합병법인이 합병으로 교부한 그 합병법인의 주식(출자를 포함. 이하 본 항 및 제62조의2에서 같음) 기타자산(제61조의2 제3항(유가증권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동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에서 규정하는 주식할당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 기타 자산을 포함)을 말함)을 그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하고, 즉시 신주 등을 그 내국법인의 신주 등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형분할에 의해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에 대한 자산 및 부채의 이전으로 인해 양도와 관련된 양도이익액(양도에 관한 대가액이 원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 또는 양도손실액(양도에 관한 원가액이 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은 합병 또는 분할형분할에 관련된 최후사업연도(피합병법인의 합병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함. 제62조의2 제2항에서 같음) 또는 분할전사업연도(분할법인의 분할형분할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함. 제62조의2 제2항에서 같음)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전항에서 규정하는 원가액의 계산 기타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형분할에 따른 자산 등의 장부가액승계) ①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형분할에 의해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에 자신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때에는 제62조의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에 이전한 자산 및 부채의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형분할에 관련된 최후사업연도 또는 분할전사업연도 종료시의 장부가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하여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전항(적격합병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의 경우에는 적격합병(동항의 합병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를 보유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에 그 적격합병을 제외)에 의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내국법인(자본 또는 출자를 보유하지 않은 자를 제외)은 제62조 제1항 후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제2조 제12호의8(정의)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동조 규정에 의해 동조에서 규정하는 주식할당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그 합병모법인주식을 포함)을 적격합병에 의해 이전한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취득하고, 즉시 그 주식 또는 그 합병모법인주식을 내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교부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적격분할형분할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의 경우에는 동항의 내국법인이 분할승계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그 분할승계법인의 주식 또는 제2조 제12호의11에서 규정하는 분할승계모법인 주식의 교부당시 가액은 그 적격분할형분할에 의해 이전한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이 승계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 기타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2의조의3 (적격분사형분할에 의한 자산 등의 장부가액에 따른 양도) ① 내국법인이 적격분사형분할에 의해 분할승계법인에 자신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때에는 제62조 제1항(합병 및 분할에 의한 자산 등의 시가양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분할승계법인에 이전한 자산 및 부채의 적격분사형분할 직전의 작부가액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게산한다.

② 분할승계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취득가액 기타 전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4 (적격현물출자에 의한 자산 등의 장부가액에 따른 양도) ① 내국법인이 적격현물출자에 의해 피현물출자법인에 자신이 보유하는 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와 아울러 보유하는 부채를 이전한 때에는 그 피현물출자법인에 이전한 자산 및 부채의 그 적격현물출자 직전의 장부가액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피현물출자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취득가액 기? 전항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5 (적격사후설립에 의한 자산 등의 시가양도와 주식의 장부가액수정차익 또는 장부가액수정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적격사후설립에 의해 피사후설립법인에 자신이 보유하는 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와 아울러 자신이 보유하는 부채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장부가액수정차익(이전한 자산 및 부채의 양도에 관련된 원가액 등(원가액 및 기타 비용액의 합계를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이 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제2항에서 같음) 또는 장부가액수정차손(이전한 자산 및 부채의 양도에 관련된 대가액이 원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제2항에서 동일)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적격사후설립에 관련된 피사후설립법인의 주식(출자를 포함. 제62조의6 제1항에서 같음)의 전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시 장부가액에 장부가액수정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거나 장부가액에서 장부가액수정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산한다.

③ 피사후설립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 기타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6 (주식 등을 분할법인과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 교부하는 분할) ① 분할법인이 분할에 의해 교부받은 분할승계법인의 주식 기타 자산의 일부만을 그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교부하는 분할이 이루어진 때에는 분할형분할과 분사형분할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이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7 (특정자산에 관련된 양도등손실액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과 특정자본관계법인(그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특정자본관계(제57조 제3항(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월)에서 규정하는 특정자본관계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 사이에서 그 내국법인을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또는 피현물출자법인으로 하는 특정적격합병 등(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 중, 제5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적격합병 등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특정자본관계가 내국법인의 특정적격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본 항에서 「특정적격합병등사업연도」라 함) 개시일의 5년전의 날 이후에 발행하는 때에는 그 내국법인의 적용기간(특정적격합병등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이후 3년을 경과하는 날(경과하는 날이 특정자본관계가 발생한 날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날 이후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5년을 경과하는 날) 사이의 기간(그 기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제61조의11 제1항(연결납세 개시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혹은 제61조의12 제1항(연결납세 가입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또는 제62조의9 제1항(비적격주식교환 등에 관련된 주식교환완전자법인 등이 보유하는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적격합병등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제61조의11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결개시 직전 사업연도 혹은 제61조의1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결가입직전사업연도 또는 제62조의9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에 발생하는 특정자산양도등손실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자산양도등손실액이란 다음 각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전항의 내국법인이 특정자본관계법인으로부터 특정적격합병 등에 의해 이전 받은 자산으로 그 특정자본관계법인이 특정자본관계가 형성된 날(제2호에서 「특정자본관계발생일」이라 함)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산(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 이하 본 호에서 「특정승계자본」이라 함)의 양도, 평가전환, 대손, 제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따른 손실액의 합계액에서 특정승계자산의 양도 또는 평가전환에 의한 이익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전항의 내국법인이 특정자본관계 발생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산(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 이하 본 호에서 「특정보유자산」이라 함)의 양도, 평가전환, 대손, 제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따른 손실의 합계액에서 특정보유자산의 양도 또는 평가전환에 의한 이익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정자본관계가 있는 피합병법인 등(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및 현물출자법인을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과 다른 피합병법인 등 사이에 법인을 설립하는 특정적격합병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특정자본관계가 그 특정적격합병일 등 5년전의 날 이후에 발생하는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 중 「내국법인의 적용기간」은 「특정적격합병 등에 희해 설립된 내국법인의 적용기간」으로, 전항 제1호 중 「동항의 특정자본관계법인에서 특정적격합병 등」은 「특정적격합병 등에 관한 제4항에서 규정하는 피합병법인 등(다음 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피합병법인 등을 제외)에서 그 특정적격합병 등」으로, 「특정자본관계법인」은 「피합병법인 등」으로, 동항 제2호 중 「특정자본관계발생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특정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다른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특정적격합병 등에 의해 이전 받은 자산으로 그 다른 피합병법인 등이 특정자본관계 발생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자본관계법인 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피합병법인 등이 특정적격합병 등의 직전에 제60조의3 제1항(특정주주 등에 의해 지배된 결손등법인의 자산 양동등손실액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는 결손등법인(제5항 및 제6항에서 「결손등법인」이라 함)이거나 그 특정적격합병 등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용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제1항의 내국법인이 특정자본관계 또는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특정적격합병 등에 의해 이전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그 특정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동항(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6항에서 같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내국법인이 결손등법인이거나 특정적격합병 등이 제6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용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그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특정적격합병 등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내국법인이 특정적격합병 등 후에 결손등법인이 되거나 제6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용기간이 개시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용기간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용기간 개시일 전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⑦ 연결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제57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단체사업연도에 특정적격합병 등(내국법인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그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없는 법인(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을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 하는 것에 한함)을 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정보유자산에 대해서는 그 특정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손실액 의 계산 기타 본 조 각 항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8 (비적격합병 등에 의해 이전 받은 자산 등에 관련된 조정계정의 손금산입 등) ① 내국법인이 비적격합병 등(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합병 또는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분할, 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에 의해 비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본 조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자산 또는 부채를 이전 받은 경우에 그 내국법인이 비적격합병 등에 의해 교부한 금전 및 금전 이외의 자산(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합병에 있어서는 제62조 제1항(합병 및 분할에 의한 자산 등의 시가양도)에서 규정하는 신주 등)의 가액의 합계액(비적격합병 등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지출받은 제37조 제7항(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그 피합병법인 등에 대하여 지출한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 제3항에서 「비적격합병 등 대가액」이라 함)이 이전 받은 자산 및 부채의 시가순자산가액(자산(경영권에 있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 한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부채(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채조정계정의 금액을 포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제3항에서 같음)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조정계정의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비적격합병 등에 의해 비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자산 또는 부채를 이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채조정계정의 금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이 비적격합병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승계 받은 종업자에 대해 퇴직급여 채무인수(비적격합병 등 후의 퇴직 기타의 사유로 비적격합병 등에 따라 승계 받은 종업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액에 대해 비적격합병 등 전에 재직기간 기타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할 것을 약정하거나 이에 따른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를 한 경우 퇴직금여 채무인수에 관련된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제6항 제1호에서 「퇴직급여채무인수액」을 말함)
2. 내국법인이 비적격합병 등에 의해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업무에 관련된 장래의 채무(사업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에 한하도록 하고, 제1호의 퇴직급여 채무인수에 관련된 것 및 이미 이행하였어야 하는 것이 확정된 것을 제외)로 이행이 비적격합병일 등부터 대략 3년 이내에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이행에 관련된 부담을 인수한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제6항 제1호에서 「단기중요채무예상액」이라 함)

③ 내국법인이 비적격합병 등에 의해 비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자산 또는 부채의 이전을 받은 경우 비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비적격합병 등 대가액이 그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자산 및 부채의 시가순자산가액에 못 미치지 않는 때에는 그 부분의 금액은 부채조정계정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자산조정계정 금액을 보유하는 내국법인은 각 자산조정계정 금액에 관련된 당초 상계액(비적격합병시 등에 동항의 규정에 의해 그 자산조정계정 금액으로 하는 것이 된 금액을 말함)을 60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내국법인이 자기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적격합병을 제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합병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시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연도(내국법인이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합병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액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감액하여야 하게 된 자산조정계정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여야 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채조정계정 금액을 보유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채조정계정 금액에 대해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해당하게 된 날이 자기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일인 경우에는 그 합병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인수종업자(퇴직급여채무인수의 대상이 된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업자를 말함. 이하 본 호 및 제9항에서 같음)가 퇴직 기타 사유로 그 내국법인의 종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퇴직급여인수종업자가 제9항 제1호 가 또는 제2호 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또는 퇴직급여인수종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채무인수액에 관련된 부채조정계정 금액(제9항 및 제10항에서 「퇴직급여 부채조정계정 금액」이라 함) 중 이들 퇴직급여인수종업자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2. 단기중요채무예상액에 관련된 손실이 발생하거나 비적격합병일 등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자기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적격합병을 제외)을 하는 경우 단기중요채무예상액에 관련된 부채조정계정 금액(이하 본 조에서 「단기중요부채보정계정 금액」이라 함) 중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3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단기중요부채조정계정 금액)

⑦ 제3항의 부채조정계정 금액(이하 본 조에서 「차액부채조정계정 금액」이라 함)을 보유하는 내국법인은 각 차액부채조정계정 금액에 관련된 당초 상계액(비적격합병시 등에 동항 규정에 의해 그 차액부채조정계정 금액으로 하도록 된 금액을 말함)을 60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그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내국법인이 자기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적격합병을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시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연도(내국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합병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액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의해 감액하여야 하게 된 부채조정계정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여야 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⑨ 내국법인이 자기를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조에서 「적격조직재편성」이라 함)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적격조직재편성 구분에 다라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 금액 및 부채조정계정 금액은 그 적격조직재편성에 관련된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제10항 및 제12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함)에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합병 적격합병 직전의 자산조정계정 금액 및 다음 각호의 부채조정계정 금액

가. 퇴직급여부채조정계정 금액 중,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등을 함으로써 그 퇴직급여 인수종업자가 그 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합병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합병법인에서 퇴직급여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의 퇴직급여인수종업자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나. 단기중요부채조정계정 금액

다. 차액부채조정계정 금액

2.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9이하 본 호에서 「적격분할 등」이라 함) 적격분할 등 직전의 다음 각호의 부채조정계정 금액

가. 퇴직급여부채조정계정 금액 중 그 내국법인이 적격분할 등을 함으로써 그 퇴직급여인수종업자가 그 적격분할 등에 관련된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가에서 「분할승계법인 등」이라 함)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분할승계법인 등에서 퇴직급여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의 퇴직급여인수종업자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나. 적격분할 등에 의해 이전하는 사업, 자산 또는 부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기중요부채조정계정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⑩ 전항의 규정에 의해 합병법인 등이 승계 받은 자산조정계정 금액 및 퇴직급여부채조정계정 금액, 단기중요부채조정계정 금액 및 차액부채조정계정 금액은 각각 합병법인 등이 동항의 적격조직재편 시에 보유하는 자산조정계정 금액 및 퇴직급여부채조정계정 금액, 단기중요부채조정계정 금액 및 차액부채조정게정 금액으로 간주한다.

⑪ 제4항 및 제7항의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1월에 못 미치는 단수가 생긴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⑫ 전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0항의 합병법인 등이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승계 받은 자산조정계정 금액에 대해 제4항 규정에 의해 감액하여야 하는 금액의 계산 기타 제1항 내지 제10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9 (비적격주식교환 등에 관련된 주식교환완전자법인 등이 보유하는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① 내국법인이 자기를 주식교환완전자법인 또는 주식이전완전자법인으로 하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적격주식교환 및 적격주식이전을 제외. 이하 본 항에서 「비적격주식교환 등」이라 함)을 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이 비적격주식교환시 등 직전에 보유하는 시가평가자산(고정자산, 토지(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를 포함하며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유가증권, 금전채권 및 연기자산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함)의 평가차익(비적격주식교환 등 직전의 가액이 그 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을 말함) 또는 평가차손(비적격주식교환 등 직전의 장부가액이 그 때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은 그 비적격주식교환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전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7관 수익 및 비용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특례

제63조 (장기할부판매 등에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이 장기할부판매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판매 혹은 양도, 공사(제조를 포함)의 청부 또는 용역제공(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기대규모공사의 청부를 제외. 이하 본 조에서 「자산의 판매 등」이라 함)을 한 경우에 그 자산의 판매 등에 관련된 수익 및 비요에 대해 자산의 판매 등에 관련된 목적물, 용역의 인도 또는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확정된 결산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체기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때에는 그 회계처리한 수익 또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그 자산의 판매 등에 관련된 수익액 및 비용액에 대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후 어떤 사업연도의 확정된 결산에 있어서 그 연체기준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제3항 혹은 제4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회계처리하지 않았던 결산에 관련된 사업연도 후 또는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내국법인이 제64조의2 제3항(리스거래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리스거래에 따른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리스자산의 인도(이하 본 조에서 「리스양도」라고 함)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에 상당하는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으로 구분한 경우에 그 리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수익 및 비용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그 리스양도에 관한 수익 및 비용에 대해 리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후의 어떤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3항 및 제4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61조의11 제1항(연결납세 개시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에서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 중 동항에서 규정하는 완전지배관계를 가지는 것 또는 제61조의12 제1항(연결납세가입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에서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이 제61조의11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결개시직전사업연도(이하 본 항에서 「연결개시직전사업연도」라고 함) 또는 제61조의1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결가입직전사업연도(이하 본 항에서 「연결가입직전사업연도」라고 함)에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는 자산의 판매 등 또는 리스 양도에 간련된 수익 및 비용(그 연결개시직전사업연도 또는 연결가입직전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연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및 손금에 산입되는 것 및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해 그 연결개시직전사업연도 또는 연결가입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및 손금에 산입되는 것을 제외)은 그 수익액과 비용액의 차액이 소액인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계약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계약에 관련된 것을 제오l하고, 그 연결개시직전사업연도 또는 연결가입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62조의9 제1항의 내국법인이 동항에서 규정하는 비적격주식교환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연도를 제외. 이하 본 항에서 「비적격주식교환등 사업연도」라고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는 자산의 판매 등 또는 리스양도에 관련된 수익 및 비용(그 비적격주식교화s등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연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및 손금에 산입되는 것 및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비적격주식교환등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및 손금에 산입되는 것을 제외)은 그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소액인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계약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계약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비적격주식교환등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자산의 판매 등 또는 리스양도에는 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완전지배관계가 있는 연결법인에 대하여 하는 제61조의13 제1항(분할등전사업연도 등에 연결법인간 거래의 손익조정)에서 규정하는 양도손익조정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판매 또는 양도에 따라 동항 또는 제81조의10 제1항(연결법인간거래의 손익조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한함)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⑥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판매 등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요건을 정한 계약에 근거하여 그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및 리스양도를 말한다.

1. 월부, 연부 기타 할부방법으로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의 지불을 받을 것
2. 자산의 판매 등에 관련된 목적물, 용역의 인도 또는 제공 기일의 익일붙 최후의 할부금 지불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3.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⑦ 제2항 규정은 리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수익 및 비용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를 기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⑧ 세무서장은 전항의 기재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⑨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 이루어진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판매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판매 등에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의 처리에 대한 특례 기타 동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4조 (공사청부와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이 장기대규모공사(공사(제조 및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 중 착수일부터 공사에 관련된 계약에 정해져 있는 목적물의 일도 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 공사일 것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를 청부한 때에는 그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장기대규모공사의 청부에 관련된 수익 및 비용 중 각 사업연도의 수익 및 비용으로써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사진행기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공사(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본 항에서 「착공사업연도」라 함) 중에 그 목적물이 인도된 것에 한하도록 학, 장기대규모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이하 본 조에서 같음) 청부를 한 경우에, 그 공사청부에 관련된 수익 및 비용에 대해 착공사업연도부터 그 공사의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확정된 계산에 있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사진행기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때에는 그 회계처리한 수익 및 비용은 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그 공사청부에 관련된 수익 및 비용에 대해 착공사업연도 후 어떠한 사업연도의 확정된 결산에서 그 공사진행기준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하지 않았던 결산에 관련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 이루어진 경우에 장기대규모공사 또는 공사청부에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의 처리에 대한 특례 기타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8관 리스거래

제64조의2 (리스거래에 관련된 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리스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리스거래의 목적이 되는 자산(이하 본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함)이임대인에서 임차인으로 인도된 때에 그 리스자산의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하고, 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내국법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 대한 임대(리스거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를 조건으로 자산의 매매를 한 경우에 그 자산의 종류, 매매 및 임대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기타 상황에 비추어 이들 일련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차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산의 매매는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그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가 있었던 것으로 하여 양수인 또는 양도인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리스거래라 함은 자산의 임대차(소유권이 이전하지 않은 토지의 임대차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 임대차기간 도중에 해제할 수 없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일 것
2. 임대차에 관련된 임차인이 그 임대체차에 관련된 자산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수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자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게 되는 것일 것.

④ 전항 제2호의 자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판정 기타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9관 법인과세신탁에 관련된 소득금액의 계산

제64조의3 ① 제2조 제29호 다(정의)에서 규정하는 특정수익증권발행신탁이 법인과세신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전의 미분배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그 법인과세신탁에 관련된 수탁법인(제4조의7(수탁법인 등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에서 규정하는 수탁법인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이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과세신탁(제2조 제29호의 나의 신탁에 한함)의 제20조 제1항(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비용의 귀속)에서 규정하는 수익자(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자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하며, 청산중의 수익자를 제외)가 됨으로써 그 법인과세신탁이 동호 나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동호 가 또는 다의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그 신탁법인으로부터 신탁자산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가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직전의 장부가액으로 승계 받은 것으로써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전항의 내국법인이 동항의 규정에 의해 자산 및 부채를 인계받게 된 경우의 그 승계에 의해 발생한 수익액 또는 손실액은 그 내국법인이 승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과세신탁에 관련된 수탁법인이 그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 변경에 의해 법인과세신탁에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때에는 그 변경 후의 수탁자에게 이전한 자산 및 부채의 변경 직전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하여 그 수탁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⑤ 전항 규정에 의해 변경 후의 수탁자가 승계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 기타 수탁법인 또는 그 수익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0관 공익법인 등이 보통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제64조의4 ① 일반사단법인 혹은 일반재단법인 또는 의료법인(공익법인 등에 한함. 제2항에서 「특정공익법인 등」이라 함)인 내국법인이 보통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이 해당하게 된 날(이하 본 항 및 제3항에서 「이행일」이라 함) 전의 수익사업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누적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3항에서 「누적소득금액」이라 함) 또는 그 이행일 전의 수익사업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액의 누적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3항에서 「누적결손금액」이라 함)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이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특정공익법인 등을 피합병법인으로 하고, 보통법인인 내국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피합병법인의 적격합병 전의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누적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3항에서 「합병전누적소득금액」이라 함) 또는 적격합병전의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액의 누적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3항에서 「합병전누적결손금액」이라 함)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적격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내국법인이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平成18년 법률 제49호)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공익인정의 취소) 규정에 의해 공익인정이 취소됨으로써 보통법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인 경우, 전항의 내국법인이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에 관련된 합병법인인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변경일 또는 그 적격합병일 이후에 공익 목적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적소득금액 혹은 합병전누적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누적결손금액 혹은 합병전누적결손금액에 가산한다.

④ 전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및 그 계산에 관한 명세의 기재가 있거나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세무서장은 전항의 기재 또는 서류첨부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 또는 서류첨부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처리 기타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1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세목

제65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세목) 제2관 내지 제10관(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율

제66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①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보통법인 중 각 사업연도 종료 시에 자본금 혹은 출자금이 1억엔 이하인 것 혹은 자본?출자를 보유하지 않은 자(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상호회사를 제외)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연 800만엔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2의 세율에 따른다.

③ 내국법인인 공익법인 등 또는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22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에 대한 제2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연 800만엔」은 「800만엔을 12로 나누어서 이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전항의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1워에 못 미치지는 단수가 생긴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⑥ 제4조의7(수탁법인 등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에서 규정하는 수탁법인에 대해서는 제2항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 (특정동족회사에 대한 특별세율) ① 내국법인인 특정동족회사(피지배회사로 피지배회사인가에 대한 판정기초가 된 주주 등 중에 피지배회사가 아닌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판정의 기초가 되는 주주 등에서 제외하여 판정하도록 한 경우에도 피지배회사가 되는 것(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엔 이하인 것을 제외)을 말함. 이하 본조에서 같음)의 각 사업연도의 유보금액이 유보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동족회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유보금액을 다음 각 호 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금액에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연 3천만엔 이하의 금액 100분의 10
2. 연 3천만엔을 넘고, 연 1억엔 이하의 금액 100분의 50
3. 연 1억엔을 넘는 금액 100분의 20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피지배회사란 회사 주주 등(회사가 자기 주식 또는 출자를 보유하는 경우 그 회사를 제외) 1인 및 이와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 및 법인이 그 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출자를 제외)의 총수 또는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수 또는 금액의 주식 또는 출자를 보유하는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의 회사를 말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보금액이란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제5항에서 「소득 등 금액」이라 함) 중 유보한 금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해 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제68조 내지 제70조의2 (세액공제) 규정에 의해 공제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및 법인세액에 관련된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都道府?민세 및 시군구민세(도민을 포함)액으로써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62조 제2항(합병 및 분할에 따른 자산 등의 시가양도)에서 규정하는 최후사업연도 또는 분할전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경우의 소득금액)
2. 제23조(수취배당 등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의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연결법인인 특정동족회사가 다른 연결법인(특정동족회사와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것에 한함)으로부터 받는 배당액 등에 관련된 것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
3. 제26조 제1항(환급금 등의 익금불산입)에서 규정하는 환급을 받거나 충당되는 금액(동항 제1호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을 제외),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액되는 부분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수취하는 부대세(이자세를 제외. 이하 본 호에서 같음)의 부담액 및 부대세의 부담액 감소액 및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환급 받는 금액
4. 제57조(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월), 제58조(청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재해에 의한 손실금의 이월) 또는 제59조(회사갱생 등에 의한 채무면제 등이 있었던 경우의 결손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의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④ 특정동족회사의 전항에서 규정하는 유보한 금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그 특정동족회사에 의한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익의 배당(지불에 관한 결의일이 지불에 관한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결산의 확정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것(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에 한함)액(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익의 배당이 금전 이외의 자산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시의 장부가액(그 자산이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에 취득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가액)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불된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보공제액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말한다

1. 그 사업연도의 소득 등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연 2천만엔
3. 그 사업연도 종료 시의 이익적립금액(사업연도의 소득 등 금액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을 제외)이 그 때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⑥ 사업연도가 1년에 미치지 않는 특정동족회사에 대한 제1항 및 전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1항 중「연 3천만엔」은 「3천만엔을 12로 나누어 여기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 1억엔」은 「1억엔을 12로 나누어 여기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전항 중 「연 2천만엔」은 「2천만엔을 12로 나누어, 여기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본다.

⑦ 전항의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1월에 못 미치는 단수가 생긴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⑧ 제1항의 경우에 회사가 동항의 특정동족회사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정은 그 회사의 사업연도 종료 시의 현황에 따른다.
⑨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보한 금액에서 나눈 금액 기타 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관 세액공제

제68조 (소득세액의 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소득세법 제174조 각 호(내국법인에 관련된 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규정하는 이자 등, 배당 등, 급부보전금, 이자, 이익, 차익, 이익의 분배 또는 상금(이하 본 조에서 「이자 및 배당 등」이라 함)을 지불 받은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 동법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소득세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전항 규정은 내국법인인 공익법인 등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이 지불 받는 이자 및 배당 등에서 수익사업이외의 사업 또는 이에 속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동항의 소득세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동항 규정에 의해 공제 받아야 하는 금액 및 그 계산에 관한 명세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규정에 의해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써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항의 기재가 없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69조 (외국세액의 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국법인세(외국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금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내국법인이 통상 하는 거래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해 제66조 제1항 내지 제3항(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그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그 원천이 국외에 있는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본 조에서 「공제한도액」이라 함)을 한도로 하여 그 외국법인세액(소득에 대한 부담이 고율인 부분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 이하 본 조에서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되는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공제한도액과 지방세 공제한도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과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전 3년 내 사업연도(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개시한 각 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의 공제한도액 중 그 사업연도에 이월되는 부분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본 항 및 제17항에서 「이월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이라 함)가 있는 때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제한도액에서 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되는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이월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되는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공제한도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그 이전 3년 내 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되었던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 중 그 사업연도에 이월되는 부분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본 항 및 제17항에서 「이월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이 있는 때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제한도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되는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이월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 그 연결사업연도의 연결공제한도 개별귀속액(제81조의15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외국세액의 공제)에서 규정하는 연결공제한도 개별귀속액이라 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연결공제한도 개별귀속액은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에 대응하는 이전 3년 내 사업연도의 공제한도액으로 간주하고,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3년 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 그 연결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된 개별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제81조의1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별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이 있는 때에는 전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개별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은 그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에 대응하는 이전 3년 내 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된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한다.

⑤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 및 제10항에서 「적격조직재편성」이라 함)에 의해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제10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적격조직재편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적격조직재편성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법인의 이전 3년 내 사업연도의 공제한도액 및 그 내국법인이 이전 3년 내 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된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한다.

1. 적격합병 적격합병에 관련된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3년 내 사업연도(적격합병일 전 3년 이내에 개시한 각 사업연도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를 말함)의 공제한도액 및 연결공제한도 개별귀속액 및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 및 개별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

2. 적격분할형분할 적격분할형분할에 관련된 분할법인의 분할 이전 3년 내의 사업연도(적격분할형분할일 이전 3년 이내에 개시한 각 사업연도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를 말함. 제7항에서 같음)의 공제한도액 및 연결공제한도 개별귀속액 및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 및 개별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 중 그 적격분할형분할에 의해 그 내국법인이 이전 받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분사형분할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관련된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의 분할 등 이전 3년 내 사업연도(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개시한 각 사업연도 혹은 각 연결사업연도 또는 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개시한 각 연결사업연도 혹은 각 사업연도를 말함. 제7항에서 같음)의 공제한도액 및 연결공제한도 개별귀속액 및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 및 개별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 중 그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의해 그 내국법인이 이전 받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 전항의 규정은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 및 제7항에서 「적격분할 등」이라 함)에 의해 그 적격분할 등에 관련된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제7항에서 「분할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사업을 이전 받은 내국법인에 있어서는 그 내국법인이 적격분할일 등 이후 3월 이내에 내국법인의 이전 3년 내 사업연도의 공제한도액 및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⑦ 적격분할 등에 관련된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이하 본 항에서 「분할승계법인 등」이라 함)이 제5항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격분할 등에 관련된 분할법인 등의 적격분할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분할법인 등의 분할 이전 3년 내 사업연도 또는 분할등 이전 3년 내 사업연도의 공제한도액 및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 중 제5항 규정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등의 이전 3년 내 사업연도의 공제한도액으로 간주되는 금액 및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해 이전 3년 내 연결사업연도(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전 3년 내 연결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의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으로 간주되는 금액 및 제5항 규정에 의해 그 분할승계법인 등 이전 3년 내 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된 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 및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그 이전 3년 내 연결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된 개별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의 수

또는 금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또는 출자 제외)의 총수 또는 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수 또는 금액일 것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함)로부터 받은 잉여금 배당(주식?출자에 관련된 것에 한하며, 자본잉여금액의 감소에 따른 것 및 분할형분할에 의한 것을 제외), 이익배당(분할형분할에 의한 것을 제외) 또는 잉여금 분배(출자에 관련된 것에 한함)액(이하 본 조에서 「배당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그 배당액 등에 대응하는 것(그 배당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과의 합계액이 배당액 등에 대하여 고율의 부담이 되는 부분을 제외)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법인이 납부하는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을 적용한다.

⑨ 내국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에 제81조의15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 기간에 있어서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 배당액 등은 각 사업연도에 전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 등으로, 그 배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개별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동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각각 간주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⑩ 내국법인이 납부하게 된 외국법인세액(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전항의 규정에 의해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 중 제8항 규정에 의해 내국법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의 금액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연결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그 외국법인세액이 감액되는 경우(내국법인이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합병법인 등이 납부하도록 된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이 이전 받은 사업에 관련된 소득에 기인하여 납부하게 된 외국법인세액이 감액된 경우를 포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및 그 내국법인이 납부하게 된 외국법인세액(제81조의15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동조 제9항 규정에 의해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 중 동조 제8항 규정에 의해 내국법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의 금액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결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그 외국법인세액이 감액된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⑪ 내국법인이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외국자회사가 외국계회사(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출자의 수?금액이 그 발행주식?출자(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또는 출자를 제외)의 총수 또는 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수 또는 금액이 되었을 것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함)로부터 받은 잉여금의 배당(주식 또는 출자에 관련된 것에 한하며, 자본잉여금액의 감소에 따른 것 및 분할형분할에 의한 것을 제외), 이익배당(분할형분할에 의한 것을 제외) 또는 잉여금의 분배(출자에 관련된 것에 한함)액(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 이하 본 항에서 「외국계회사로부터의 배당액 등」이라 함)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계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외국계회사로부터의 배당액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하여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내국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에 제81조의15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동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계회사로부터의 배당액 등이 있는 것에 한함)로부터 받은 배당액 등이 있는 경우로써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 기간에 그 외국계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 등은 각 사업연도에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 등으로, 그 외국계회사로부터의 배당액 등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외국계회사로부터의 배당액 등으로,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외국계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각각 간주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⑬ 제11항(전항 규정에 따라 간주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제28호(외국자회사의 외국세액의 익금산입)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 중 「간주되는 금액」은 「간주되는 금액 및 동조 제11항(동조 제12항 규정에 의해 간주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해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으로 본다.

⑭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계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제12항 규정에 의해 그 외국계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 중 제11항 규정에 의해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부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동항 규정 적용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연결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이하 본 항에서 같음) 기간에 그 외국계회사에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이 감액된 경우 및 제81조의1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계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동조 제12항 규정에 의해 그 외국계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 중 동조 제11항 규정에 의해 동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부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동항 규정을 적용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결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기간에 그 외국계회사에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이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의 계산 기타 제11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⑮ 본 조 각 항 규정은 내국법인인 공익법인 등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이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 혹은 이에 속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 또는 그 사업에 관련된 주식 혹은 출자에 대해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동항 규정에 의해 공제 받아야 하는 금액 및 그 계산에 관한 명세가 기재되거나,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이 부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그러한 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이월공제한도액 또는 이월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에 관련된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 중 가장 오래된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액 및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된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을 기재한 확정신고서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공제한도액 개별귀속액 및 각 연결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된 개별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을 기재한 연결확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에 이들 규정에 의해 공제 받아야 하는 금액을 기재함과 동시에, 신고서에 이월공제한도액 또는 이월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이들 규정에 의해 공제 받아야 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에 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액 및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된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기재된 금액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확정신고서에 연결공제한도액 개별귀속액 및 납부하게 된 개별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세무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되어야 하게 되는 금액 또는 공제한도액 등(전항에서 규정하는 공제한도액,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 또는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 개별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16항 및 제17항의 기재 또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확정신고서 또는 연결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 또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해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6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4항 내지 제18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 내지 제9항, 제12항 및 제13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다른 법인세액의 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출한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각 사업연도(연결법인인 내국법인의 분할전사업연도(자기를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을 제15조의2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의 익일부터 그 종료일 사이에 한 경우의 그 분할형분할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항 및 제2항에서 같음)을 제외)의 소득금액이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초과하는 금액 중에 사실을 가장하여 회계처리한 바에 근거한 것이 있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할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써 납부된 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중 경정으로 감소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가장하여 회계처리한 금액에 관련된 것은 국세통칙법 제56조 내지 제58조(환급?충당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연결법인인 내국법인의 분할전사업연도 및 연결후각사업연도(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의 그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개시하는 가 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경정일 이후에 그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해산한 경우의 적격합병에 관련된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연결법인인 그 합병법인의 분할전사업연도 및 연결후각사업연도를 제외)를 포함)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② 전항 또는 제81조의16 제1항 혹은 제2항(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근거한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연결사업연도에 있어서의 공제)에서 규정하는 경정함에 따라 그 사실을 가장하여 회계처리한 내국법인의 경정에 관련된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연결법인인 내국법인의 분할전사업연도를 제외)의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한 경우에 그 경정으로 감소하는 부분의 소득금액 중에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경정에 관련된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에 가장하여 회계처리한 금액에 관련된 것이 있는 때에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가장하여 회계처리한 바에 기초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은 제1항의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에 의해 해산한 후에 그 내국법인의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동항에서 규정하는 경정 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항 중 「, 경정일의」은 「,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에 관련된 합병법인의 경정일의」로, 「내국법인의 분할전사업연도 및」은 「합병법인의 분할전사업연도 및」으로,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에 의해 해산」은 「합병법인이 그 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에 의해 해산」으로, 전항 중 「회계처리한 내국법인」은 「회계처리한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에 관련된 합병법인」으로, 「내국법인」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제70조의2 (세액공제의 순서) 본 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액에서의 공제에 대해서는 우선 전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 후에 제68조 및 제69조(소득세액 등의 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절 신고, 납부 및 환급 등

제1관 중간신고

제71조 (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인 보통법인(청산중의 법인을 제외)은 그 사업연도(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중 적격합병(피합병법인 모두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인 것을 제외.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음)에 의해 설립된 것 이외의 것으로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 공익법인 등(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에 한함)이 보통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연결자법인이 제4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함) (연결납세의 승인취소) 규정에 의해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제15조의2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 사업연도 개시일에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무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이 10만엔 이하인 경우 또는 그 금액이 없는 경우는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1.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74조 제1항 제2호(확정신고에 관련된 법인세액)의 금액으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 확정한 것을 그 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이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연결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보통법인에 관련된 연결법인세 개별귀속지불액(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액으로써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써 제81조의18 제1항(연결법인세의 개별귀속액 계산) 규정에 의해 계산되는 금액을 말함. 제2항 제1호에서 같음)으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 확정된 연결사업연도의연결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81조의22 제1항 제2호(연결확정신고에 관련된 법인세액) 금액에 관한

것을 그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이 속하는 보통법인의 연결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여기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 계산의 기초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동항의 보통법인이 적격합병(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제외.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관련된 합병법인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적격합병을 한 것이 있는 때에 그 보통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그 사업연도의 중간신고서에 대해서는 전항 제1호 금액은 동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 보통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1년 전 이후에 종료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그 월수가 6월에 못 미치지는 것을 제외)의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74조 제1항 제2호 금액으로 보통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 확정한 것 또는 그 1년 전 이후에 종료한 피합병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그 월수가 6월에 못 미치는 것을 제외)의 피합병법인의 연결법인세 개별귀속지불액으로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 확정한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81조의22 제1항 제2호 금액에 관련된 것 중 가장 새로운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에 관련된 것(이하 본 조에서 「피합병법인의 확정법인세액 등」이라 함)이 계산의 기초가 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이에 그 보통법인의 전 사업연도 월 수 가운데 차지하는 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적격합병일 전일까지의 기간의 월수 비율에 6을 곱한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같은 날 이후 6월을 경과한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피합병법인의 확정법인세액 등이 계산의 기초가 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이에 그 적격합병일부터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경우에 동항의 보통법인이 적격합병(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제외)에 관련된 합병법인인 때에 그 보통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신고서에 대해서는 동항 제1호 금액은 동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피합병법인의 확정법인세액 등이 계산의 기초가 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이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본 조 각 항의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1월에 미치지 않는 단수가 생긴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제72조 (가결산을 한 경우의 중간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중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인 보통법인(제4조의7(수탁법인 등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에서 규정하는 수탁법인을 제외)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그 기간에 관련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그 보통법인은 제출하는 중간신고서에 제71조 제1항 각 호 사항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액
2. 그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호의 소득금액에 대해 전절(세액의 계산) (제67조(특정동족회사의 특별세율) 및 제70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근거한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다른 법인세액의 공제)을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 계산되는 법인세액
3. 제1호 및 제2호 금액 계산의 기초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중간신고서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말일에 대차대조표, 그 기간의 손익계산서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관련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액 및 동항 제2호의 법인세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제2조 제25호(정의) 중 「확정한 결산」은 「결산」으로, 제1절 제3관, 제4관, 제7관 및 제10관(과세표준의 계산) (제57조 제2항, 제7항 및 제11항(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월 요건) 및 제58조 제2항 및 제6항(청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의 재해에 의한 결손금의 이월 요건)을 제외) 규정 중 「확정신고서」는 「중간신고서」로, 「확정한 결산」은 「결산」으로, 제68조 제3항 및 제4항(소득세액의 공제) 및 제69조 제16항(외국세액의 공제) 중 「확정신고서」는 「중간신고서」로, 동조 제17항 중 「확정신고서에 이들」은 「중간신고서에 이들」로, 동조 제18항 중 「확정신고서」는 「중간신고서, 확정신고서」로 본다.

제73조 (중간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특례) 중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인 보통법인이 중간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통법인에 대해서는 제출기간에 세무서장에 대하여 제71조 제1항 각 호(전기 실적에 따른 중간신고서의 기재사항)의 사항을 기재한 중간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관 확정신고

제74조 (확정신고) ① 내국법인(청산중인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및 청산중의 협동조합 등을 제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2월 이내에 세무서장에 대하여 확정한 결산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액
2. 제1호의 소득금액에 대해 전절(세액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3. 제68조 및 제69조(소득세액 등의 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제2호의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서 다 공제할 수 없었던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4.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에 대해 중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의 법인세액에서 그 신고서에 관련된 중간납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간납부액으로 동 호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다 공제할 수 없었던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전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그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5조 (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① 제7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재해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제7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유를 제외)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그 신고서를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통칙법 제11조(재해 등에 의한 기한의 연장) 규정에 의해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국법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서에 관련된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45일 이내에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일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갖추어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전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신청 이유가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제1항의 신청기한 연장 또는 전항의 각하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

⑤ 제2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청서에 관련된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2월 이내에 동항의 제출기한 연장 또는 제3항의 각하처분이 없었던 때에는 그 신청에 관련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일을 제1항 기일로 제출기한이 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동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서를 동항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일 전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날로써 동항의 기일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서에 관련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그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 이후 2월을 경과한 날부터 동항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일까지 기간의 일수에 다라 연 7.3%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계산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와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2 (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특례) ① 제74조 제1항(확정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 기타 이와 유사한 이유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그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신고서를 각각 동항에서 규정하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신청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신고서 제출기한을 1월간(특별한 사정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3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결산에 대한 정기총회가 소집되지 않는 등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정하는 월수의 기간)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서에 관련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 동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월수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갖추어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항에서 규정하는 이유 혹은 사정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그 사정에 변경이 생겼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출기한의 연장처분을 취소하거나 동항의 지정에 관련된 월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취소 또는 변경처분이 있었던 때에는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대해 처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전항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련된 내국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

⑤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내국법인은 그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관련된 동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에 대하여 동항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을 그만두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사업연도 개시일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동항의 제출기한 연장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⑥ 제75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대하여 동조 제7항 규정은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의 동항에서 규정하는 신청서에 관련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5항 중 「2월」은 「15일」로, 「신청에 관련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일을 제1항의 기일로써」는 「1월간(제75조의2 제1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련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월수의 기간」으로, 동조 제7항 중 「동항에서 규정하는 신청서에 관련된 사업연도」는 「그 적용에 관련된 각 사업연도」로, 「사업연도」는 「각 사업연도」로, 「동항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일」은 「제75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연장된 제출기한」으로 한다.

⑦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2월을 경과한 날 이전에 재해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한하여 동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75조 및 국세통칙법 제11조(재해 등에 의한 기한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⑧ 제75조의 규정은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전항 규정의 적용에 관련된 사업연도를 제외)에 대해 재해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서를 동항 규정에 의해 연장된 제출기한가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2항 중 「신고서에 관련된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45일 이내」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날의 15일 전까지」로, 동조 제5항 중 「신고서에 관련된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처 2월 이내」는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로, 동조 제7항 중 「내국법인은 동항」은 「내국법인은 제75조의2 제6항에서 준용하는 본항 규정에 다른 이자 외에 제1항」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 이후 2월을 경과한날부터 동항」은 「동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된 신고서 제출기한의 익일부터 제1항」으로 본다.

제3관 납부

제76조 (중간신고에 따른 납부) 중간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인 보통법인은 그 신고서에 기재한 제71조 제1항 제1호(전기실적에 따른 중간신고서의 기재사항)의 금액(제72조 제1항 각 호(가결산을 한 중간신고서의 기재사항)의 사항을 기재한 중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금액)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7조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 제74조 제1항(확정신고)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은 신고서에 기재한 동항 제2호의 금액(동항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호의 금액)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관 환급

제78조 (소득세액 등의 환급) ①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신고서에 제74조 제1항 제3호(소득세액 등의 공제부족액)의 금액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때에 세무서장은 그 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한다.

② 전항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국세통칙법 제58조 제1항(환급가산금)의 기간은 전항의 확정신고서 제출기한(신고서가 기한 후 신고서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의 익일부터 환급을 위한 지불을 결정하는 날 또는 환급금에 대해 충당하는 날(이날 전에 충당하는데 적당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가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을 동항의 확정신고서에 관련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미납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중 충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부가하지 않도록 하고, 충당되는

부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연체세 및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항의 환급절차, 동항 규정에 의한 환급금(이와 관련된 환급가산금을 포함)에 대해 충당하는 경우의 방법 기타 동항 규정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79조 (중간납부액의 환급) ① 중간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인 보통법인이 그 중간신고서에 관련된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확정신고서에 제74조 제1항 제5호(중간납부액의 공제부족액)의 금액에 대해 기재한 때에 세무서장은 보통법인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중간납부액을 환급한다.

② 세무서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동항의 중간신고서에 관련된 중간납부액에 대하여 납부된 연체세가 있는 때에, 그 금액 중 동항 규정에 의해 환급되는 중간납부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함께 환급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국세통칙법 제58조 제1항(환급가산금) 기간은 제1항 규정에 의해 환급하여야 하는 중간납부액의 납부일(중간납부액이 납기한 전에 납부된 경우에는 그 납기한)의 익일부터 환급을 위한 지불결정을 하는 날 또는 환급금에 대해 충당하는 날(그 전에 충당하는데 적당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동항의 확정신고서가 기한 후 신고서인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익일부터 제출된 날까지의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을 그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중간납부액에 관련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써 미납인 것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액 중 충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급을 부가하지 않도록 하고, 충당되는 부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연체세 및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다.

⑤ 제2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은 부가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환급절차, 제1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이와 관련된 환급가산금을 포함)에 대해 충당하는 경우의 방법 기타 동항 또는 제2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손금의 회복에 따른 환급) ① 내국법인이 청색신고서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그 내국법인은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하여 그 결손금액에 관련된 사업연도(이하 본 조에서 「결손사업연도」라고 함) 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개시한 어떤 사업연도(내국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 연결법인인 내국법인이 연결모법인 사업연도(제15조의2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 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그 내국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제57조 제9항 제1호 가 및

다(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월)의 것을 제외)을 한 경우의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내국법인이 제4조의3 제9항 제2호 도는 제11항 제2호(연결납세의 승인신청)의 법인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 및 연결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제57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에 그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것에 한하며, 제57조 제9항 제2호 가의 것을 제외)을 한 경우의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를 제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부대세액을 제외하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세액공제) 규정에 의해 공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에 어떤 사업연도(이하 본 조에서 「환급소득사업연도」라고 함)의 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결손사업연도의 결손금액(본 조의 규정에 의해 다른 환급소득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해 환급 받는 금액 계산의 기초로 하는 것을 제외. 제4항에서 같음)에 상당하는 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미 환급소득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해 본 조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적용에 의해 환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그 법인세액으로 간주하거나, 환급소득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적용에 관련된 결손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환급소득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규정은 동항의 내국법인이 환급소득사업연도부터 결손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연속하여 청색신고서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사업연도의 청색신고서인 확정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세무서장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에 대해 해산(적격합병에 의한 해산 및 제5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 후의 해산을 제외), 사업의 전부양도, 회사갱생법 또는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갱생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실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발생한 경우(그 사실이 내국법인의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를 제외)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이전 1년 이내에 종료한 어떤 사업연도 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동조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것을 제외)이 있는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 중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이후 1년 이내에」로, 「청구할 수 있다는」는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환급소득사업연도부터 결손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연속하여 청색신고서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본다.

⑤ 제1항(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규정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환급 받고자 하는 법인세액, 그 계산의 기초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환급청구서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전항의 환급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청구의 기초가 된 결손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사한 바에 따라 청구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청구에 관련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를 환급하거나 청구이유가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⑦ 전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국세통칙법 제58조 제1항(환급가산금) 기간은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규정에 따른 환급이 청구된 날(제1항 규정에 의한 환급이 청구된 일이 동항에서 규정하는 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 전인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의 익일 이후 3월을 경과한 날부터 환급을 위한 지불결정을 하는 날 또는 환급금에 대해 충당하는 날(그 전에 충당하는데에 적당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5관 경정청구에 대한 특례

제80조의2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의 경정 등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특례) 내국법인이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7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확정신고서의 기재사항)의 금액 또는 연결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81조의2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연결확정신고서의 기재사항)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 경정 혹은 결정을 받고, 수정신고서의 제출, 경정 혹은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 그 내국법인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경정 혹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세무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대해 국세통칙법 제23조 제1항(경정청구)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서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경정 혹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정신고서, 경정 혹은 결정에 관련된 사업연도 후 혹은 연결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였거나 결정을 받은 사업연도에 관련된 제7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금액(금액에 대해 수정신고서가 제출 또는 경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경정 후의 금액)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
2. 수정신고서, 경정 혹은 결정에 관련된 사업연도 후 혹은 연결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였거나, 결정을 받은 사업연도에 관련된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액 또는 동항 제3호 혹은 제5호의 금액(이들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서가 제출 또는 경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결정 후의 금액)이 과소하게 되는 경우

제1장의2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제1관 과세표준

제81조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연결모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그 연결모법인이 속하는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 금액으로 한다.

제2관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제81조의2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은 그 연결사업연도의 익금에서 그 연결사업연도의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관 익금 또는 손금의 계산

제1목 개별익금액 또는 개별손금액

제81조의3 (개별익금액 또는 개별손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①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기간을 제22조 제1항(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사업연도로써 전항 제1장 제1절 제2관 내지 제11관(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규정에 의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한 경우에 익금액이 되는 금액(제23조(수취배당 등의 익금불산입) 규정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경우에 익금액이 되는 금액에 한함. 이하 본 장에서 「개별익금액」이라 함) 또는 손금액이 되는 금액(제37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경우에 손금액이 되는 금액에 한함. 이하 본 장에서 「개별손금액」이라 함)은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전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목 수취배당 등

제81조의4 (연결사업연도의 수취배당 등 익금불산입) ① 연결법인이 받는

제23조 제1항(수취배당 등의 익금불산입)에서 규정하는 배당액 등(이하 본 조에서 「배당액 등」이라 함) 중, 연결법인 주식 등 및 관계법인 주식 등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식 등(주식, 출자 또는 수익권을 말함.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음)에 관련된 배당액 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연결법인 주식 등에 관련된 배당액 등 및 관계법인 주식 등에 관련된 배당액 등은 그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연결법인이 받는 배당액 등(연결법인의 개별익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제24조 제1항(배당액 등으로 간주하는 금액) 규정에 의해 그 연결법인이 받는 배당액 등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제외.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의 원본인 주식 등을 그 배당액 등의 지불에 관련된 기준일(신탁수익의 분배에 있어서는 계산의 기초가 된 기간의 말일) 이전 1월 이내에 취득하거나 그 주식 등 또는 주식 등과 같은 종목의 주식 등을 그 기준일 이후 2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한 주식 등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배당액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동항 연결법인이 그 연결사업연도에 지불하는 부채의 이자(제23항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다른 연결법인(연결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것에 한함)에 지불하는 것을 제외)가 있는 때에는 연결법인 주식 등 및 관계법인 주식 등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식 등에 관련된 배당액 등 또는 관계법인 주식 등에 관련된 배당액 등에 대해 제1항 규정에 의해 그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보유하는 연결법인 주식 등 및 관계법인 주식 등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식 등에 대해 그 연결사업연도에 받는 배당액 등의 합계액에서 그 부채의 이자액 중 주식 등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보유하는 관계법인 주식 등에 대해 그 연결사업연도에 받은 배당액 등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이자액 중 관계법인 주식 등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으로써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④ 제1항 및 전항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 주식 등이라 함은 연결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계법인 주식 등이라 함은 연결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공익법인 등 및 인격 없는 사단 등을 제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출자를 제외)의 총수 또는 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수 또는 금액의 주식 또는 출자를 보유하는 경우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전항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 주식 등을 제외)를 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은 연결확정신고서에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배당액 등 및 계산에 관한 명세가 기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규정에 의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써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 세무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해 익금에 산입되지 않게 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항의 기재가 없는 연결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⑧ 제1항 규정에 의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 중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의 계산 기타 동항 내지 제5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3목 외국세액

제81조의4의2 (연결사업연도의 외국세액 환급금의 익금불산입) 연결법인이 제81조15 제1항 내지 제3항(연결사업연도의 외국세액 공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결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에 이들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외국법인세액(제69조 제1항(외국세액의 공제)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이 감액된 경우(연결법인이 제81조의15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동항에서 규정하는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합병법인 등이 납부하게 된 외국법인세액 중 연결법인이 이전 받은 사업에 관련된 소득에 기인하여 납부하게 된 외국법인세액이 감액된 경우를 포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 또는 연결법인이 제69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에 이들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외국법인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그 감액된 금액 중 제81조의1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별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 또는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이 감액된 부분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은 그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5 (연결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자회사의 외국세액의 익금산입) 연결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에 제81조의15 제8항(연결사업연도의 외국세액의 공제)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에 대해 동조 제8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그 연결법인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제4목 기부금

제81조의6 (연결사업연도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연결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을 제외)의 합계액 중, 연결법인에 관련된 연결모법인의 그 연결사업연도 종료 시의 연결개별자본금 등 또는 그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그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연결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그 연결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다른 연결법인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이 있는 때에 그 기부금은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중에 제37조 제3항 각호(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의 기부금이 있는 때에는 그 기부금의 합계액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중에 제3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이 있는 때에는 그 기부금의 합계액(그 합계액이 제1항의 연결법인에 관련된 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 시의 연결개별자본금 등 또는 그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연결법인이 제37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특정공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하기 위해 지출한 금전은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제1항, 전항 및 제6항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전항 중 「제3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37조 제6항 규정에 의해 의제 적용되는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으로 하는 등 본 항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⑥ 제37조 제7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은 전 각 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9항 중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은 「서류를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각 연결법인에 있어서 보존하고 있는」라고 본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의 계산 기타 이들 규정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목 소득세액 등

제81조의7 (연결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액의 손금불산입) ① 연결법인이 제81조의 14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소득세액의 공제)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액에 대해 동항 또는 제81조의29 제1항(연결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액 등의 환급) 혹은 제133조 제1항(확정신고 또는 연결확정신고에 관련된 경정에 따른 소득세액 등의 환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8 (연결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세액의 손금불산입) ① 연결법인이 제81조의15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외국세액의 공제)에서 규정하는 개별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이하 본 항에서 「개별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에 대해 동조 또는 제81조의29 제1항(연결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액 등의 환급) 혹은 제133조 제1항(확정신고 또는 연결확정신고에 관련된 경정에 따른 소득세액 등의 환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 나부하게 되는 개별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은 납부하게 되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목 이월결손금

제81조의9 (연결결손금의 이월) ① 연결모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연결모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을 한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제15조의2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 개시일)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액(본 항 규정에 의해 각 연결사업연도 전의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것 및 제81조의31(연결결손금의 회복에 의한 환급) 규정에 의해 환급 받아야 하는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것을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결결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연결결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결결손금액에 대해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써 계산한 경우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연결결손금액이 발생한 연결사업연도 전의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문 규정에 의해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에 있어서 동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결손금액 또는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은 그 결손금액 또는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이 발생한 연결사업연도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액으로 간주한다.

1.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최초의 연결모법인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모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제57조 제1항(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월)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액(동조 제2항 또는 제6항 규정에 의해 결손금액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하며, 동조 제5항 또는 제9항에 의하지 않는 것을 제외. 제2호 가에서 같음) 또는 제58조 제1항(청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재해에 의한 결손금의 이월)에서 규정하는 재해손실결손금액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 또는 재해손실결손금액
2.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5년 전의 날부터 개시일 사이에 이루어진 주식이전에 관련된 주식이전완전자법인인 연결자법인(발행주식의 전부가 주식이전에 의해 설립된 주식이전완전모법인인 연결모법인에 의해 주식이전일부터 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보유되어 있는 것에 한하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에 다음의 가 및 나의 결손금액 또는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 또는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
   가.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자법인의 각 사업연도(주식이전이 적격주식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중 주식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의 사업연도를 제외)에 발생한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액 또는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해손실결손금액
   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자법인(개시일에 주식이전(적격주식이전에 한함)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하여 제4조의5 제2항(연결납세의 승인취소) 규정에 의해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의 승인이 취소된 연결모법인인 것에 한함)의 승인에 관련된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자법인의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
3. 연결모법인이 그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완전지배관계가 없는 법인과의 사이에서 연결모법인을 제5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합병법인 등으로 하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 등(이하 본 호에서 「적격합병 등」을 말함)을 한 경우 다음 가 또는 나의 결손금액 또는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
   가. 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제5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피합병법인 등(나에서 규정하는 피합병법인 등을 제외. 가에서 같음)의 적격합병일 등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동항에서 규정하는 미처리결손금액(피합병법인 등이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자본(연결모법인의 적격피합병일 등이 속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의 5년 전의 날 이후에 발생한 것에 한함)가 있는 경우에 그 적격합병 등이 동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적격합병 등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동항 규정에 의해 미처리결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금액을 제외) 또는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처리재해손실결손금액
   나. 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제5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피합병법인

등(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피합병법인에 있어서는 적격합병에 기인하여 제4조의5 제2항 규정에 의해 제4조의2의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연결자법인에 있어서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에 적격합병을 한 것에 한함)으로,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제5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에 관련된 분할법인에 있어서는 연결법인으로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에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을 한 것에 한함. 이하 본 호에서 같음)의 적격합병일 등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 등의 연결결손개별귀속액(피합병법인 등이 합병법인 등이 되는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가에서 규정하는 특정자본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적격합병 등이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적격합병 등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그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 중 동항 규정에 의해 미처리결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

③ 연결법인이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의 익일부터 그 종료일 사이에 연결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연결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한 경우 또는 연결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제4조의3 제6항(연결납세의 승인신청)에서 규정하는 연결신청특례연도 개시일의 익일부터 동항 규정의 적용을 받아 한 동조 제1항의 신청에 대해 제4조의2의 승인을 받는 날의 전일까지의 사이에 하는 것(전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결자법인이 하는 것을 제외) 및 연결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분할승계법인이 되는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을 제외)을 한 경우에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형분할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제80조(결손금의 회복에 의한 환급) 규정에 의해 환급 받아야 하는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것을 제외)이 있는 때에는 그 결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결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형분할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④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그 연결법인의 사업연도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에 관련된 연결결손금액 중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연결자법인이 그 연결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한 경우의 합병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 합병일이 속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자법인의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합병이 연결자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연결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인 경우에는 그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 중 제57조 제6항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액으로 간주되어 연결자법인의 합병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2. 연결법인이 그 연결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에 한 것 및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을 제외)을 한 경우의 분할형분할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 분할형분할일이 속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법인의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 중 제57조 제6항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액으로 간주되어 그 연결법인의 분할형분할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3. 연결법인이 그 연결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을 한 경우의 그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일이 속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법인의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이 연결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연결법인을 분할승계법인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 중 제57조 제6항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액으로 간주되어 연결법인의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4. 연결모법인이 그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과의 사이에 연결모법인을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또는 피현물출자법인으로 하는 제5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 등(동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 이하 본 호에서 「적격합병 등」이라 함)을 한 경우(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이 되는 법인과의 사이에 적격합병일 등이 속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의 5년 전의 날 이후에 발생한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자본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함)의 연결모법인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모법인의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을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액으로 간주한 경우에 동항 규정에 의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5. 연결자법인이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 및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 후의 해산을 제외)을 한 경우의 해산일의 익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 해산일의 익일이 속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자법인의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
6.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연결모법인에 의한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없어진 경우(전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그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 그 날이 속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자법인의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

⑤ 제2항 및 전항에서 규정하는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이라 함은

연결결손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⑥ 제1항 규정은 동항 연결모법인이 연결결손금액이 발생한 연결사업연도에 대하여 연결확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에 연속하여 연결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결손금액 또는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으로 동항 규정에 의해 연결결손금액으로 간주된 것에 대해서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동항 제3호에서 정하는 결손금액 또는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으로 동항 규정에 의해 연결결손금액으로 간주된 것에 있어서는 동 호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일 등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확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에 연속하여 연결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⑦ 제1항 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의 계산 기타 동항 내지 제4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9의2 (특정주주 등에 의해 지배되는 결손등연결법인의 연결결손금 이월의 불적용) ① 연결법인으로 다른 자와의 사이에 그에 의한 특정지배관계(제57조의2 제1항(특정주주 등에 의해 지배되는 결손등법인의 결손금 이월의 불적용)에서 규정하는 특정지배관계를 말함)에 있게 된 자 및 그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연결자법인 중 특정지배관계에 있게 된 날(이하 본 항에서 「지배일」이라 함)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이하 본 항에서 「특정지배연결사업연도」라 함)에 그 특정지배연결사업연도 전의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액(전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연결결손금액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하며, 동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한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또는 평가차손자산(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지배일에 보유하는 자산 중 그 지배일의 가액이 장부가액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을 보유하는 자(연결모법인 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자법인 중,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에 제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손등법인(제3항 및 제4항에서 「결손등법인」이라 함) 기타 이에 준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이었던 것(이하 본 항에서 「연결전결손등법인」이라 함)을 포함. 이하 본 조에서 「결손등연결법인」이라 함)가 그 지배일(연결전결손등법인에 있어서는 지배일에 준하는 날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날. 제2항 제1호에서 「특정지배일」이라 함) 이후 5년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 제57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날(제2항에서 「해당일」이라 함)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이하 본 조에서 「적용연결사업연도」라 함)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에는 그 적용연결사업연도 전의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액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조 제1항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결손등연결법인인 연결모법인이 해당일(제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일을 포함) 이후에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미처리결손금액 또는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전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동일0에 대해서는 각각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연결모법인이 그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에서 규정하는 완전지배관계가 없는 법인(이하 본 호 및 제4항에서 「비지배법인」이라 함)과의 사이에 연결모법인을 전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합병법인 등(제4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함)으로 하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 등(이하 본 호 및 제4항에서 「적격합병 등」이라 함)을 하는 경우에 그 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제4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함)인 비지배법인의 적겨합병일 등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도는 연결사업연도 이전의 각 사업연도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동조 제2항 제3호 가에서 규정하는 미처리결손금액 또는 동호 나의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적격합병 등이 연결모법인의 적용사업연도(제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용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 또는 적용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3년을 경과하는 날(경과하는 날이 특정지배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날 이후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그 미처리결손금액 또는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 중 이것들이 발생한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이 적용사업연도 도는 적용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인 것에 한함)

제81조의9 제2항

2. 연결모법인이 그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없는 법인과의 사이에서 그 연결모법인을 합병법인, 분할승계법인 또는 피현물출자법인으로 하는 전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 그 연결모법인의 적용연결사업연도 전의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 제81조의9 제2항

③ 제81조의9 제2항의 연결모법인 또는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결자법인이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에 결손등법인 또는 결손등연결법인인 경우에는 그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의 적용사업연도 또는 적용연결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동항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액 또는 동항 제2호 가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액 혹은 동항 나의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에 대해서 동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81조의9 제2항의 연결모법인이 결손등법인 또는 결손등연결법인인 비지배법인과의 사이에 그 연결모법인을 합병법인 등으로 하는 적격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 등에 관련된 피합병법인 등인 비지배법인의 적용사업연도 또는 적용연결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 또는 그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동항 제3호 가에서 규정하는 미처리결손금액 또는 동호 나의 연결결손금개별귀속액에 대해서는 동항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본조 각 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7목 연결법인간 거래의 손익

제81조의10 (연결법인간 거래의 손익조정) ① 연결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에 보유하는 양도손익조정자산(제61조의13 제1항(분할등전사업연도 등에 연결법인간 거래의 손익조정)에서 규정하는 양도손익조정자산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을 다른 연결법인(연결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것에 한함. 제2항에서 같음)에 양도한 경우(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합병 또는 적격사후설립에 의해 합병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에 양도손익조정자산을 이전한 경우 및 주식?출자를 발행한 법인에 양도한 경우를 제외)에는 그 양도손익조정자산에 관련된 양도이익액(양도에 관련된 대가가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부분의 금액을 말함.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음) 또는 양도손실액(양도에 관련된 원가가 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부분의 금액을 말함.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음)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②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한 양도손익조정자산(그 양도이익액 또는 양도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전항 또는 제61조의13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그 금액 중에 본 항 또는 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해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 상각, 평가전환, 대손, 제외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손익조정자산에 관련된 양도이익액 또는 양도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③ 연결법인이 양도손익조정자산을 양도하여 제1항 또는 제61조13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연결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연결자법인에 한함)과의 사이에 그 법인을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 또는 제61조의11 제1항 제5호(연결납세 개시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에서 규정하는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을 한 경우에는 그 연결법인이 양도손익조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연결법인이 양도손익조정자산에 관련된 양도이익액 도는 양도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제1항 또는 제61조의13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그 금액 중에 제2항 또는 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연결법인이 제4조의5 제1항(연결납세의 승인취소) 규정에 의해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본 조 각 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4관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의 세목

제81조의11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의 세목) 제2관(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0에서 정하는 것 외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율

제81조의12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 ① 보통법인인 연결모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연결모법인 중,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엔 이하인 자 또는 자본?출자를 하지 않은 자(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상호회사를 제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중 연 800만엔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2의 세율에 따른다.

③ 협동조합 등인 연결모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에 100분의 23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5조의2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가 1년에 못 미치지는 연결모법인에 대한 제2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연 800만엔」은 「800만엔을 12로 나누어, 여기에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전항의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1월에 못 미치는 단수가 발생한 대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⑥ 제4조의7(수탁법인 등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에서 규정하는 수탁법인에 대해서는 제2항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13 (연결특정동족회사의 특별세율) ① 연결법인(연결모법인이 제67조 제1항(특정동족회사의 특별세율)에서 규정하는 특정동족회사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음)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유보금액이 연결유보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81조의12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해 계산한 법인세액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연결유보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금액에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연 3천만엔 이하의 금액 100분10
2. 연 3천만엔 이상 연 1억엔 이하의 금액 100분의 15
3. 연 1억엔 이상의 금액 100분의 20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연결유보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제4항에서 「연결소득 등의 금액」이라 함) 중 유보한 금액에서 그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에 대해 제81조의12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해 계산한 법인세액(제81조의14 내지 제81조의17(세액공제) 규정에 의해 공제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및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세개별귀속액(제81조의18 제1항(연결법인세의 개별귀속액 계산) 규정에 의해 동항에서 규정하는 부담액으로써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 도는 감소액으로써 수입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말함)에 조정을 가한 금액에 관련된 都道府?민세 및 시군구민세(도민세를 포함)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개별익금액 또는 개별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이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제62조 제2항(합병 및 분할에 다른 자산 등의 시가양도)에서 규정하는 양도이익액 또는 양도손실액이 있는 때에는 그 양도이익액 또는 양도손실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81조의4(연결사업연도의 수취배당 등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의해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연결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것에 한함)으로부터 받은 제23조 제1항(수취배당 등의 익금불산입)에서 규정하는 배당액 등에 관련된 것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
3. 개별익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제26조 제1항(환급금 등의 익금불산입)에서 규정하는 환급을 받거나 충당되는 금액(동항 제1호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을 제외) 및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을 받는 금액 및 제81조의4의2(연결사업연도의 외국세액 환급금의 익금불산입)에서 규정하는 감액된 부분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4. 제81조의9(연결결손금의 이월) 규정에 의해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및 개별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제59조 제1항 및 제2항(회사갱생 등에 의한 채무면제 등이 있었던 경우 결손금의 손금산입)에서 규정하는 합계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③ 전항에서 규정하는 유보한 금액 계산에 대해서는 연결모법인 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자법인에 의한 잉여금 배당 또는 이익배당(지불에 관한 결의일이 지불에 관련된 기준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기준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관련된 결산의 확정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것(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에 한함)액(잉여금배당 또는 이익배당이 금전 이외의 자산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 시의 장부가액(자산이 기준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준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지불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결유보공제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말한다.

1.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연 2천만엔
3. 연결사업연도 종료 시의 연결이익적립금액(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등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을 제외)이 그 때의 연결모법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못 미치지는 경우에 그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⑤ 제15조의2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가 1년에 못 미치는 연결법인에 대한 제1항 및 전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1항 중 「연 3천만엔」은 「3천만엔을 12로 나누고, 여기에 제5항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 1억엔 이하」는 「1억엔을 12로 나누고, 여기에 그 연결모법인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로, 「연 1억엔을」은「1억엔을 12로 나누고, 여기에 제5항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전항 중 「연 2천만엔」은 「2천만엔을 12로 나누고, 여기에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본다.

⑥ 제67조 제7항 및 제8항 규정은 제1항 및 전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⑦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보한 금액에서 뺀 금액 기타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관 세액공제

제81조의14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세액 공제) ① 연결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에 소득세법 제174조 각 호(내국법인에 관련된 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규정하는 이자 등, 배당 등, 급부보전금, 이자, 이익, 차익, 이익분배 또는 상금지불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 동법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소득세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연결확정신고서에 동항 규정에 따라 공제 받아야 하는 금액 및 그 계산에 관한 명세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규정에 의해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써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항의 기재가 없는 연결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가 없었던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해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1조의15 (연결사업연도의 외국세액 공제) ① 연결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에 외국법인세(제69조 제1항(외국세액의 공제)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동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에는 그 외국법인세액(소득에 대한 부담이 높은 부분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 이하 본 조에서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이라 함) 중,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해 제81조의12 제1항 내지 제3항(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서 그 원천이 국외에 있는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연결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되는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이 그 연결사업연도의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과 지방세개별공제한도액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전 3년 내 연결사업연도(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3년 내에 개시한 각 연결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의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 중 연결사업연도에 이월되는 부분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본 항 및 제6항에서 「개별이월공제한도액」이라 함)이 있는 때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중 개별이월공제한도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연결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되는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이 그 연결사업연도의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그 이전 3년 내 연결사업연도에 납부한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 중 그 연결사업연도에 이월되는 부분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본 항 및 제16항에서 「개별이월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이 있는 때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개별이월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 중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에서 연결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되는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 잔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연결법인이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3년 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연결사업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사업연도의 공제한도액(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한도액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동일)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공제한도액은 그 사업연도의 기간에 대응하는 이전 3년 내 연결사업연도의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으로 간주하고, 연결법인이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연결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경우에 그 해당하지 않는 사업연도에 납부한 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이 있는 때에는 전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은 그 사업연도의 기간에 대응하는 이전 3년 내 연결사업연도에 납부한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한다.

⑤ 연결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 및 제10항에서 「적격조직재편성」이라 함)에 의해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제10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그 연결법인의 적격조직재편성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에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적격조직재편성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결법인의 이전 3년 내 연결사업연도의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 및 연결법인이 이전 3년 내 연결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된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한다.

1. 적격합병 적격합병에 관련된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3년 내 사업연도(적격합병일 전 3년 이내에 개시한 각 연결사업연도 또는 각 사업연도를 말함)의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 공제한도액,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 및 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
2. 적격분할형분할 적격분할형분할에 관련된 분할법인의 분할 전 3년 내 사업연도(적격분할형분할일 전 3년 내에 개시한 각 연결사업연도 또는 각 사업연도를 말함. 제7항에서 같음)의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 공제한도액,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 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 중, 그 적격분할형분할에 의해 연결법인이 이전 받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호에서 「적격분사형분할 등」이라 함)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관련된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의 분할 등 전 3년 내 사업연도(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년 내에 개시한 각 연결사업연도 혹은 각 사업연도 또는 적격분사형분할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 3년 내에 개시한 각 사업연도 혹은 각 연결사업연도를 말함. 7항에서 동일)의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 공제한도액 및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 및 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 중 그 적격분사형분할 등에 의해 연결법인이 이전 받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 전항의 규정은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적격사후설립(이하 본 항 및 제7항에서 「적격분할 등」이라 함)에 의해 적격분할 등에 관련된 분할법인, 현물출자법인 또는 사후설립법인(제7항에서 「분할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사업을 이전 받은 연결법인에 있어서는 그 연결법인(연결법인이 연결자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법인과 관련된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일 등 이후 3월 이내에 그 연결법인의 이전 3년 내 연결사업연도의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 또는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⑦ 적격분할 등에 관련된 분할승계법인, 피현물출자법인 또는 피사후설립법인(이하 본 항에서 「분할승계법인 등」이라 함)이 제5항 또는 제69조 제5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등에 관련된 분할법인 등의 적격분할일 등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분할법인 등의 분할 전 3년 내 사업연도 또는 분할 등 전 3년 내 사업연도의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 및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 중, 제5항 규정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등의 전 3년 내 연결사업연도의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으로 간주되는 금액 및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해 이전 3년 내 사업연도(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전 3년 내 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의 공제한도액으로 간주되는 금액 및 제5항 규정에 의해 분할승계법인 등이 그 이전 3년 내 연결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된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 및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그 이전 3년 내 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된 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연결법인이 외국자회사(각 연결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를 합계한 수 또는 금액이 그 발행주식 또는 출자(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출자를 제외)의 총수 또능 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수 또는 금액이 되어 있을 것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함)로부터 받은 잉여금의 배당(주식 또는 출자에 관련된 것에 한하며, 자본잉여금액의 감소에 따른 것 및 분할형분할에 의한 것을 제외) 혹은 이익배당(분할형분할에 의한 것을 제외) 또는 잉여금분배(출자에 관련된 것에 한함)액(이하 본 조에서 「배당액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그 배당액 등에 대응하는 것(배당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과의 합계액이 그 배당액 등에 대하여 고율의 부담이 되는 부분을 제외)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연결법인이 납부하는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을 적용한다.

⑨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연결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에 제69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 등이 있는

경우에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에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 배당액 등은 각 연결사업연도에 전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 등으로, 배당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을 동항에서 규정하는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으로, 동항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각각 간주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⑩ 연결법인이 납부하게 된 외국법인세액(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전항 규정에 의해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 중 제8항 규정에 의해 연결법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의 금액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결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에 외국법인세액이 감액되는 경우(연결법인이 적격조직재편성에 의해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 등이 납부하게 된 외국법인세액 중 연결법인이 이전 받은 사업에 관련된 소득에 기인하여 납부하게 된 외국법인세액이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및 연결법인이 납부하게 된 외국법인세액(제69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동조 제9항 규정에 의해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 중 동조 제8항 규정에 의 해 연결법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의 금액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에 외국법인세액이 감액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⑪ 연결법인이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각 연결법인이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를 합한 수 또는 금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출자를 제외)의 총수 또는 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수 또는 금액이 될 것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함)로부터 받은 잉여금의 배당(주식 또는 출자에 관련된 것에 한하며, 자본잉여금액의 감소에 따른 것 및 분할형분할에 의한 것을 제외) 혹은 이익배당(분할형분할에 의한 것을 제외) 또는 잉여금의 분배(출자에 관련된 것에 한함)액(제69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 이하 본 항에서 「외국손회사로부터의 배당액 등」이라 함)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그 외국손회사로부터의 배당액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하여 제8항 규정을

적용한다.

⑫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연결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에 제69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동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손회사로부터의 배당액 등이 있는 것에 한함)로부터 받은 배당액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에 있어서 외구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 등은 각 연결사업연도에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 등으로, 외국손회사로부터의 배당액 등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손회사로부터의 배당액 등으로,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각각 간주하여 동항 규정을 적용한다.

⑬ 제11항(전항 규정에 의해 간주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제81조의5(연결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자회사의 외국세액의 익금산입)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 중 「로 간주되는 금액」은 「로 간주되는 금액 및 동조 제11항(동조 제12항 규정에 의해 간주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 규정에 의해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으로 한다.

⑭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제12항 규정에 의해 외국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 중 제11항 규정에 의해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부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동항 규정의 적용에 의해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결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 기간에 외국손회사에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이 감액된 경우 및 제69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동조 제12항 규정에 의해 외국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 중 동조 제11항 규정에 의해 동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는 부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동항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 기간에 외국손회사에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이 감액된 경우에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의 계산 기타 제11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⑮ 제1항 규정은 연결확정신고서에 동항 규정에 따라 공제 받아야 하는 금액 및 그 계산에 관한 명세의 기재가 있거나,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이 부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규정에 따라 공제받아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써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개별이월공제한도액 또는 개별이월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에 관련된 연결사업연도 또는 사업연도 중

가장 오래된 사업연도 또는 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 및 각 연결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된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을 기재한 연결확정신고서 또는 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액 및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된 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을 기재한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확정신고서에 이들 규정에 따라 공제 받아야 하는 금액 기재함과 동시에 그 신고서에 개별이월공제한도액 또는 개별이월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이들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확정신고서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 및 각 연결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된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으로 기재된 금액 또는 각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에 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액 및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게 된 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세무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게 되는 금액 또는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 등(전항에서 규정하는 연결공제한도개별귀속액 혹은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 혹은 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16항 및 제17항의 기재 또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연결확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 또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재 또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6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4항 내지 제17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 내지 제9항, 제12항 내지 제13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6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의한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연결사업연도에 있어서의 공제) ① 연결모법인이 제출한 연결확정신고서에 기재된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이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 연결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초과하는 금액 중에 사실을 가장하여 회계처리한 바에 기초한 것이 있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을 한 때에는 그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써 납부된 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중 경정에 의해 감소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가장하여 회계처리한 금액에 관련된 것은 국세통칙법 제56조 내지 제58조(환급?충당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제15조의2 제1항(연결사업연도의의의)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를 말함. 제2항에서 같음)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시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연결법인이 사실을 가장하여 회계처리한 분할전사업연도(연결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에 하는 것을 제외)을 한 경우 그 분할형분할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0조 제1항(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초한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공제)에서 규정하는 경정을 함에 따라 경정에 관련된 연결사업연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또는 분할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로 인해 감소하는 부분의 연결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 중에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경정에 관련된 연결사업연도 또는 사업연도에 가장하여 회계처리한 금액에 관련된 것이 있는 때에 그 금액은 각 연결사업연도 또는 분할전사업연도에 회계처리한 연결법인이 가장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기초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앞의 두 개 항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은 각 연결사업연도 또는 분할전사업연도에 사실을 가장하여 회계처리한 연결법인이 적격합병(연결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다른 연결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에 한함)에 의해 해산한 후에 그 연결법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동항(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규정하는 경정 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 금액 혹은 분할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이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 중 「경정일」은 「사실을 가장하여 회계처리한 연결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에 관련된 합병법인의 경정일」로 본다.

제81조의17 (연결사업연도에 있어서의 세액공제 순서) 본 관 규정에 따른 법인세액에서의 공제에 대해서는 우선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후에 제81조의14 및 제81조의15(연결사업연도에 있어서의 소득세액 등의 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3관 연결법인세의 개별귀속액 계산

제81조의18 (연결법인세의 개별귀속액 계산) ① 연결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액으로써 지출하거나, 법인세의 감소액으로써 수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별소득금액(연결사업연도의 익금 중 그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것의 합계액(이하 본 항에서 「개별귀속익금액」이라 함)이 연결사업연도의 손금 중 그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것의 합계액(이하 본 항에서 「개별귀속손금액」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부분의 금액을 말함)에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인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개별결손금액(개별귀속손금액이 개별귀속익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부분의 금액을 말하며, 연결사업연도에 연결결손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금액에서 연결결손금액 중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에 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연결법인에 관련된 세액조정금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감산한 금액을 말함)을 가산하거나 감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1조의13 제1항(연결특정동족회사의 특별세율)에서 규정하는 합계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2. 제81조의14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소득세액 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3. 제81조의15 제1항 내지 제3항(연결사업연도의 외국세액 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4. 제81조의31 제1항(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연결결손금의 회복에 의한 환급) 규정에 의해 환급 받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② 전항의 연결법인에 관련된 연결모법인이 제81조의12 제2항(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결모법인인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 금액에 대해 동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의 연결소득금액에 대한 비율(연결소득금액이 없는 연결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연 800만엔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전항에서 규정하는 세율로 하여 동항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 납부 및 환급 등

제1관 연결중간신고

제81조의19 (연결중간신고) ① 연결모법인(보통법인에 한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은 연결사업연도(연결모법인의 연결모법인사업연도(제15조의2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항 및 제2항에서 같음)에 한함)가 6월을 넘는 경우에는 그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무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이 10만엔 이하인 경우 또는 그 금액이 없는 경우는 신고서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연결사업연도의 이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81조의22 제1항 제2호(연결확정신고에 관련된 법인세액)의 금액으로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 확정한 것(제3항에서 「연결확정법인세액」이라 함)을 이전 연결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여기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결사업연도가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최초의 연결모법인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호에서 같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

가. 연결법인(연결모법인 및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 계속하여 그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에 있는 연결자법인에 한함. 이하 본 호에서 같음)의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확정법인세액(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74조 제1항 제2호(확정신고에 관련된 법인세액)의 금액을 말함. 제2항 및 제6항에서 같음)으로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 확정한 것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여기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연결법인의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세개별귀속지불액(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액으로써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써 전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으로 최초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 확정한 연결사업연도의 연결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81조의22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관련된 것을 개시일의 전일이 속하는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여기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의 금액 계산의 기초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경우에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에서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동항의 연결모법인에 의한 연결완전지배관계에 있게 되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게 된 날부터 연결모법인의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때에 그 연결모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신고서에 대해서는 동항 제1호의 금액은 동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사업연도의 이전 연결사업연도 연결가입법인(다른 내국법인으로 연결모법인에 의한 연결완전지배관계에 있게 된 것을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의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가장 새로운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에 관련된 것(다음 호에서 「연결가입법인의 확정법인세액 등」이라 함)을 그 계산의 기초가 된 연결가입법인의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여기에 연결모법인의 이전 연결모법인사업연도의 월수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이전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연결가입일(연결완전지배관계에 있게 된 날(제15조의2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동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개시일)을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월수의 비율에 6을 곱한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연결가입일 전에 개시하거나 연결모법인의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의 1년 전의 날 이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그 월수가 6월에 못 미치는 것을 제외)의 확정법인세액으로 연결모법인의 그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에 확정한 것.

나. 연결가입일 전에 개시하거나 연결모법인의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의 1년 전의 날 이후에 종료한 연결가입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그 월수가 6월에 못 미치는 것을 제외)의 연결가입법인의 연결법인세개별귀속지불액으로 연결모법인의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에 확정한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81조의22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관련된 것

2.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그 날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연결가입법인의 확정법인세액 등을 계산의 기초가 된 연결가입법인의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여기에 그 연결가입일부터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경우에 동항의 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제4조의 제1항(연결납세의 승인취소) 규정에 의해 그 연결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연결자법인에 관련된 제4조의2의 승인이 취소된 때 혹은 제4조의5 제2항 제5호의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개시일의 전일부터 그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연결자법인에 관련된 동항 제4호의 사실이 발생한 때(그 사실이 합병에 의한 해산인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내에 연결자법인이 합병을 한 때)는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동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결확정법인세액에서 연결자법인에 관련된 연결법인세개별귀속지불액을 감산하거나 연결확정법인세액에 그 연결자법인(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연결법인과의 사이에 자기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한 것을 제외)에 관련된 연결법인세개별귀속수취액(각 연결사업연도의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액으로써 수령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써 전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함)을 가산한 금액을 동호에서 규정하는 이전 연결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여기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71조 제2항(중간신고)의 규정은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연결사업연도의 이전 연결사업연도 혹은 연겨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연결모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적격합병(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에 있는 연결자법인 이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것에 한함)을 한 경우의 그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이들 기간 내에 다른 연결법인(그 연결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법인에

한하며, 연결모법인을 제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한 경우(합병을 한 날로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 그 연결법인(연결모법인을 제외)과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계속하고 있던 경우에 한함)의 그 연결모법인에 대해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2항 중 「전항 제2호」는「제81조의19 제1항 제1호(연결중간신고)」로,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이전 연결사업연도」로, 「사업연도 개시일」은 「연결모법인사업연도(제81조의1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개시일」로, 「각 사업연도(그 월수」는「각 사업연도(이전 연결사업연도에 한 연결법인간합병(연결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연결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에 있는 연결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관련된 피합병법인의 연결법인간 합병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외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그 월수」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로, 「이전 사업연도의 월수 중에 차지하는 이전 사업연도」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의 이전 연결모법인사업연도의 월수 중에 차지하는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이전 연결모법인사업연도」로, 「적격합병일」은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연결자법인 이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것에 한함. 다음 호에서 같음) 또는 연결법인간 합병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는 「적격합병 또는 연결법인간 합병일부터」로 본다.

⑤ 제71조 제3항 규정은 적격합병에 의해 설립된 연결모법인에 대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3항 중 「동항 제1호」는 「제81조의19 제1항 제1호」로 본다.

⑥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동항의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연결자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을 한 때(연결자법인이 분할형분할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분할형분할을 한 날로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 연결자법인과 연결모법인과의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계속되고 있던 때에 한함)에는 그 연결모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신고서에 대해서는 동항 제1호 금액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기간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연결사업연도의 이전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익일부터 이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에서 「전기실적기준액」이라 함)에 분할법인의 분할형분할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제2호에서 「분할전사업연도」라고 함)의 확정법인세액으로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에 확정한 것을 이전 연결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여기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익일부터 그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전기실적기준액에서 가 및 나의 것을 분할전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이 속하는 분할법인의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월수로 나구고, 여기에 분할전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산한 금액

가. 분할전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확정법인세액으로 그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에 확정한 것

나. 연결사업연도의 이전 연결사업연도의 분할법인에 관련된 연결법인세개별귀속지불액으로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 확정한 이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81조의22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관련된 것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1월에 못 미치는 단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⑧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동항 제1호 금액에 대해 제2항 내지 제6항 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 그 금액의 계산 기타 제2항 내지 제6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20 (가결산을 한 경우의 연결중간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연결중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의 기간을 하나의 연결사업연도로 간주하여 그 기간에 관련된 과세표준인 연결소득금액 또는 연결결손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연결모법인은 제출하는 연결중간신고서에 제81조의19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 연결소득금액 또는 연결결손금액
2. 그 기간을 하나의 연결사업연도로 간주하여 전 호의 연결소득금액에 대해 전절(세액의 계산) (제81조의13(연결특정동족회사의 특별세율) 및 제81조의16(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초한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연결사업소득에 있어서의 공제)을 제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 계산되는 법인세액
3. 제1호 및 제2호 금액계산의 기초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결중간신고서에는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의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말일의 대차대조표, 그 기간의 손익계산서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관련된 과세표준인 연결소득 금액 또는 연결결손금액 및 동항 제2호의 법인세액 계산에 대해서는 제2조 제25호(정의) 중 「확정한 결산」은 「결산」으로, 제1장의2 제1절 제3관(과세표준의 계산) (제81조의9 제6항(연결결손금 이월의 요건)을 제외)의 규정 중 「연결확정신고서」는 「연결중간신고서」로, 「확정한 결산」은 「결산」으로, 제81조의14 제2항 및 제3항(연결사업연도의 소득세액 공제) 및 제81조의15 제15항(연결사업연도의 외국세액 공제) 중 「연결확정신고서」는 「연결중간신고서」로, 동조 제16항 중

「연결확정신고서에 이들」은 「연결중간신고서에 이들」로, 동조 제17항 중 「연결확정신고서」는 「연결중간신고서, 연결확정신고서」로 본다.

제81조의21 (연결중간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특례) 연결중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연결모법인이 그 연결중간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그 연결모법인에 대해서는 그 제출기한에 세무서장에 대하여 제81조의19 제1항 각호(전기실적에 따른 연결중간신고서의 기재사항)의 사항을 기재한 연결중간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관 연결확정신고

제81조의22 (연결확정신고)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세무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인 연결소득금액 또는 연결결손금액
2. 제1호의 연결소득금액에 대해 전절(세액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3. 제81조의14 및 제81조의15(연결사업연도의 소득세액 등의 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제2호의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서 미처 공제되지 않았던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처 공제되지 않은 금액
4.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에 대해 연결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법인인 경우에는 제2홍의 법인세액에서 신고서에 관련된 중간납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간납부액으로 그 금액 계산에 있어서 미처 공제되지 않았던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처 공제되지 않은 금액
6. 제1항 내지 제5항 금액 계산의 기초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전항 규정에 따른 신고서에는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의 연결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81조의18 제1항(연결법인세 개별귀속액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법인세의 부담액으로써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 및 법인세의 감소액으로써 수입하여야 하는 금액에 관한 서류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3 (연결확정신고서 제출기한의 연장) ① 제81조의22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연결모법인이 재해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제81조의2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유를 제외)로 연결법인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각 연결사업연도의연결소득 금액 혹은 연결결손금액 및 법인세액의 계산을 완료할 수 없어 그 신고서를 제81조의2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통칙법 제11조(재해 등에 의한 기한연장) 규정에 의해 그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은 그 연결모법인의 신청에 의거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75조 제2항 내지 제7항 (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규정은 전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1조의24 (연결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특례) ① 제81조의22 제1항(연결확정신고)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연결모법인이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 기타 이와 유사한 이유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연결자법인이 다수에 이르는 것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각 연결사업연도이 연결소득금액 혹은 연결결손금액 및 법인세액의 계산을 완료할 수 없게 되어 그 연결사업사업연도 이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신청서를 각각 동항에서 규정하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은 그 연결모법인의 신청에 의거하여 각 연결사업연도의 신고서 제출기한을 2월간(특별한 사정으로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4월 이내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또는 연결결손금액 및 법인세액의 계산을 종료할 수 없는 것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월수의 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75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특례)의 규정은 전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2항 중 「종료일까지」는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본다.

③ 제75조 제3항 내지 제5항(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규정은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75조의2 제2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대하여, 제75조 제7항 규정은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결모법인의 동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서에 관련된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5항 중 「신청에 관련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일을 제1항의 기일로 하여」는 「2월간(제81조의24 제1항(연결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특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련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월수의 기간)」으로, 동조 제7항 중 「동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서에 관련된 사업연도의 소득」은 「적용에 관련된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으로, 「사업연도」는 「각 연결사업연도」로, 「동항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일」은 「제81조의24 제1항 규정에 의해 연장된 제출기한」으로 본다.

④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연결모법인에 대해서는 연결법인에 대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2월을 경과한 날 전에 재해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연결사업연도에 한하여 동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조 및 국세통칙법 제11조(재해 등에 의한 기한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그 연결사업연도(전항 규정의 적용에 관련된 연결사업연도를 제외)에 대해서 연결법인에 발생한 재해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 연결법인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혹은 연결결손금액 및 법인세액 계산이 완료될 수 없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서를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통칙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그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은 그 연결모법인의 신청에 의거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75조 제2항 내지 제7항 규정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2항 중 「신고서에 관련된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45일 이내」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날의 15일 전일까지」로, 동조 제5항 중 「신고서에 관련된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2월 이내」는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로, 동조 제7항 중 「내국법인은 동항」은 「연결모법인은 제81조의24 제3항(연결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특례)에서 준용하는 본 항 규정에 의한 이자 외에 동조 제1항」으로, 「사업연도의 소득」은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 이내 2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동항」은 「동항 규정에 의해 연장된 신고서 제출기한의 익일부터 동조 제5항」으로 본다.

제3관 개별귀속액 등의 신고

제81조의25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액 등의 신고) ① 연결자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에 관련된 제81조의22 제1항(연결확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연결사업연도에 관련된 제81조의18 제1항(연결법인세의 개별귀속액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법인세의 부담액으로써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법인세의 감소액으로써 수입하여야 하는 금액, 그 계산의 기초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제2항에서 「개별귀속액 등」이라 함)을 기재한 사류에 연결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이를 그 연결자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결자법인은 전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기재한 개별귀속액 등에 이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신속하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하여 그 이동 후의 개별귀속액 등 기타 참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관 납부

제81조의26 (연결중간신고에 따른 납부) 연결중간신고서를 제출한 연결모법인은 신고서에 기재한 제81조의19 제1항 제1호(전기실적에 따른 연결중간신고서의 기재사항)의 금액(제81조의20 제1항 각 호(가결산을 한 경우의 연결중간신고서 기재사항)의 사항을 기재한 연결중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금액)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7 (연결확정신고에 따른 납부) 제81조의22 제1항(연결확정신고)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연결모법인은 신고서에 기재한 동항 제2호의 금액(동항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8 (연결자법인의 연대납부 책임) ① 연결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연결자법인과 연결모법인 사이에 연결완전지배관계가 있는 기간 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 대하여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를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 국세통칙법 제43조 제1항(국세징수의 소관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국세징수」는 「법인세법 제2조 제20호의7의3(정의)에서 규정하는 연결자법인의 동법 제81조의28조 제1항(연결자법인의 연대납부책임)에서 규정하는 연대납부 책임에 관련된 법인세 징수」로, 「국세의 납세지」는 「법인세의 납세지 또는 연결자법인의 본점 혹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본다.

제5관 환급

제81조의29 (소득세액 등의 환급) ① 연결확정신고서게 제출된 경우에 그 신고서에 제81조의22 제1항 제3호(소득세액 등의 공제부족액)의 금액에 대한 기재가 있을 때에 세무서장은 신고서를 제출한 연결모법인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한다.

② 제78조 제2항 내지 제4항(소득세액 등의 환급) 규정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3항 중 「확정신고서에 관련된 사업연도의 소득」은 「연결확정신고서에 관련된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으로 본다.

제81조의30 (연결중간납부액의 환급) ① 연결중간신고서를 제출한 연결모법인이 연결중간신고서에 관련된 연결사업연도의 연결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연결확정신고서에 제81조의22 제1항 제5호(연결중간납부액의 공제부족액) 금액에 대한 기재가 있는 때에 세무서장은 그 연결모법인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중간납부액을 환급한다.

② 세무서장은 전항 규정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동항의 연결중간신고서에 관련된 중간납부액에 대하여 납부된 지연세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 중 동항 규정에 의해 환급되는 중간납부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아울러 환급한다.

③ 제79조 제3항 내지 제6항(중간납부액의 환급)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4항 중 「사업연도의 소득」은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으로 본다.

제81조의31 (연결결손금의 회복에 따른 환급) ① 연결모법인이 연결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그 연결모법인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하여 그 연결결손금액에 관련된 연결사업연도(이하 본 항에서 「결손연결사업연도」라고 함) 개시일(연결모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을 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제15조의2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개시한 어떤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부대세액을 제외하고, 제81조의14 내지 제81조의17(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본 항 및 제2항에서 같음)에 어떤 연결사업연도(이하 본 항 및 제2항에서 「환급소득연결사업연도」라고 함)의 연결소득 금액 중에서 결손연결사업연도의 연결결손금액(본 조 규정에 의해 다른 환급소득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해 환급 받는 금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것을 제외. 제3항에서 같음)에 상당하는 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미 환급소득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해 본 조 규정이 적용된 때에 그 금액에서 환급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법인세액으로 간주하거나, 환급소득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적용에 관련된 연결결손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환급소득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 금액으로 간주하여 동항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은 연결모법인에 대해 해산(적격합병에 의한 해산 및 제57조 제2항(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월)에서 규정하는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 후의 해산을 제외), 회사갱생법 또는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갱생절차의 개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실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전 1년 이내에 종료한 어느 연결사업연도 또는 그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액(제81조의9 제1항(연결결손금의 이월) 규정에 의해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해 없는 것이 된 것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이 있는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 중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는 「사실이 발생한 날 이후 1년 이내(그 1년 1내의 날이 제4조의5 제1항 혹은 제2항(연결납세의 승인취소) 규정에 의해 연결모법인의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4조의5 제3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최종 연결사업연도에 관련된 제81조의22 제1항(연결확정신고)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 후가 되는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제출기한까지)에」로, 「청구할 수 있다」는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환급소득연결사업연도부터 결손연결사업연도까지

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하여 연속하여 연결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본다.

④ 제80조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결손금의 회복에 따른 환급) 규정은 연결모법인이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전항 규정에서 제1항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3항 중 「환급소득사업연도부터 결손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는 「제81조의21 제1항(연결결손금의 회복에 따른 환급)에서 규정하는 환급소득연결사업연도부터 결손연결사업연도(동항에서 규정하는 결손연결사업연도를 말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의 이전 연결사업연도까지의 각 연결사업연도」로, 「청색신고서인 확정신고서」는 「연결확정신고서」로, 「, 결손사업연도」는 「, 결손연결사업연도」로 본다.

제6관 경정청구에 대한 특례

제82조 (이전 연결사업연도 법인세액 등의 경정 등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특례) 연결법인이 연결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81조의2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연결확정신고서의 기재사항)의 금액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7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확정신고서의 기재사항)의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경정 또는 결정을 받아 그 수정신고서의 제출, 경정 또는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결법인에 관련된 연결모법인은 연결법인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경정 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세무서장에 대하여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대해 국세통칙법 제23조 제1항(경정청구)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서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경정 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정신고서, 경정 또는 결정에 관련된 연결사업연도 혹은 사업연도 이후의 연결사업연도의 연결확정신고서에 기재하거나 결정을 받은 연결사업연도에 관련된 제81조의22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금액(그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서의 제출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경정 후의 금액)이 과대하게 되는 경우
2. 수정신고서, 경정 또는 결정에 관련된 연결사업연도 이후 혹은 사업연도 이후의 연결사업연도의 연결확정신고서에 기재하거나 결정을 받은 연결사업연도에 관련된 제81조의22 제1항 제1호의 연결결손금액 또는 동항 제3호 또는 제5호의 금액(이들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서 제출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경정 후의 금액)이 과소하게 되는 경우

제2장 퇴직연금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제83조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내국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으로 한다.

제84조 (퇴직연금 등 적립금의 계산) ① 퇴직연금업무 등(후생연금기금계약에 관련된 신탁, 생명보험, 생명공제, 예적금의 인수 혹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방법에 의한 연금급여 등 적립금((후생연금보험법(昭和29년 법률 제115호) 제130조의2 제2항(연금인 급여 및 일시금인 급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계약)에서 규정하는 연금급여 등 적립금을 말함. 이하 본 항, 제2항 제7호 및 제3항에서 같음)의 운용 및 그 운용에 관련된 연금급여 등 적립금의 관리수탁업무, 확정급여연금자산관리운용계약에 관련된 신탁, 생명보험 혹은 생명공제 업무, 확정급여연금기금자산운용계약에 관련된 신탁, 생명보험, 생명공제, 예적금의 인수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방법에 의한 확정급여연금적립금(확정급여기업연금법(平成13년 법률 제50호) 제59조(적립금의 적립)에서 규정하는 적립금을 말함. 이하 본항, 제2항 제7호 및 제3항에서 같음)의 운용 및 그 운용에 관련된 확정급여연금적립금의 관리수탁업무, 확정갹출연금자산관리계약에 관련된 신탁, 생명보험, 생명공제 혹은 손해보험업무, 확정갹출연금법(平成13년 법률 88호) 제2조 제3항(정의)에서 규정하는 개인형연금 실시업무, 노동자재산형성급여계약에 관련된 신탁, 생명보험, 생명공제 혹은 손해보험업무 또는 노동자재산형성기금급여계약에 관련된 신탁, 생명보험, 생명공제, 손해보험, 예적금의 인수 혹은 유가증권의 구입 및 구입에 관련된 유가증권의 보관 수탁업무를 말함. 이하 본 장에서 같음)을 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은 그 사업연도 개시 때에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을 12로 나누고, 여기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후생연금기금계약, 확정급여연금자산관리운용계약, 확정급여연금기금자산운용계약, 확정갹출연금자산관리계약, 노동자자산형성급여계약 또는 노동자재산형성기금급여계약에 관련된 신탁업무를 하는 내국법인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

가. 각 후생연금기금계약에 대해 계약에 관련된 신탁자산의 가액에서 그 계약에 관련된 후생연금기금 또는 기업연금연합회가 후생연금보험법 제132조 제3항(노령연금 급여기준)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하도록 한 경우에 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계약에 관련된 것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각 확정급여연금자산관리운용계약에 대해 그 계약에 관련된

신탁자산의 가액에서 계약에 관련된 부금 중 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한 부분의 금액으로 그 신탁재산에 관련된 것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 각 확정급여연금기금자산운용계약에 대해 그 계약에 관련된 신탁자산의 가액에서 계약에 관련된 부금 중 기업연금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부담한 부분의 금액으로 그 신탁자산에 관련된 것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라. 각 확정갹출연금자산관리계약에 대해 그 계약에 관련된 신탁재산의 가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마. 각 노동자재산형성급여계약 또는 각 노동자재산형성기금급여계약에 대해 이들 계약에 관련된 신탁재산의 가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후생연금기금계약, 확정급여연금자산관리운용계약, 확정급여연금기금자산운용계약, 확정갹출연금자산관리계약, 노동자재산형성급여계약 또는 노동자재산형성기금급여계약에 관련된 생명보험업무를 하는 내국법인 다음 각 호 급액의 합계액

가. 각 후생연금기금계약에 대해 그 계약에 관련된 보험업법 제116조 제1항(책임준비금)에서 규정하는 책임준비금으로써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하 본 호 및 제4호에서 「책임준비금액」이라 함) 중 보험료 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계약에 관련된 후생연금기금 또는 기업연금연합회가 후생연금보험법 제13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하도록 한 경우에 그 급부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계약에 관련된 것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각 확정급여연금자산관리운용계약 또는 각 확정급여연금기금자산운용계약에 대해 이들 계약에 관련된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 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들 계약에 관련된 부금 중 그 보험금 수취인이 부담한 부분의 금액에서 그 보험료 적립금에 관련된 것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 각 확정갹출연금자산관리계약에 대해 그 계약에 관련된 책임준비금액 중 보험료 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라. 각 노동자재산형성급여계약 또는 각 노동자재산형성기금급여계약에 대해 이들 계약에 관련된 책임준비금액 중 보험료 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3. 후생연금기금계약, 확정급여연금자산관리운용계약, 확정급여연금기금자산운용계약, 확정갹출연금자산관리계약, 노동자재산형성급여계약 또는 노동자재산형성기금급여계약에 관련된 생명공제업무(생명공제 업무에 관련된 공제금의 지불사유 발생을 공제사고로 하는 공제업무를 포함)를 하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昭和22년 법률 제132호) 제10조 제1항 제10호(공제에 관한 시설)의 업무를 하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함) 다음 각 호 급액의 합계액

가. 각 후생연금기금계약에 대해 그 계약에 관련된 농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 13(공제사업에 관련된 책임준비금)에서 규정하는 책임준비금으로써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하 본 호에서 「책임준비금액」이라 함) 중 공제부금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계약에 관련된 후생연금기금 또는 기업연금연합회가 후생연금보험법 제13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수준의 급부를 하도록 한 경우에 그 급부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그 계약에 관련된 것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각 확정급여연금자산관리운용계약 또는 각 확정급여연금기금자산운용계약에 대해 이들 계약에 관련된 책임준비금액 중 공제부금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들 계약에 관련된 부금 중 공제금 수취인이 부담한 부분의 금액으로 공제부금 적립금에 관련된 것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 각 확정갹출연금자산관리계약에 대해 계약에 관련된 책임준비금 중 공제부금 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라. 각 노동자재산형성급여계약 또는 각 노동자재산형성기금급여계약에 대해 이들 계약에 관련된 책임준비금액 중 공제부금 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4. 확정갹출연금자산관리계약, 노동자재산형성급여계약 또는 노동자재산형성기금급여계약에 관련된 손해보험 업무를 하는 내국법인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

가. 각 확정갹출연금자산관리계약에 대해 그 계약에 관련된 책임준비금액 중 지불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각 노동자재산형성급여계약 또는 각 노동자재산형성기금급여계약에 대해 이들 계약에 관련된 책임준비금 중 지불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5. 후생연금기금계약, 확정급여연금기금자산운용계약 또는 노동자재산형성기금급여계약에 관련된 예적금의 인수업무를 하는 내국법인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

가. 각 후생연금기금계약에 대해 그 계약에 관련된 예적금액에서 그 계약에 관련된 후생연금기금 또는 기업연금연합회가 후생연금보험법 제13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수준의 급부를 하도록 한 경우에 그 급부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계약에 관련된 것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각 확정급여연금기금자산운용계약에 대해 그 계액에 관련된 예적금액에서 그 계약에 관련된 부금액 중 기업연금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부담함 부분의 금액으로 그 예적금에 관련된 것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 각 노동자재산형성기금급여계약에 대해 그 계약에 관련된 예적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6. 노동자재산형성기금급여계약에 관련된 유가증권의 구입 및 구입에 관련된 유가증권의 보관 수탁업무를 하는 내국법인 각 노동자재산형성기금급여계약에 대해 그 계약에 관련된 유가증권의 가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7. 후생연금기금계약 또는 확정급여연금기금자산운용계약에 관련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방법으로 연금급여 등 적립금 도는 확정급여연금적립금의 운용 및 그 운용에 관련된 연금급여 등 적립금 또는 확정급여연금적립금의 관리수탁업무를 하는 내국법인 다음 각호 금액의 합계액

가. 각 후생연금기금계약에 대해 그 계약에 관련된 유가증권 기타 자산 가액에서 그 계약에 관련된 후생연금기금 또는 기업연금연합회가 후생연금보험법 제13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하도록 한 경우에 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그 계약에 관련된 것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각 확정급여연금기금자산운용계약에 대해 그 계약에 관련된 유가증권 기타의 자산 가액에서 그 계약에 관련된 부금 중 기업연금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부담한 부분의 금액으로 그 유가증권 기타 자산에 관련된 것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8. 확정갹출연금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개인형연금을 실시하는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연합회 동법 제61조 제1항 제3호(사무의 위탁)에서 규정하는 적립금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생연금기금계약이라 함은 후생연금보험법 제136조의3 제1항(연금급여 등 적립금의 운용) (동법 제164조 제3항(준용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규정에 의해 연금급여 등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체결된 동법 제136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혹은 제5호의 방법에 의해 운용에 관련된 계약 또는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탁계약을 말하며, 본 조 각 항에서 규정하는 확정급여연금자산관리운용계약이라 함은 확정급여기업연금법 제65조 제1항(사업주의 적립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계약) 규정에 의해 체결된 신탁, 생명보험 또는 생명공제 계약을 말하며, 본조 각 항에서 규정하는 확정급여연금기금자산운용계약이라 함은 동법 제66조 제1항(기금의 적립금 운용에 관한 계약) 규정에 의해 체결된 신탁, 생명보험 혹은

생명공제 혹은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탁 또는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예금 혹은 적금의 예입 혹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방법에 의한 확정급여연금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계약을 말하며, 본조 각 항에서 규정하는 확정갹출연금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확정갹출연금법 제8조 제1항(자산관리계약의 체결) 규정에 의해 체결된 신탁, 생명보험, 생명고제 또는 손해보험 계약을 말하며, 본조 각 항에서 규정하는 노동자재산형성급여계약이라 함은 노동자재산형성촉진법(昭和46년 법률 제92호) 제6조의2 제1항(노동자재산형성급여금계약 등)에서 규정하는 신탁, 생명보험, 생명공제 혹은 손해보험 계약(생명공제 계약에 관련된 공제금의 지불사유 발생을 공제사고로 하는 공제계약을 포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증권투자신탁 설정의 위임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을 말하고, 본조 각 항에서 규정하는 노동자재산형성기금급여계약이라 함은 동법 제6조의3 제2항(노동자재산형성기금계약)에서 규정하는 신탁, 생명보험, 생명고제 혹은 손해보험 계약 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증권투자신탁 설정의 위임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신탁계약 또는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예적금의 예입 혹은 유가증권 구입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④ 제1항의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1월에 못 미치는 단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버린다.

제84조의2 (퇴직연금업무 등을 승계한 경우의 특례) ① 퇴직연금업무 등을 하는 내국법인이 분사형분할에 의해 그 퇴직연금업무 등에 관련된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분사형분할 또는 양도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의 도중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내국법인의 분사형분할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은 동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개시 당시의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을 12로 나누고, 여기에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사형분할 또는 양도일의 전일까지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분사형분할 또는 양도에 의해 승계한 후의 퇴직연금업무 등에 관련된 분사형분할 또는 양도 당시에 계산되는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을 12로 나누고, 여기에 분사형분할 또는 양도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전항의 월수는 달력에 따라서 계산하고, 1월에 못 미치는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제85조 (퇴직연금업무 등을 승계 받은 경우의 특례) ① 퇴직연금업무 등을 하는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그 퇴직연금업무 등에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합병, 분할 또는 양도가 합병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 분할에 의해 사업을 승계 받은 내국법인(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제외) 또는 양도 받은 내국법인(이하

본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함)의 사업연도 도중에 이루어지거나, 그 합병법인 등이 퇴직연금업무 등에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그 합병법인 등의 합병, 분할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84조 제1항(퇴직연금 등 적립금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은 동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합병법인 등의 사업연도 개시 당시에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을 12로 나누고, 여기에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합병, 분할 또는 양도에 의해 승계 받은 퇴직연금업무 등에 관련된 합병, 분할 또는 양도 당시에 계산되는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을 12로 나누고, 여기에 합병, 분할 또는 양도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전항의 월수는 달력에 따라서 계산하고, 1월에 못 미치는 단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버린다.

제86조 (퇴직연금업무 등을 폐지한 경우의 특례) 퇴직연금업무 등을 하는 내국법인이 제84조 내지 제8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에 퇴직연금업무 등을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이들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84조 제1항(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의 계산) 중 「사업연도의 월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퇴직연금업무 등을 폐지한 날까지 기간의 월수」로, 제84조의2 제1항 제2호(퇴직연금업무 등을 승계한 경우의 특례) 중 「분사형분할 또는 양도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의 월수」는 「분사형분할 또는 양도일로부터 퇴직연금업무 등을 폐지한 날까지 기간의 월수」로, 제85조 제1항 제1호 중 「사업연도의 월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퇴직연금업무 등을 폐지한 날까지 기간의 월수」로, 동항 제2호 중 「합병, 분할 또는 양도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의 월수」는 「합병, 분할 또는 양도일로부터 퇴직연금업무 등의 폐지일까지 기간의 월수」로 본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7조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 내국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에 100분의 1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88조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한 중간신고) 퇴직연금업무 등f 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업연도가 6월을 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무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하여 계산한 경우에 그 기간에 관련된 과세표준인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
2. 제1호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에 대해 제87조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계산의 기초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89조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한 확정신고) 퇴직연금업무 등을 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2월 이내에 세무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인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
2. 제1호의 퇴직연금 등 적립액에 대해 제87조(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3. 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에 대해 전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법인세액에서 제90조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그 신고서에 관련된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 또는 이들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결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서의 제출 또는 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경정 후의 법인세액으로 한다)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 계산의 기초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90조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한 중간신고에 따른 납부) 제88조(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한 중간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은 신고서에 기재한 동조 제2호의 금액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1조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한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 제89조(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한 확정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은 신고서에 기재한 동조 제2호의 금액(동조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계속 등의 경우에 대한 과세 특례

제1절 해산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관 과세표준 및 그 계산

제92조 (해산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이하 본 장에서 「내국보통법인 등」이라 함)이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 및 신탁특정해산을 제외. 이하 본 장에서 같음)을 한 경우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으로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신탁특정해산이라 함은 법인과세신탁(제2조 제29호의2 나(정의)의 신탁에 한함)에서 제20조 제1항(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비용의 귀속)에서 규정하는 수익자(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자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하며, 청산중의 수익자를 제외)가 존재하게 된 것에 기인하여 제4조의7 제8호(수탁법인 등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 규정에 의해 동조에서 규정하는 수탁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 그 해산을 말한다.

제93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합계 계산) ① 내국보통법인 등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시의 자본금액 등(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해산한 경우(제2항에서 「연결사업연도말 해산의 경우」라 함)에는 연결개별자본금액 등)과 이익적립금액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이익적립금액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해산시의 이익적립금액(연결사업연도말 해산의 경우에는 연결개별이익적립금액으로 하고, 해산에 기인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2. 청산중에 받은 제23조 제1항(수취배당 등의 익금불산입)에서 규정하는 배당액 등(동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
   가.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 주식 등 및 관계법인 주식 등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식 등에 관련된 배당액 등의 합계액에서 청산중에 지불한 부채의 이자(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 이하 본 호에서 같음)액 중 그 주식 등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법인 주식 등에 관련된 배당액 등의 합계액에서 청산중에 지불한 부채의 이자액 중에 관계법인 주식 등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 주식 등에 관련된 배당액 등
3. 제2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환급금액 등의 익금불산입)의 금액으로 청산중에 환급받거나, 미납의 국세 혹은 지방세에 충당되는 것,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청산중에 환급 받은 것 중 동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 및 개별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이 환급된 부분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청산중에 수취한 부대세(이자를 제외. 이하 본 호에서 같음)의 부담액 및 부대세의 부담액 감소액 및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으로 청산중에 환급 받은 것의 합계액

제94조 (법인세액 등의 잔여재산가액 산입) 내국보통법인 등이 청산중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지방세(내국보통법인 등에 부과되는 것에 한함)은 그 내국보통법인 등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가액에 산입한다.

1. 법인세 중 다음 각 호 이외의 것
   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 이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나.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2. 자산재평가법(昭和25년 법률 제110호) 규정에 의한 재평가세
3.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都道府?민세 및 시군구민세(도민세를 포함하며, 제1호 가의 법인세(그 법인세가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제81조의18 제1항(연결법인세의 개별귀속액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부담액으로써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감소액으로써 수입하여야 하는 금액에 조정을 한 금액)에 관련된 것 및 동호 나의 법인세에 관련된 것을 제외)
4.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세(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 이전의 각 사업연도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에 관한 것을 제외)
5. 제3호 및 제4호의 지방세에 관련된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연체세, 과소신고가산금, 불신고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95조 (기부금의 잔여재재산가액 산입) ① 내국보통법인 등이 청산중에 지출한 제37조 제7항(기분금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액은 그 내국보통법인 등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그 기분금액 중 청산업무 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단서 규정은 청산확정신고서에 동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액을 기재하거나, 기부금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단서 규정에 의해 잔여재산의 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써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항의 기재 또는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은 청산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기재 또는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해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96조 (소득세액의 잔여재산가액 산입) 내국보통법인 등이 제100조 제1항(해산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소득세액 공제)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액에 대해 동항 또는 제109조 제1항(청산중의 소득세액 환급) 혹은 제135조 제1항(청산확정신고에 관련 경정에 의한 소득세액

환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내국보통법인 등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가액에 산입한다.

제97조 삭제

제98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 계산의 세목) 이 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내국보통법인 등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하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관 세액의 계산

제99조 (해산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 ① 내국법인인 보통법인이 해산을 한 경우에 있어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에 100분의 27.1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협동조합 등이 해산을 한 경우에 있어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에 100분의 20.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 (청산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의 소득세액의 공제) ① 내국보통법인 등이 청산중에 소득세법 제174조 각 호(내국법인에 관련된 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규정하는 이자 등, 배당 등, 급여보전금, 이자, 이익, 차익, 이익분배 또는 상금을 지불 받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 동법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보통법인 등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청산확정신고서에 동항 규정에 따라 공제를 받아야 하는 금액 및 그 계산에 관한 명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써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항의 기재가 되지 않은 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해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1조 삭제

제3관 신고, 납부 및 환급

제102조 (청산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 ① 내국보통법인 등은 청산중의 각 사업연도(잔여재산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제외)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2월 이내에(그 기간 내에 잔여재산의 최종분배 또는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까지) 세무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의 소득을 해산하지 않은 내국보통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경우에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액
2. 사업연도의 소득을 해산하지 않은 내국보통법인 등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전호의 소득금액에 대해 제1장 제2절(세액의 계산)(제67조(특정동족회사의 특별세액) 및 제70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의한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공제)를 제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 계산되는 법인세액
3. 사업연도 중에 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또는 인도를 하는 경우에 그 분배 또는 인도에 관련된 잔여재산분배 등 예납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103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사업연도 중에 2회 이상 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또는 인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 분배 또는 인도에 관련된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30(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2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제2호의 법인세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5. 제68조 및 제69조(소득세액 등의 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제2호의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서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제3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 중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써 계산한 경우에 제2호의 법인세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6. 본 항 각 호의 금액 계산의 기초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전항 제1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결손금액 또는 동항 제2호의 법인세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제1장 제1절 제3관, 제4관, 제7관 및 제10관(과세표준의 계산) (제42조 내지 제50조(압축기장), 제57조(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월) 및 제58조(청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재해에 의한 결손금 이월)을 제외) 규정 중 「확정신고서」는 「청산사업연도예납신고서」로, 제57조 제1항 중 「확정신고서」는 「청산사업연도예납신고서」로, 동조 제11항 중 「확정신고서」는 「확정신고서 또는 청산사업연도예납신고서」로, 제58조 제1항 중 「확정신고서」는 「청산사업연도예납신고서」로, 동조 제6항 중 「확정신고서」는 「확정신고서 또는 청산사업연도예납신고서」로, 제68조 제3항 및 제4항(소득세액의 공제) 및 제69조 제16항(외국세액의 공제) 중 「확정신고서」는 「청산사업연도예납신고서」로, 동조 제17항 중 「기재한 확정신고서」는 「기재한 확정신고서 혹은 청산사업연도예납신고서」로, 「확정신고서에 이들」은 「확정신고서 혹은 청산사업연도예납신고서에 이들」로, 「확정신고서에」는 「확정신고서 혹은 청산사업연도예납신고서에」로, 동조 제18항 중 「확정신고서」는 「확정신고서, 청산사업연도예납신고서」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서에는 그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3조 (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등에 관한 예납신고) ① 내국보통법인 등은 청산중에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분배 또는 인도를 하고자 하는 잔여재사의 가액이 해산 당시의 자본금액 등(제93조 제1항(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연결사업연도말 해산의 경우(이하 본 항에서 「연결사업연도말 해산의 경우」라고 함)에는 연결개별자본금액 등. 이하 본 항에서 같음) 및 이익적립금액(연결사업연도말 해산의 경우에는 개별이익적립금액으로 하며, 그 해산 당시로부터 분배 또는 인도를 하고자 하는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이익적립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적립금액을 포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의 합계액(이니 잔여재산의 일부 분배 또는 인도를 한 경우에는 분배 또는 인도를 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본 항에서 같음)을 초과하는 때에는 잔여재산의 전부 분배 또는 인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배 또는 인도 때마다 분배 또는 인도일의 전일까지 세무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분배 또는 인도를 하고자 하는 잔여재산의 가액 중 그 해산 시의 자본금액 등 및 이익적립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제93조에서 규정하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으로 간주하거나 제99조 제1항 또는 제2항(해산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구분에 따라 이들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의 법인세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계산의 기초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해산 시 및 분배 또는 인도시의 대차대조표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4조 (청산확정신고) ① 청산중의 내국보통법인 등은 그 잔여재산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날의 익일로부터 1월 이내(그 기간 내에 잔여재산의 최종분배 또는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까지)에 세무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
2. 제1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에 대해 전관(세액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3. 제100조 제1항(해산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소득세액의 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제2호의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 미처 계산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4. 내국보통법인 등이 제102조 제1항(청산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 또는 제10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법인세액에서 그 신고서에 관련된 청산중의 예납액을 공제한 금액

5. 제4호에서 규정하는 청산중의 예납액으로 동호의 금액 계산에 있어서 미처 공제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6. 본 항 각 호의 금액 계산의 기초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해산시 및 잔여재산의 확정시의 대차대조표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5조 (청산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에 따른 납부) 제102조 제1항(청산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보통법인 등은 그 신고서에 기재한 동항 제2호의 금액(동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4호의 금액)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6조 (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등에 관한 예납신고에 따른 납부) 제103조 제1항(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등에 관한 예납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보통법인 등은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신고서에 기재한 동항 제2호의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7조 (청산확정신고에 따른 납부) 제104조 제1항(청산확정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보통법인 등은 신고서에 기재한 동항 제2호의 금액(동항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금액)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8조 (청산중의 예납액) 제102조 제1항(청산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 또는 103조 제1항(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등에 관한 예납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는 제104조 제1항(청산확정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의 예납으로써 납부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19조(계속 등의 경우 법인세액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 (청산중의 소득세액의 환급) ① 청산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신고서에 제104조 제1항 제3호(소득세액의 공제부족액)의 금액이 기재된 때에 세무서장은 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보통법인 등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

② 전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③ 전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항의 환급 절차 기타 동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10조 (청산중의 예납액의 환급) ① 제102조 제1항(청산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 또는 제103조 제1항(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등에 관한 예납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보통법인 등으로부터 신고서에 관련된 청산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청산확정신고서에

제104조 제1항 제5호(청산중의 예납액의 공제부족액)의 금액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때에 세무서장은 그 내국보통법인 등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청산중의 예납액을 환급한다.

② 세무서장은 전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서에 관련된 청상중의 예납액에 대하여 납부된 연체세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 중 청산중의 예납액으로 제105조(청산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에 따른 납부) 또는 제106조(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등에 관한 예납신고에 따른 납부) 규정에 따른 납기한이 그 환급일에 가장 가까운 것부터 순서대로 전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에 이를 때까지 소급하여 구한 경우에 각 청산중의 예납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아울러 환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부가하지 않도록 하고, 제1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을 청산중의 예납액으로 미납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부분의 청산중의 예납액에 대해서는 지연세를 면제하도록 한다.

④ 전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환급 절차, 제2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 충당하는 경우의 방법 기타 동항 또는 제2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4관 청산중에 공익법인 등이 내국보통법인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제111조 공익법인 등이 청산중에 내국보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에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3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2조 삭제

제113조 삭제

제114조 삭제

제115조 삭제

제116조 삭제

제117조 삭제

제2절 계속 등의 경우의 과세특례

제118조 (계속 등의 경우의 청산소득 금액에 대한 특례) 청산중의 내국보통법인 등이 그 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또는 인도를 한 후에 계속 또는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제93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동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배 또는 인도에 대해 제출하는 잔여재산분배 등 예납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103조 제1항 제1호(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등에 관한 예납신고)의 금액(청산중에 2회 이상 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또는 인도를 한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금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9조 (계속 등의 경우 법인세액에 대한 특례) 청산중의 내국보통법인 등이 계속 또는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내국보통법인 등에 대하여 그 해산일의 익일(청산중에 공익법인 등이 내국보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내국보통법인 등에 있어서는 그 날)로부터 계속일의 전일 또는 합병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이하 본 조에서 「청산기간」이라 함)에 관련된 법인세로써 부과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기간에 관련된 각 청산사업연도예납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102조 제1항 제2호(청산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의 금액(동항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기간에 관련된 잔여재산분배 등 예납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103조 제1항 제2호(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등에 관한 예납신고)의 금액(청산기간 중에 2회 이상 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또는 인도를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또는 인도에 관련된 금액의 합계액)

제120조 (계속 등의 경우 소득세액 등의 환급) ① 청산중의 내국보통법인 등이 계속 또는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그 청산중의 각 사업연도의 청산사업연도예납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제102조 제1항 제5호(소득세액 등의 공제부족액)의 금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계속일 또는 합병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청산사업연도예납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환급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청구를 한 내국보통법인 등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한다.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환급청구가 동항에서 규정하는 계속일의 전일 또는 합병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청산사업연도예납신고서의 제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제출 후에 이루어진데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항의 환급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환급청구를 하고자 하는 내국보통법인 등은 환급 받고자 하는 세액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환급청구서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국세통칙법 제58조 제1항(환급가산금) 기간은 제1항 환급청구일(그 날이 동항에서 규정하는 계속일의 전일 또는 합병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10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 전인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의 익일로부터 환급을 위한 지불결정을 하는 날 또는 환급금에 대해 충당하는 날(같은 날 전에 충당하는데 적당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제1항의 환급 절차 기타 동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4장 청색신고

제121조 (청색신고) ① 내국법인은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이들 신고서와 관련된 수정신고서를 청색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중간신고서
2. 확정신고서
3. 청산사업연도예납신고서

② 전항의 승인을 받은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이들 신고서와 관련된 수정신고서에 대해서도 청색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퇴직연금 등 적립금 중간신고서
2. 퇴직연금 등 적립금 확정신고서
3. 잔여재산분배 등 예납신고서
4. 청산확정신고서

제122조 (청색신고의 승인신청) ①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제121조 제2항 각호의 신고서를 청색신고서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동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제2조 제16호(정의)에서 규정하는 연결신고법인을 제외)은 그 상ㅂ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 그 사업연도 개시일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사업연도가 다음 각 호의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항의 신청서 제출기한은 동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로 한다.

1.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같은 날 이후 3월을 경과한 날과 그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
2. 내국법인인 공익법인 등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이 새로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같은 날 이후 3월을 경과한 날과 그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
3. 공익법인 등(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이 그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같은 날 이후 3월을 경과한 날과 그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
4.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혹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일, 내국법인인 공익법인 혹은 인격 없는 사단 등이 새로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공익법인

등(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보통법인 혹은 협동조합 등이 그 보통법인 혹은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게 된 날(이하 본 호에서 「설립일 등」이라 함)로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에 못 미치는 경우에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설립일 등 이후 3월을 경과한 날과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

5. 연결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를 분할법인으로 하는 분할형분할을 한 경우(연결모법인사업연도(제15조의2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를 말함. 제6호 및 제7호에서 같음) 개시일에 분할형분할을 한 경우를 제외)에 그 날의 전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2월을 경과하는 날
6. 내국법인이 제4조의5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연결납세의 승인취소) 규정에 의해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연결모법인사업연도 개시일에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에 그 날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2월을 경과하는 날
7. 내국법인이 제4조의5 제2항 각 호 규정에 의해 제4조의2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취소된 날(이하 본 호 및 제8호에서 「취소일」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소일 이후 3월을 경과한 날과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2월을 경과하는 날 중 빠른 날
8. 제7호의 내국법인이 동 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취소일 이후 3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개시하는 것에 한함) 취소일 이후 3월을 경과한 날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2월을 경과하는 날 중 빠른 날
9. 제4조의5 제3항의 승인을 받은 내국법인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결모법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3월을 경과하는 날과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

제123조 (청색신고의 승인신청 각하) 세무서장은 제122조 제1항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신청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1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에 관련된 장부서류의 비치, 등록 또는 보존이 제126조 제1항(청색신고법인의 장부서류)에서 규정하는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2. 비치하는 장부서류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기재 또는 기록하고 있을 것 기타 부실한 기재 또는 기록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제127조 제2항(청색신고의 승인취소)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제128조(청색신고의 중지)에서 규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 이후 1년 이내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것
4. 제4조의5 제1항(연결납세의 승인취소) 규정에 따라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 그 취소된 날 이후 1년 이내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것.

제124조 (청색신고의 승인 등에 대한 통지) 세무서장은 제122조 제1항(청색신고의 승인신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해 승인 또는 각하 처분을 하는 때에 신청을 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에 대해 통지한다.

제125조 (청색신고에 대한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제122조 제1항(청색신고의 승인신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에 대해서 중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로 하고, 동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하며, 동항 제7호 또는 제8호의 내국법인 중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2월을 경과하는 날로 함)까지 신청에 대해 승인 또는 각하 처분이 없었던 때에는 그 날에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제126조 (청색신고법인의 장부서류) ① 제121조 제1항(청색신고)의 승인을 받은 내국법인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서류를 비치하여 여기에 거래를 기록하거나 장부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제121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내국법인에 대하여 전항에서 규정하는 장부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7조 (청색신고의 승인취소) ① 제121조 제1항(청색신고)의 승인을 받은내국법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연도를 역으로 소급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취소가 있었던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그 내국법인이 제출한 승인에 관련된 청색신고서(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같은 날 전에 성립한 법인세에 관련된 것을 제외)는 청색신고서 이외의 신고서로 간주한다.

1. 사업연도에 관련된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또는 보존이 제1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그 사업연도
2. 사업연도에 관련된 장부서류에 대해서 제12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세무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것. 그 사업연도
3. 사업연도에 관련된 장부서류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기재 또는 기록하고, 기타 기재 또는 기록한 사항의 전체에 대해서 그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그 사업연도

4. 제74조 제1항(확정신고) 또는 제102조 제1항(청산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것. 신고서에 관련된 사업연도
5. 제4조의5 제1항(연결납세의 승인취소) 규정에 의해 제4조의2(연결납세의무자)의 승인이 취소되었을 것. 취소된 날의 전일(그 전일이 연결모법인사업연도(제15조의2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를 말함) 종료일인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② 세무서장은 전항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동항의 내국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 이 경우에 서면에서는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28조 (청색신고의 중지) 제121조 제1항(청색신고)의 승인을 받은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동항 각 호의 신고서를 청색신고로 제출하는 것을 중지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개시일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승인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한다.

제5장 경정 및 결정

제129조 (경정에 관한 특례) ① 법인세에 관련된 경정에 대해서는 국세통칙법 제24조(경정) 또는 제26조(재경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제102조 제1항 제5호(소득세액 등의 공제부족액)의 사항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해 경정을 하는 때에는 동법 제28조 제2항(경정통지서의 기재사항) 중 「세액 등」은 「세액 등 및 법인세법 제102조 제1항 제5호(소득세액 등의 공제부족액)의 사항」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제출한 확정신고서 또는 연결확정신고서에 기재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이 그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 금액 또는 연결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초과하는 금액 중에 사실을 가장하여 회계처리한 바에 근거한 것이 있는 때에, 세무서장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그 사실을 가장하여 회계처리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 후의 각 사업연도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에 그 사실에 관한 수정 회계처리를 하거나 수정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의 사이에는 경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이 제70조 제1항(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공제) 또는 제81조의16 제1항 혹은 제2항(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연결사업연도에 있어서의 공제)에서 규정하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국세통칙법 제28조 제2항 규정의 적요에 대해서는 동항 제3호 2 중 「감소하는 부분의 세액」은 「감소하는 부분의 세액 및 그 세액 중 법인세법 제70조 제1항(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공제), 제81조의16 제1항 혹은 제2항(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연결사업연도에 있어서의 공제) 또는 제134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130조 (청색신고서 등에 관련된 경정) 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출한 청색신고서 또는 연결확정신고서 등(연결중간신고서, 연결확정신고서 또는 이들 신고서와 관련된 수정신고서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에 관련된 법인세의 과세표준 또는 결손금액 혹은 연결결손금액에 대한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장부서류(연결확정신고서 등에 관련된 법인세의 과세표준 또는 연결결손금액에 대한 경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연결자법인의 장부서류를 포함)를 조사하고, 그 조사에 의해 청색신고서 또는 연결확정신고서 등에 관련된 법인세의 과세표준 또는 결손금액 혹은 연결결손금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청색신고서 또는 연결확정신고서 등 및 이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그 과세표준 또는 결손금액 혹은 연결결손금액의 계산이 이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것 기타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그 장부서류를 조사하지 않고 경정하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②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출한 청색신고서 또는 연결확정신고서 등에 관련된 법인세의 과세표준 또는 결손금액 혹은 연결결손금액에 대한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에 관련된 국세통칙법 제28조 제2항(경정통지서의 기재사항)에서 규정하는 경정통지서 기타 경정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31조 (추계에 의한 경정 또는 결정)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에 관련된 법인세에 대해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이 제출한 청색신고서에 관련된 법인세의 과세표준 또는 결손금액의 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내국법인(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연결자법인을 포함)의 재산 혹은 채무의 증감상황, 수입 혹은 지출상황 또는 생산량, 판매량 기타 처리량, 종업원 수 기타 사업규모에 따라 그 내국법인에 관련된 법인세의 과세표준(경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표준 또는 결손금액 혹은 연결결손금액)을 추계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32조 (동족회사 등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관련된 법인세에 대해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이를 용인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에 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결손금액 또는 법인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인 동족회사
2. 가 내지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가. 셋 이상의 지점, 공장 기타 사업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사업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소에 대해 그 사업소의 소장, 주임 기타 사업소에 관한 사업의 주재자 또는 주재자의 친족 기타 주자재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개인(이하 본 호에서 「소장 등」이라 함)이 이전에 그 사업소에서 개인으로써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을 것
   다. 나에서 규정하는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소장 등이 보유하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 또는 금액의 합계액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그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기 주식 또는 출자 제외)의 총수 또는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상당할 것.

② 전항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동항 각 호의 법인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 사실이 있었던 때의 상황에 따르도록 한다.

③ 제1항 규정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동할 각 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대해 소득세법 제157조 제1항(동족회사 등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등) 혹은 상속세법 제64조 제1항(동족회사 등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등) 또는 지가세법(平成3년 법률 제69호) 제32조 제1항(동족회사 등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등) 규정이 적용된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32조의2 (조직재편성에 관련된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세무서장은 합병, 분할, 현물출자?사후설립(제2조 제12호의6(정의)에서 규정하는 사후설립을 말함) 또는 주식교환?주식이전(이하 본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함)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이를 용인한 경우에는 합병 등에 의해 이전하는 자신 및 부채의 양도에 관련된 이익액의 감소 또는 손실액의 증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증가, 제1호 또는 제2호 법인의 주식(출자를 포함. 제2호에서 같음)의 양도에 관련된 이익액의 감소 또는 손실액의 증가, 의제배당금액(제24조 제1항(배당액 등으로 간주하는 금액) 규정에 의해 제23조 제1항 제1호(수취배당 등의 익금불산입)의 금액으로 의제되는 금액을 말함)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관련된 법인세의 과세표준, 결손금액 또는 법인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합병 등을 한 일방의 법인 또는 상대방 법인
2. 합병 등에 의해 교부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제1호의 법인을 제외)
3. 제1호 및 제2호 법인의 주식 등인 법인(제1호 및 제2호 법인을 제외)

제132조의3 (연결법인에 관련된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세무서장은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연결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이를 용인한 경우에는 그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 금액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증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증가, 연결법인 간 자산의 양도에 관련된 이익액의 감소 또는 손실액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에 관련된 이들 법인세의 과세표준, 결손금액 혹은 연결결손금액 또는 이들 법인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33조 (확정신고 또는 연결확정신고에 관련된 경정에 따른 소득세액 등의 환급) ① 내국법인이 제출한 확정신고서 또는 연결확정신고서에 관련된 법인세에 대해 경정이 있었던 경우에 그 경정에 의해 제74조 제1항 제3호(소득세액 등의 공제부족액) 또는 제81조의22 제1항 제3호(연결확정신고서에 관련된 소득세액의 공제부족액)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 세무서장은 그 내국법인에 대하여 증가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한다.

② 전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국세통칙법 제58조 제1항(환급가산금)의 기간은 전항의 확정신고서 또는 연결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이들 신고서가 기한 후 신고서인 경우에는 이들 신고서를 제출한 날)의 익일로부터 환급을 위한 지불결정하는 하는 날 또는 환급금에 대해 충당하는 날(같은 날에 충당하는데 적당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을 동항의 확정신고서에 관련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동항의 연결확정신고서에 관련된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미납인 것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중 충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부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충당되는 부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연체세 및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제1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이에 관련된 환급가산금을 포함)에 대해 충당하는 경우의 방법 기타 동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34조 (확정신고 또는 연결확정신고에 관련된 경정 또는 결정에 따른 중간납34부액의 환급) ① 중간신고서 또는 연결중간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인 보통법인의 중간신고서에 관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연결중간신고서에 관련된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그 결정에 관련된 제74조 제1항 제5호(중간납부액의 공제부족액) 또는 제81조의22 제1항 제5호(중간납부액의 공제부족액)의 금액이 있는 때에 세무서장은 그 보통법인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중간납부액을 환급한다.

② 중간신고서 또는 연결중간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인 보통법인의 중간신고서에 관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연결중간신고서에 관련된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 경정이 있었던 경우에 그 경정에 의해 제74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81조의22 제1항 제5호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 세무서장은 그 보통법인에 대하여 증가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중간납부액을 환급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중간신고서 또는 연결중간신고서에 관련된 중간납부액에 대하여 납부된 연체세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 중 이들 규정에 의해 환급되는 중간납부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아울러 환급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해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국세통칙법 제58조 제1항(환급가산금)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는 중간납부액의 납부일(그 중간납부액이 그 납기한 전에 납부된 경우에는 그 납기한)의 익일부터 환급을 위한 지불결정을 하는 날 또는 그 환급금에 대해 충당하는 날(같은 날 전에 충당하는데 적당한 날이 있는 때에는 그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환급금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규정에 다른 환급금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제7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제81조의22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의 익일부터 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날까지의 일수
2. 제2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기인이 된 경정이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제외)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제7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제81조의22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의 익일부터 다음 각 호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에서 정하는 일까지의 기간
   가. 제2항의 경정에 관련된 확정신고서 또는 연결확정신고서의 기한 후 신고서인 경우 그 제출일
   나. 제2항의 경정이 결정에 관련된 경정인 경우 그 결정일

⑤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을 그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중간납부액에 관련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미납인 것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중 충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부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충당되는 부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연체세 및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다.

⑥ 제3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환급가산금은 부가하지 않는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이와 관련된 환급가산금을 포함)에 대해 충당을 하는 경우의 방법 기타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 ① 내국법인에 대해 제70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내국법인의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연체세액을 제외)으로 경정일의 전일에 확정하는 것이 있는 때에 세무서장은 그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항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 중 법인세액(이미 본 항 규정에 의해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초가 된 것을 제외)에 달하는 금액을 환부한다. 이 경우에 환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에 대해 제81조의16(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연결사업연도의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연결법인의 동조 제1항(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서 규정하는 경정일이 속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제15조의2 제1항(연결사업연도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를 말함)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연체세액을 제외)으로 그 경정일의 전일에 확정한 것이 있는 때에 세무서장은 그 연결법인에 관련된 연결모법인에 대하여 제81조의16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 중 법인세액(이니 본 항의 규정에 의해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것을 제외)에 이르는 금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에 환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국세통칙법 제58조 제1항(환급가산금)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 경정일의 익일 이후 1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환급을 위한 지불결정을 하는 날 또는 환급금에 대해 충당하는 날(같은 날 전에 충당하는데 적당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35조 (청산확정신고에 관련된 경정에 따른 소득세액의 환급) ①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이 제출한 청산확정신고서에 관련된 법인세에 대해 경정을 하는 경우에 그 경정에 의해 제104조 제1항 제3호(소득세액의 공제부족액)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 세무서장은 그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증가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은 부가하지 아니한다.

제136조 (청산확정신고서에 관련된 경정 또는 결정에 따른 청산중의 예납액 환급) ① 제102조 제1항(청산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 또는 제103조 제1항(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등에 관한 예납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의 해산에 관련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결정을 한 경우에, 그 결정에 관련된 제104조 제1항 제5호(청산중의 예납액의 공제부족액0의 금액이 있는 때에 세무서장은 그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청산중의 예납액을 환급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의 해산에 관련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을 한 경우에 그 경정에 의해 제104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 세무서장은 그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증가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청산중의 예납액을 환급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의 환급을 하는 경우에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신고서에 관련된 청산중의 예납액에 대하여 납부된 연체세가 있는 때에 그 금액 중 청산중의 예납액으로 제105조(청산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에 따른 납부) 또는 제106조(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등에 관한 예납신고에 따른 납부) 규정에 따른 납기한이 그 환급일에 가장 가까운 날로부터 순차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에 이를 때까지 소급한 경우에 각 청산중의 예납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아울러 환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다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부가하지 않도록 하고,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을 청산중의 예납액으로 미납인 것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충당되는 부분의 청산중 예납액에 대해서는 연체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4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 충당하는 경우의 방법 기타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37조 (계속 등의 경우 경정에 따른 소득세액 등의 환급) ① 제120조 제1항(계속 등의 경우 소득세액 등의 환급)에서 규정하는 환급청구 후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청산중의 각 사업연도의 청산사업연도예납신고서에 관련된 법인세에 대해 경정을 한 경우에 그 경정에 의해 제102조 제1항 제5호(소득세액 등의 공제부족액)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 세무서장은 환급청구를 한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증가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다른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국세통칙법 제58조 제1항(환급가산금)의 기간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청구를 한 날(그 날이 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속일의 전일 또는 합병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10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 전인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의 익일로부터 환급을 위한 지불결정을 하는 날 또는 환급금에 대해 충당하는 날(그 전에 충당하기 에 적당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3편 외국법인의 법인세

제1장 국내원천소득

제138조 (국내원천소득) 본 편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하는 사업에서 발생하거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운용, 보유 혹은 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기타 그 원천이 국내에 있는 소득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2. 국내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하는 법인이 받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관한 대가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권리 혹은 채석법(昭和25년 법률 제291호) 규정에 따른 채권권의 대여(지상권 또는 채석권 설정 기타 타인에게 부동산,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권리 또는 채석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 광업법(昭和25년 법률 제289호) 규정에 따른 조광권 설정 또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정의)에서 규정하는 거주자 혹은 내국법인에 대한 선박 혹은 항공기의 대여에 따른 대가
4.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이자소득)에서 규정하는 이자 등 중 다음 각 호의 것
   가. 일본국의 국채, 지방채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나.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자 중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다. 국내에 있는 영업소, 사업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이하 본 조에서 「영업소」라고 함)에 예입된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예적금의 이자
   라.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신탁된 합동운용신탁, 공사채투자신탁 또는 공모공사채 등 운용신탁(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5호의3에서 규정하는 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을 말함. 제5호 나에서 같음) 수익의 분배
5.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배당소득)에서 규정하는 배당 등 중 다음 각 호의 것
   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잉여금 배당, 이익배당, 잉여금의 분배 또는 기금이자

나.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신탁된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2에서 규정하는 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 및 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을 제외) 또는 제2조 제29호 다(정의)에서 규정하는 특정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분배

6. 국내에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대여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으로 그 업무에 관련된 것에 대한 이자(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를 제외)

7. 국내에서 업무를 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또는 대가로 그 업무에 관련된 것

가. 공업소유권 기타 기술에 관한 권리, 특별한 기술에 따른 생산방식 혹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또는 그 양도에 따른 대가

나. 저작권(출판권 및 저작인접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사용료 또는 그 양도에 따른 대가

다. 기계, 장치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구에 대한 사용료

8. 국내에서 하는 업무의 광고선전을 위한 상금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9. 국내에 있는 영업소 또는 국내에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 기타 연금에 관련된 계약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 기인하여 받는 연금(연금지불 개시일 이후에 그 연금에 관련된 계약에 기인하여 분배 받는 잉여금 또는 반환 받은 반환금 및 그 계약에 기인하여 연금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을 포함)

10. 다음 각 호의 급여보전금, 이자, 이익 또는 차익

가. 소득세법 제174조 제3호(내국법인에 관련된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급여보전금 중 국내에 있는 영업소가 인수한 정기적금에 관련된 것

나. 소득세법 제174조 제4호의 급여보전금 중 국내에 있는 영업소가 인수한 동호에서 규정하는 부금에 관련된 것

다. 소득세법 제174조 제5호의 이자 중 국내에 있는 영업소를 통하여 체결된 동호에서 규정하는 계약에 관련된 것

라. 소득세법 제174조 제6호의 이익 중 국내에 있는 영업소를 통하여 체결된 동호에서 규정하는 계약에 관한 것

마. 소득세법 제174조 제7호의 차익 중 국내에 있는 영업소가 인수한 예적금에 관련된 것

바. 소득세법 제174조 제8호의 차익 중 국내에 있는 영업소 또는 국내에서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된 동호에서 규정하는 계약에 관한 것

11.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출자에 대해 익명조합계약(이에 준하는 계약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에 근거하여 받는 이익분배

제139조 (조세조약과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일본국이 체결한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제138조 규정과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동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소득은 다른 정함이 있는 한에서 그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에 이 조약이 동조 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을 대신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정하는 때에는 이 법률 중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부분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조약에 따라 원천소득이 되는 것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한다.

제140조 (국내원천소득 적용의 세목) 제138조 및 제139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제141조 (외국법인에 관련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외국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외국법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소득 금액으로 한다.

1. 국내에 지점, 공장 기타 사업을 하는 일정한 장소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보유하는 외국법인 모든 국내원천소득
2. 국내에서 건설, 설치, 조립 기타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지휘감독 용역의 제공(이하 본 호에서 「건설작업 등」이라 함)을 1년 넘게 하는 외국법인(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제외) 다음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
   가. 제138조 제1호 내지 제3호(국내원천소득)의 국내원천소득
   나. 제138조 제4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 중,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하는 건설작업 등에 관련된 사업에 귀속되는 것
3. 국내에 자기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하 본 호에서 「대리인 등」이라 함)을 두는 외국법인(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제외) 다음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
   가. 제13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나. 제138조 제4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 중,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대리인 등을 통하여 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4. 제1호 내지 제4호의 외국법인 이외의 외국법인 다음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
   가. 제138조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에 있는 자산의 운용, 보유 또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에 의 해 발생하는 것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나. 제138조 제2호 및 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제142조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된 소득금액의 계산) 외국법인의 제141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된 소득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편 제1장 제1절 제2관 내지 제9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제46조(비출자조합이 부과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의 압축액의 손금산입) 및 제60조의2(협동조합 등의 사업분량배당 등의 손금산입) 및 제5관 제5목(연결납세 개시일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및 제6목(분할등전사업연도 등에 있어서의 연결법인간 거래의 손익)을 제외) 및 제11관(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세목)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43조 (외국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 ① 외국법인인 보통법인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141조(외국법인에 관련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된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보통법인 중 각 사업연도 종료 시의 자본금액 혹은 출자금액이 1억엔 이하인 것 혹은 자본?출자를 보유하지 않은 것(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상호회사에 준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의 제141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된 소득금액 중 연 800만엔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2의 세율에 따른다.

③ 외국법인인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141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된 소득금액에 100분의 22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연도가 1년에 못 미치는 외국법인에 대한 제2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연 800만엔」은 「연 800만엔을 12로 나누고, 여기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전항의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1월에 못 미치는 단수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⑥ 제4조의7(수탁법인 등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에서 규정하는 수탁법인에 대해서는 제2항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4조 (소득세액의 공제) 제68조(내국법인에 관련된 소득세액의 공제) 규정은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제141조 각 호(외국법인에 관련된 법인세의 과세표준) 외국법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소득세거 뷱헏하눈 곳(동법 제161조 제5호(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의 배당 등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을 지불 받은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8조 제1항 중 「소득세액」은 「소득세액(소득세법 제161조 제2호(국내원천소득)의 대가에 대해 동법 제220조 제1항(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 규정에 의해 징수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금액 중 동법 제225조(비거주자의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한 원천징수의 특례) 규정에 의해 동항 규정에 따라 징수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동법 제161조 제8호의 급여, 보수 또는 연금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을 제외)」로, 동조 제2항 중 「이자 및 배당 등」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제3절 신고, 납부 및 환급 등

제145조 (신고, 납부 및 환급 등) ① 제2편 제1장 제3절(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납부 및 환급 등) 규정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신고, 납부, 환급 및 국세통칙법 제23조 제1항(경정청구) 규정에 따른 경정 청구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다음 표의 상단 규정 중 같은 표의 중단의 자구는 같은 표 하단의 자구로 각각 바꾸어 본다.

제71조 제1항 (중간신고)	보통법인(청산중의 법인을 제외)	보통법인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중 적격합병(피합병법인 모두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인 것을 제외.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음)에 의해 설립된 것 이외의 자의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	(제141조 제1호 내지 제3호(외국법인에 관련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보통법인이 각 호 외국법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동조 제4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보통법인의 제138조 제2호(인적용역제공사업에 관한 대가)에서 규정하는 사업(이하 「인적용역제공사업」이라 함)을 국내에서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보통법인의 제141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제138조 제2호의 대가 이외의 것을 보유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금액이 없는 경우	혹은 그 금액이 없는 경우 또는 2월 이내에, 제14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보통법인이 국세통칙법 제117조 제2항(납세관리인) 규정에 따른 납세관리인 신고(이하 「납세관리인 신고」라고 함)을 하지 않고 각 호의 외국법인의 어디에도 해당힞 않게 되는 경우 혹은 제141조 제4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보통법인이 인적용역제공사업으로 국내에서 하는 것을 폐지하는 경우

제72조 제3항(가결산을 한 경우의 중간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 제7관 및 제10관	및 제7관	
	손실금 이월의 요건)을 제외	손실금 이월 요건) 및 제46조(비출자조합이 부과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 압축액의 손금산입) 및 제60조의2(협동조합 등의 사업분량배당 등의 손금산입)을 제외	
	제68조 제3항 및 제4항(소득세액의 공제) 및 제69조 제16항(외국세액의 공제) 중 「확정신고서」는 「중간신고서」로, 동조 제17항 중 「확정신고서에 이것들」은 「중간신고서에 이것들」로, 동조 제18항 중 「확정신고서」는 「중간신고서, 확정신고서」	제144조(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제68조 제3항 및 제4항(소득세액의 공제) 중 「확정신고서」는 「중간신고서」로	
	제74조 제1항(확정신고)	내국법인(청산중의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및 청산중의 협동조합 등을 제외)	외국법인

2월 이내		2월 이내(제141조 제1호 내지 제3호(외국법인에 관련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않고 각 호의 외국법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동조 제4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용역제공사업으로 국내에서 하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폐지일의 익일로부터 2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과 해당하지 않게 되는 날 또는 그 폐지일 중 빠른 날까지

앞절		제3편 제2장 제2절
제68조 및 제69조(소득세액 등의 공제)		제144조(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제68조(소득세액의 공제)
제75조 제1항(확정신고서 제출기한의 연장) 및 제75조의2 제1항(확정신고서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 신고서	규정에 따른 신고서(제141조 제1호 내지 제3호(외국법인에 관련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않고 각 호의 외국법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동조 제4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용역제공사업으로 국내에서 하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
제80조 제1항(결손금의 회복에 따른 환급)	제68조 내지 제70조의3(세액공제)	제144조(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제68조(소득세액의 공제)

제3장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제145조의2 (외국법인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외국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으로 한다.

제145조의3 (외국법인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의 계산) 제84조 제1항(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 내지 제86조(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의 계산 및 그 특례)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45조의4 (외국법인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 외국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에 100분의 1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145조의5 (신고 및 납부) 제2편 제2장 제3절(내국법인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규정은 외국법인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88조 제2호(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련된 중간신고) 중 「전조」는「제145조의4(외국법인에 관련된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로, 제89조 제2호(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한 확정신고) 중 「제87조(퇴직연금 등 적립금 등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제145조의4(외국법인에 관련된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로 본다.

제4장 청색신고

제146조 (청색신고) ① 제2편 제4장(내국법인에 관한 청색신고) 규정은 외국법인이 제출하는 확정신고서, 중간신고서 및 퇴직연금 등 적립금 확정신고서, 퇴직연금 등 적립금 중간신고서 및 이들 신고서에 관련된 수정신고서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다음 표 상단의 규정 중 같은 표 중단의 자구는 같은 표 하단의 자구로 각각 바꾸어 본다.

제122조 제2항 제1호(청색신고의 승인신청)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141조 제1호 내지 제3호(외국법인에 관련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보통법인이 각 호의 외국법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동조 제4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보통법인의 인적용역제공사업을 국내에서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혹은 보통법인의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제138조 제2호(인적용역제공사업에 관한 대가)의 대가 이외의 것을 보유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같은 날	해당하게 된 날 또는 개시한 날 혹은 보유하게 된 날
제122조 제2항 제2호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	제141조 각 호의 외국법인 구분에 따라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보유하게 된 날
제122조 제2항 제4호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혹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일	제14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보통법인이 각 호의 외국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 동조 제4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보통법인이 인적용역제공사업을 국내에서 개시한 날, 그 보통법인이 동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제138조 제2호의 대가 이외의 것을 보유하게 된 날 또는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공익법인 등(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에 한함)에 해당하는 보통법인 혹은 협동조합 등이 그 보통법인 혹은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게 된 날	제141조 각 호의 외국법인 구분에 따라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유하게 된 날
	설립일 등	신고대상 외국법인이 된 날

제5장 경정 및 결정

제147조 (경정 및 결정)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2(외국법인에 관련된 경정 및 결정), 제133조(확정신고 또는 연결확정신고에 관한 경정에 따른 소득세액 등의 환급) 및 제134조(확정신고 또는 연결확정신고에 관한 경정 또는 결정에 따른 중간납부액의 환급) 규정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외국법인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편 보칙

제148조 (내국보통법인 등의 설립신고) ①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인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은 설립일 이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연결자법인에 있어서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1호에서 동일)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지
2, 사업목적
3. 설립일

② 제4조의7(수탁법인 등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에서 규정하는 수탁법인에 관한 전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협동조합 등」은 「협동조합 등(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신탁의 신탁사무를 주재하는 수탁자(이하 본 항에서 「주재수탁자」라고 함)이외의 수탁자를 제외)」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법인과세신탁의 명칭(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재수탁자 이외의 수탁자의 명칭 또는 성명, 납세지 또는 본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혹은 거소를 포함)」으로 한다.

제149조 (외국보통법인이 된 사실의 신고) ① 제141조 제4호(외국법인에 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보통법인이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외국법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보통법인이 제138조 제2호(인적용역제공사업에 관한 대가)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국내에서 개시하거나, 제141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제138조 제2호의 대가 이외의 것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통법인은 그에 해당하게 된 날, 개시한 날 혹은 보유하게 된 날 이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에 해당하게 된 때, 개시한 때 혹은 보유하게 된 때의 대차대조표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지 및 국내에서 하는 사업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경영 또는 관리

책임자의 성명
2. 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목적, 종별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의 종류 및 주소지
3. 국내에서 하는 사업을 개시한 날, 개시예정일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을 보유하게 된 날

② 제4조의7(수탁법인 등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에서 규정하는 수탁법인에 관한 전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해당하는 보통법인」은 「해당하는 보통법인(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신탁의 신탁사무를 주재하는 수탁자(이하 본 항에서 「주재수탁자」라고 함) 이외의 수탁자를 제외. 이하 본 항에서 같음)」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법인과세신탁의 명칭(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재수탁자 이외의 수탁자의 명칭 또는 성명, 납세지 또는 본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혹은 거소를 포함)」으로 본다.

제149조의2 (수탁자의 변경신고) ① 법인과세신탁에 대하여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한 수탁자(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신탁의 신탁사무를 주재하는 수탁자(제2항 및 제3항에서 「주재수탁자」라고 함)로 한다)는 취임일 이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취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임한 수탁자의 명칭 또는 성명, 납세지 또는 본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혹은 거소
2. 법인과세신탁의 명칭
3. 취임한 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승계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4. 취임일
5. 취임 이유

② 법인과세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취임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수탁자(승계 직전에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그 주재수탁자)는 그 승계한 날 이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종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점부하여 이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한 수탁자의 명칭 또는 성명, 납세지 또는 본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혹은 거소
2. 법인과세신탁의 명칭
3. 신탁사무를 승계 받은 자의 명칭 또는 성명
4. 신탁사무를 승계한 날
5. 종료 사유

③ 1호의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 주재수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 전의 주재수탁자 및 변경 후의 주재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지
2. 법인과세신탁의 명칭
3. 변경 후 또는 변경 전의 주재수탁자의 명칭 또는 성명
4. 변경일
5. 변경 이유

제150조 (공익법인 등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의 수익사업 개시 등의 신고)① 내국법인인 공익법인 등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이 새로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개시한 날 이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개시한 때의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지
2. 사업의 목적
3. 수익사업의 종류
4.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

② 공익법인 등(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 한함)이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이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해당하게 된 때의 대차대조표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지
2. 사업의 목적
3. 해당하게 된 날

③ 외국법인인 공익법인 등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은 제141조 각 호(외국법인에 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외국법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하게 된 날 이후 2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보유하게 된 때의 대차대조표 기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 (장부서류의 비치 등) ① 보통법인, 협동조합 등,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등 및 인격 없는 사단 등(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대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연결법인을 제외. 제2항에서 「보통법인 등」이라 함)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 여기에 거래를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기록하거나, 그 장부(거래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수령한 서류 및 결산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로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 제2항에서 같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국세국 또는 세무서 직원은 보통법인 등의 법인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전항의 장부를 검사하도록 한다. 다만, 그 장부 검사를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 (대표자 등의 서명날인) ① 법인이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 등(제2조 제23호 내지 제37호(정의)의 신고서 및 이들 신고서와 관련된 수정신고서(제3항 및 제5항에서 「법인세신고서」라고 함) 및 제81조의25 제1항(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액 등의 신고)에서 규정하는 개별귀속액 등을 기재한 서류(개별귀속액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포함)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에는 다음 각 호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자(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직무를 하여야 하는 자)가 서명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인격 없는 사단 등에서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관리인. 이하 본 항에서 같음)가 1인인 경우 그 대표자
2.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제3호의 경우를 제외) 이자들 중 사장, 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기타의 자로써 법인세신고서 등의 작성 시에 그 법인의 업무를 주재하고 있는 자
3.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 전원

② 법인세신고서 등에는 전항의 대표자 외에 법인의 임원 및 직원 중 법인세신고서 등의 작성 시에 법인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무의 상위 책임자인 자가 서명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에 대해서는 제1항 규정에 의해 법인세신고서에 서명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는 자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 책임자로 하고 전항 규정에 의해 그 법인세신고서에 서명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는 자는 그 사업 또는 자산에 관한 회계처리에 관한 사무의 상위 책임자로 한다.

④ 제4조의7(수탁법인 등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에서 규정하는 수탁법인이 법인세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수탁법인이 동조 제3호 규정에 의해 회사로 간주되는 개인인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법인세신고서 등에 서명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는 자는 그 개인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따른 서명 및 날인의 유무는 법인세신고서의 제출에 따른 신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2조 (수탁자의 연대납부 책임) ① 제4조의8 제2항(수탁자가 둘 이상 있는 법인과세신탁에 관한 납세의무) 규정에 의해 동항의 법인과세신탁의 신탁사무를 주재하는 수탁자(이하 본 조에서 「주재수탁자」라 함)가 납부하도록 된 법인세에 대해서는 그 법인과세신탁의 주재수탁자 이외의 수탁자는 그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를 주재수탁자 이외의 수탁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 국세통칙법 제43조 제1항(국세징수의 관할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국세의 징수」는 「법인세법 제2조

제27호의2(정의)에서 규정하는 법인과세신탁의 동법 제152조 제1항(수탁자의 연대납부 책임)에서 규정하는 주재수탁자(이하 본 항에서 「주재수탁자」라고 함) 이외의 수탁자(이하 본 항에서 「연대수탁자」라고 함)의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대납부 책임에 관련된 법인세의 징수」로, 「국세의 납세지」는 「법인세의 납세지 또는 연대수탁자가 법인과세신탁의 주재수탁자인 경우에 그 법인세의 납세지」로 본다.

제153조 (직원의 질문검사권) ① 국세청의 직원 또는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혹은 관할 국세국의 직원은 법인세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법인(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국 직원이 연결모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연결자법인을 포함)에 질문하거나 장부서류(작성 또는 보존을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써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에 제공되는 것을 말함)의 작성 또는 보존되는 경우에 그 전자적 기록을 포함. 이하 본 편 및 제162조 제3호(허위 기재를 한 중간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죄)에서 같음)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연결자법인의 본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국의 직원은 연결모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연결자법인 및 연결모법인에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4조 ① 국세청의 직원 또는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혹은 관할 국세국의 직원은 법인세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법인(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국 직원이 연결모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연결자법인을 포함)에 대하여 금전 지불 혹은 물품을 양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금전 지불 혹은 물품양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사업에 관한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연결자법인의 본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국의 직원은 연결모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연결자법인에 대하여 금전지불 혹은 물품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금전지불 혹은 물품 양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사업에 관한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③ 분할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품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분할승계법인인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물품양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55조 제153조 및 제154조 규정은 국세청의 직원 및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국의 직원 이외의 직원이 소속된 세무서 또는 국세국의 관할구역 내에 본점, 지점, 공장, 영업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한 질문 또는 검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6조 제153조 내지 제155조의 규정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 권한은 범죄조사를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6조의2 (관공서 등에 대한 협력요청) 국세청, 국세국 또는 세무서의 직원은 법인세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관공서 또는 정부기관에 그 조사에 관하여 참고하여야 하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열람 또는 제공 기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7조 (신분증명서의 휴대 등) 국세청, 국세국 또는 세무서의 직원은 제153조 또는 제154조 제1항 혹은 제2항(직원의 질문검사권)(이들 규정을 제155조(질문검사권에 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규정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8조 (부가세의 금지) 지방공공단체는 법인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5편 벌칙

제159조 ①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제74조 제1항 제2호(확정신고에 관련된 법인세액) (제145조 제1항(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액(제68조(소득세액의 공제) (제144조(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제69조(외국세액의 공제) 규정에 의해 공제 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호 규정에 따른 계산을 이들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 법인세액), 제81조의22 제1항 제2호(연결확정신고에 관련된 법인세액)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액(제81조의14(연결사업연도의 소득세액 공제) 또는 제81조의15(연결사업연도의 외국세액 공제) 규정에 의해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호 규정에 따른 계산을 이들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 법인세액), 제89조 제2호(퇴직연금 등 적립금 확정신고에 관한 법인세액) (제145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액 혹은 제104조 제1항 제2호(청산확정신고에 관한 법인세액)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액(제100조 제1항(소득세액의 공제) 규정에 의해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호 규정에 따른 계산을 동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 법인세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하거나, 제80조 제6항(결손금의 회복에 따른 환급) (제81조의31 제4항(연결모법인에 대한 준용) 또는 제14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인격 없는 사단 등의 관리인 및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인 개인을 포함. 이하 제162조(허위 기재를 한 중간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죄)까지에서 같음),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자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를 포함. 제164조 제1항(양별규정)에서 같음)로써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② 전항의 회피된 법인세액 또는 동항의 환급을 받은 법인세액이 500만엔을 넘는 때에는 정황에 따라 그 벌금은 500만엔을 초과하여 면제된 법인세액 또는 환급을 받은 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60조 정당한 이유 없이 제74조 제1항(확정신고) (제145조 제1항(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81조의22 제1항(연결확정신고), 제87조(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한 확정신고) (제145조의5 (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제104조 제1항(청산확정신고)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로써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황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1조 제151조 제1항 내지 제4항(대표자 등의 서명날인)의 규정(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류에 관련된 동항 및 동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을 제외)을 위반한 자 또는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을 위반하는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황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2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 제1항(중간신고) (제145조 제1항(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규정에 따른 신고서에 제72조 제1항 각 호(가결산을 한 경우의 중간신고서의 기재사항)의 사항을 기재한 것, 제81조의19 제1항(연결중간신고) 규정에 따른 신고서에 제81조의20 제1항 각 호(가결산을 한 경우의 연결중간신고서의 기재사항)의 사항을 기재한 것, 제88조(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한 중간신고) (제145조의5(그 신고서에 관한 기한 후 신고서를 포함), 제102조 제1항(청산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 규정에 따른 신고서(그 신고서에 관한 기한 후 신고서를 포함) 또는 제103조 제1항(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등에 관한 예납신고) 규정에 따른 신고서(그 신고서에 관한 기한 후 신고서를 포함)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로써 그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153조 또는 제154조 제1항 혹은 제2항(직원의 질문검사권) (이들 규정을 제155조(질문검사권에 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규정에 따른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고, 또한 이들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한 자
3. 제2호의 검사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기록을 한 장부서류를 제시한 자

제163조 법인세의 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 ① 법인의 대표자(인격 없는 사단 등의 관리인을 포함) 또는 법인 혹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혹은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9조 제1항(법인세를 피하는 등의 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전항 규정에 의해 제159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 시효기간은 동항의 죄에 대한 시효기간에 따른다.
③ 인격 없는 사단 등에 대하여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소송행위에 대해 그 인격 없는 사단 등을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平成 20년 4월 30일 법률 제23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平成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5. 다음의 규정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平成18년 법률 제48호)의 시행일(平成20년 12월 1일)
나. 제2조 중 법인세법 제2조 제9호의 다음에 1호를 더하는 개정규정, 동법 제4조의 개정규정, 동법 제9조에 1항을 더하는 개정규정, 동법 제10조의 개정규정, 동법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동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내국법인인」을 삭제하는 부분에 한함), 동항 제2호의 개정규정, 동법 제37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 동조 제4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 공익법인 등」의 아래에 「(별표 제2의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을 제외. 이하 본 항 및 다음 항에서 같음)」을 더하는 부분 및 동항 단서 중 「내국법인인」을 삭제하는 부분에 한함), 동조 제5항의 개정규정, 동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동법 제66조의 개정규정, 동법 제143조의 개정규정, 동법

제15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인 공익법인 등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을 「(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한함)」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함), 동법 별표 제1의 개정규정 (동표 제1호의 표 일본중앙경마회의 항의 다음에 다음과 같이 더하는 부분을 제외), 동법 별표 제2의 개정규정(동표 제1호의 표 대금업협회의 항 앞에 다음과 같이 더하는 부분(의료법인(의료법(昭和23년 법률205호) 제42조의2 제1항(사회의료법인)에서 규정하는 사회의료법인에 한함)의 항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 및 동표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료법(昭和23년 법률 제205호) 제31조(공적의료기관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공적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써 재무대신이 지정한 것에 한함)의 항 중「(昭和23년 법률 제205호)」를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 및 법인세법 별표 제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 부칙 제93조 중 조세조약의 실시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류류 제4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7조,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제108조 및 제110조의 규정

6. 다음 규정 일본연금기구법(平成19년 법률 제109호)의 시행일

나. 제2조 중 법인세법 별표 제1 제1호의 표 일본중앙경마회 항의 다음에 다음과 같인 덧붙이는 개정규정

(법인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원칙)

제9조 이 부칙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2조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법인세법(이하 부칙 제24조까지에서 「신법인세법」이라 함)의 규정은 법인(신법인세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 이하 부칙 제21조까지에서 같음)의 시행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연결법인의 시행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의 시행일 이후의 해산(합병에 다른 해산 및 신법인세법 제9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탁특정해산을 제외. 이하 본 조에서 같음)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법인의 청산중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련된 법인세법 및 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또는 인도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법인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연결법인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의 시행일 이전의 해산에 다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법인의 청산중의 사업연도 소득에 관련된 법인세 및 잔여재산의 일부분배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를 포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0

제10조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법인세법(이하 부칙 제22조까지에서 「구 법인세법」이라 함) 별표 제2 제1호 표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써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본 조에서 「정비법」이라 함)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으로써 존속하는 것 중, 정비법 제106조 제1항(정비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등기를 하지 않는 것(정비법 제13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정비법 제45조의 인가가 취소된 것(이하 본 조에서 각각 「인가취소사단법인」 또는 「인가취소재단법인」이라 함)에 있어서는 신법인세법 제2조 제9호의2에서 규정하는 비영리형 법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은 신법인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하 부칙 제24조까지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으로 간주하여 신법인세법 기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항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 등으로 간주되는 인가취소사단법인 및 정비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 유한책인중간법인으로 정비법 제3조 제1항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신법인세법 제2조 제9호의2에서 규정하는 비영리형법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은 신법인세법 별표 제2의 일반사단법인에,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 등으로 간주되는 인가취소재단법인은 동표의 일반재단법인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정비법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무한책임중간법인 및 정비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민법법인(제1항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 등으로 간주되는 인가취소사단법인 및 인가취소재단법인을 제외)은 신법인세법 제2조 제9호의2에서 규정하는 비영리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외국공익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부칙 제1조 제5호 나의 개정규정의 시행시에 실제로 구법인세법 별표 제2 제2호의 지정을 받은 외국법인의 平成20년 12월 30일까지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구법인세법 제4조 제2항, 제10조 및 제143조의 규정은 효력을 가진다.

(연결납세의 승인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신법인세법 제4조의5 제2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들 규정의 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과세소득의 범위 변경 등의 경우 법인세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①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보통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행일부터 부칙 제1조 제5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까지 사이에 신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 중 「일반사단법인 혹은 일반재단법인 또는 의료법인 중」은 「의료법인

중」으로 본다.

(사업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① 신법인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동호에서 정하는 날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고, 구법인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날이 시행일 전인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신법인세법 제14조 제17호, 제18호, 제21호 및 제22호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 신법인세법 제37조 제5항의 규정은 법인이 부칙 제1조 제5호에서 정하는 날 이후에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고, 법인이 같은 날 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손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신법인세법 제52조 제11항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보통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반품조정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 신법인세법 제53조 제9항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보통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양도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신법인세법 제61조의2 제14항 제3호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동호에서 정하는 취득결의에 대해서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구법인세법 제61조의2 제14항 제3호에서 정하는 취득결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사청부에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경과조치0

제19조 ① 신법인세법 제64조 규정은 법인이 시행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착수하는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사(경과조치 공사를 제외)에 대해서 적용하고, 법인이 시행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수한 구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사(경과조치 공사를 포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과조치 공사라고 함은 시행일로부터 平成21년 3월 31일 사이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법인이 청부하는 공사(신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사를 말함)로서 사업연도에 착수하는 것(사업연도 중에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 이하 본항에서 「착수공사」라고 함) 중 사업연도 종료 시에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기대규모공사에 해당하는 것(종료 시에 구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기대규모공사에 해당하는 것 및 그 진행 비율이 낮은 것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중 하나에 대하여 사업연도의 확정한 결산(신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관련된 결산)에서 신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사진행기준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착수공사를 말한다.

(공익법인 등이 보통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 ① 신법인세법 제64조의4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공익법인 등인 법인이 보통법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및 시행일 이후에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 적용한다.

② 시행일부터 부칙 제1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신법인세법 제64조의4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 중 「일반사단법인 혹은 일반재단법인 또는 의료법인」은 「의료법인」으로 본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신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은 법인의 부칙 제1조 제5호에서 정하는 날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적용하고, 법인의 그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연결사업연도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0

제22조 신법인세법 제81조의6 제4항 규정은 동조 제1항 연결법인의 신법인세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가 시행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 적용하고, 구법인세법 제81조의6 제1항 연결법인의 구법인세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사업연도가 시행일 전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신법인세법 제138조 제4호 나의 규정은 외국법인이 시행일 이후에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익법인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 신법인세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19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 호 규정에 있어서는 그 규정. 이하 본조에서 같음)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의하게 되는 경우에 이 법률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기타 경과조치의 시행령 위임)

제120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